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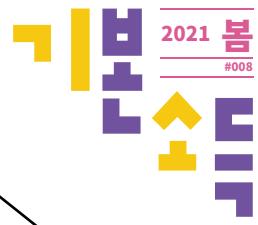
2021 봄

#008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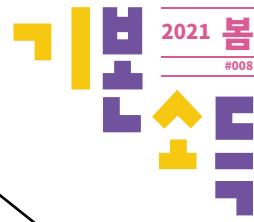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8



C O N T E N T S

사진 속의 말	05	겨울을 기억하며 _양희식
머리글	06	기본소득이 건네준 선물들 _백승호
추모	08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벗, 백기완 _박점규
	12	백기완 선생님께 드리는 한 문학인의 반성문 _강형철
이 계절의 이슈 1:	17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와 일자리보장에 관한 입장 _이건민
쟁점토론회	25	범주형 기본소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_안효상
	31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 주권화폐론 검토 - _유승경
이 계절의 이슈 2:	40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 인간 삶의 관점에서 _이도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6	시민·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_한인임
	5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 _김현주
논점	58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권 _백승호
	62	정부부채와 외환위기 : 과학인가 미신인가 _전용복
	74	지역화폐 논쟁 _강남훈
	7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등장한 서울형 기본소득 _윤형중
화제의 인물	82	[강환욱] “무조건적 지지와 자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바탕” _인터뷰어 한인정
	91	[신지혜] 안 될 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_인터뷰어 이관형
문학	103	[수필] 황제의 식탁 _김인숙
	108	[단편소설] 휴가 _강화길
	113	[연재소설] 봉인된 시간. 4 _신경숙



2021 봄

#008

C O N T E N T S

류보선의 증횡무진 기본소득	119	위기의 지구와 ‘노나메기’라는 ‘하제’(희망)_류보선
동향	135	[학술동향]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_이건민
	161	[국내동향] 베지니아 울프의 5백 파운드는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참관기_오준호
	167	[국내동향]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어떻게 봐야 할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후기_윤형중
	172	[국내동향] <인구 5만 옥천>청년이 구상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다_옥이네
	178	[국내동향]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2021년_박선미
	184	[해외동향]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_이지은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190	기본소득, 노동과 화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_고미숙
	195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_강석훈
기본소득과 나	200	“기본소득과 나”_안재성
	204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_강은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207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 -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을 중심으로_-김주온
	210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_진형익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QnA	214	일자리 전망과 기본소득

겨울을 기억하며

양희석 사진작가



2월말과 3월초. 겨울과 봄 사이의 애매한 이 시간 추운 겨울에 진저리치며 보통은 이 시기에 ‘봄’이라는 계절을 희망이라 여기고 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올해 이 시기 난 다시 지난 겨울을 생각한다. 다가올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추운 겨울에 대한 기억을 한동안 밀어낼까봐 걱정하면서 말이다. 나에게 아니 많은 사람에게 계절로서의 겨울은 지났지만 불안한 시간으로서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다.

겨울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다. 겨울을 가장 먼저 대비하는 사람 역시도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2020년이라는 겨울의 고통을 좀 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올 겨울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진은 내가 가진 사진 중 가장 차가운 사진이다. 2010년 서울의 어느 겨울날에 찍었다.

기본소득이 건네준 선물들

백승호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장

허시먼Hirshmann은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려 할 때, 새로운 제도를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 가지 과도한 비판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첫째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냉소, 둘째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 셋째는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목표와 제도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왜곡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전형적인 비난들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호 계간《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

우선 ‘화제의 인물’ 코너에 강환욱 선생님의 감동적인 선물 보따리가 펼쳐진다. 강환욱 선생님은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어오셨다. 기본소득은 판동초 어린이들에게 안정감, 자율성, 책임감을 선물로 주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가능했던 기본소득이 준 선물이 어른들에게는 불가능할까? 또 한 분의 화재의 인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던 신지혜 후보가 소개되었다. 양대정당 중심의 어려운 선거국도 속에서 4가지 기본소득을 담은 서울형 기본소득과 7가지 ‘기본 서울’ 공약으로 한국사회 미래 정치의 당당함을 신지혜 후보는 보여주었다.

‘문학’ 코너에서는 김인숙님의 ‘황제의 식탁’, 강화길님의 ‘휴가’, 신경숙님의 연재소설 ‘봉인된 시간 4회’, ‘동향’ 코너에서는 충북지역 안내 중학교의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용돈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집에서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기본소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은 짧은 실험이었지만 중학생들에게도 큰 선물이었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장고도의 어촌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가져다줄 선물도 기대가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 고미숙 고전평론가님이 소개한 감이당의 청년 펀드는 청년과 중년을 연결하는 ‘인생의 길벗’을 기본소득이 선물로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 계절의 이슈’로 특별하게 주목했다. 지금도 매일 5.5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있는 코로나 사망자수보다 많지만, 산재사망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 생존 노동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죽음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번 호부터는 ‘논점’, ‘함께만들어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코너가 신설되었다. ‘논점’ 코너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권을 둘러싼 논점, 재정건전성론의 허구성,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을 다루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님은 중년들의 펀드가 청년들의 활동으로 순환되게 하는 세대간 연대모델인 감이당 청년펀드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이 노동에 올인 아니라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강석훈 목사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대신하는 수단이어서도 안되며,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생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기초이어야 함을 담담하게 설명하신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코너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김주온님의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동 연구, 진형익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연구가 소개되었다.

이번 호에는 슬픈 소식도 담겨 있다. 평생을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한 몸 바치신 고 백기완 선생님을 우리는 보내드려야 했다. 대학로를 쪄렁쩌렁 울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벗, 백기완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직장갑질119 운영위원

2월15일 새벽 백기완 선생님의 사위 이종희 진보넷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의 부고 소식. 코로나19 때문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선생님을 1년 넘게 뵙지 못하고 있었다. 짐을 챙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2010년 6월11일,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15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백기완 선생님은 ‘희망버스’ 1호차에 올랐다. 새벽 1시 한진중공업, 선생님은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공장 담벼락을 넘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친구와 같이 용역경비들이 점거하고 있던 정문 담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소화기와 방패를 던지며 저항하던 용역들이 담장 밑으로 떨어졌다. 담장 위에 올라온 백기완의 불호령이 부산 앞바다에 짜렁짜렁 울렸다. 그해 10월까지 백기완 선생님은 다섯 번의 희망버스에 올랐다. 정리해고는 철회됐고, 백기완은 309일 만에 살아 내려온 김진숙의 손을 맞잡았다.

백기완과 희망버스

200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을 계기로 멀리서만 봤던 백기완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2008년 기륭 김소연 분회장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94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비없세 활동가들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은 선생님의 ‘절친’이 됐다.

2012년 4월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다. 정리해고를 당한 동료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서른 번째 죽음.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과 열흘 밤낮을 싸워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향소를 출근하다시피 했고,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해고 투쟁의 ‘성지’가 됐다.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기완 선생님은 현장을 찾았고, 해고노동자들의 곁을 지켰다. 백기완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든든한 뒷배였다.

2013년 7월20일,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천의봉, 최병승이 송전탑 위에서 2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향했다. 폭염과 장거리 여정으로 여든이 넘은 백기완 선생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선생님은 희망버스에 오르겠다고 고집하셨다. 새마을호 두 량을 빌렸다. 선생님을 설득해 ‘희망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공장 옆을 지나가는 기차에서 백기완 선생님이 천의봉과 통화해 힘내라고 응원했다. 열차가 경적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천의봉, 최병승은 손을 흔들었다. 4,000명의 희망버스 승객들이 현대차 공장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웠다. 현대차 용역경비들이 자동차 부품을 던지고 소화기를 뿜렸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말가루를 하얗게 뒤집어쓴 채 현장을 지켰다.

장례식과 돌잔치

2013년 1월 28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이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구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동료 해고자들은 고인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규직노조는 ‘재입사’로 합의했다며 장례를 강행하려고 했다. 백기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장례식장에 내려와 조문을 하고, 정규직노조 간부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원직복직 합의가 이루어졌고, 11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2013년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수리기사 최종범이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증거를 모아 삼성의 불법을 알렸지만 언론에 한 줄 나오지 않았다. 최종범의 아내가 젖먹이 아이를 떠나 삼성 본관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싸웠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족을 설득해 돌잔치를 열었다. 사연을 들은 백기완 선생님이 눈물을 쏟아냈다. 돌잔치에 참석해 최종범 딸에게 금별을 선물했다. 소식을 들은 각계각층에서 돌 선물을 보내왔다. 돌잔치 소식이 언론에 실렸고 노사간 교섭이 진척돼 해를 넘기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스승의 날

2014년 5월 15일 기릉전자 농성장. 비없세 활동가들과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이 백기완 선생을 위한 작은 잔치를 마련했다. 기아차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비정규직 김수억이 복직 첫 월급을 내놨다. 기릉전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기업, 삼성전자서비스 등 백기완 선생님의 벗들이 함께 했다. 선생님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영상이 상영됐다.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 선생님은 “그동안 해온 게 있다면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재벌이 지배하는 체제를 깨부숴야 한다”고 외쳤다.

2014년 유성기업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2015년 백남기 농민 투쟁, 2016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건립을 위한 <두 어른 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2019년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투쟁. 백기완 선생님이 머물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었다. 아픔을 딛고 저항하는 현장이었다. 버선발들의 연대의 마당이었다.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올바르게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

마지막 길

아침 일찍부터 장례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조화가 도착해 있었다. 장례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와 조기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고 했던 선생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이 ‘조화 정치’로 선생님의 정신을 훼손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비정규직도 똑같이 줄 서서 조문하게 했다.

백기완 선생님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권력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생님과의 일화를 올리며 ‘추억 팔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백기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위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현수막을, 조문을 위해 기다리는 곳에 “네 배지만 부르고 네 등만 따신 놈들아”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보도자료에 정치인들의 이름은 한 줄도 올리지 않았다.

장례 셋째 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왔다. 장례위원회는 “선생님이 마지막 글로 남기신 말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노나메기 세상, 노동해방이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이것이 선생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 40일 넘게 단식한 송경동 시인도 와있는데, 선생님의 뜻인 김진숙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피 눈물’, ‘노동존중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종이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라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없세 활동 가들이 백기완 선생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앞으로 ‘벼슬아치’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비정규직과 만난 첫 자리, 백기완 선생님은 어떠셨을까?

노동해방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비없세,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사회단체와 현직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전태일신문》을 만들었다. 5년 전이었던 2015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안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일 때 《굴뚝신문》을 만들었고, 백기완 선생님이 ‘저 굴뚝 위에 서린 새뜸이여’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5년 뒤 지병 악화와 호흡기 시술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된 선생님은 《전태일신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보름에 걸쳐 하루에 한 획씩 써서 ‘노동해방’이라는 글을 보내주셨고, 광고를 만들어 신문에 실었다. 병간호를 하고 있는 채원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의 혼이 담긴 글을 잘 받아서 《전태일신문》에 실었다고, 신문을 선생님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 ‘어’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컥했다.

앞서서 나간 백기완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백기완, 불쌍꾼(혁명가)들이 노동해방을 향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

백기완 선생님께 드리는 한 문학인의 반성문

강형철 시인

2021년 2월 19일 아침 10시 선생님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대학로를 빠져나와 이화 4거리로 거쳐 종로통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장례대열 앞의 선도차에서는 살아계셨을 때 어디선가 말씀하셨던 육성이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 뒤로는 길을 가득히 채운 만장들이 나부꼈습니다. 풍물패가 징과 북, 장고를 치면서 수많은 깃발을 든 각 단체 장례참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득하게 뒤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변을 따라 종로 5가, 4가를 거쳐 종각까지 숨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대열을 근심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장례 대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화가 난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통 신호를 받느라고 장례 행렬이 때로 더뎌지기도 했고, 때로는 장례위원회들이 급하게 무슨 말들을 나누면서 왔다 갔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행렬을 따라 탑골공원까지 갔다가 영결식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광장에는 100여 개의 의자가 들판처럼 놓여있었고 시청 홍보물 아래쪽에 선생님의 얼굴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Covid-19로 선생님의 영결식은 정식으로 허락받지 못한 ‘불법집회’였습니다. 엉성하게 쳐진 줄 밖으로 한쪽 천막에서는 장례 참가 허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줄쳐진 종이 위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가슴에 ‘남김없이’라는 리본을 다느라 핀을 가슴 위에 꽂고 있었고, 저도 리본을 받았습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쓰인 팻플릿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풍물패 옆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를 받는 임진택 선생을 만나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서성거리다가 대로 끝 차선에 정차한 운구차를 보았습니다. 하얀 리본으로 앞에서 뒤로 두른 운구차는 고요했습니다. 옆에서는 세워진 선생님 모형을 중심으로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힘차게 어떤 이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북채를 어기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한참을 어울거리며 서성거리다 저는 슬그머니 영결식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는 제 할 일을 평계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삼우제^{三虞祭}가 있었고 지

금은 벌써 49재^{四九齋}不遷位를 지낸 시점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선생님의 삶을 늘 상기하며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세상 훌러 가는 대로 간신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기왕에 영결식을 하려면 좀 걸玷지게 하지 이게 뭐냐? 우리의 민중역량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나는 자책도 하고 저를 포함한 민중 전체의 부족한 역량을 가늠해보기도 했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87년 시청 앞에서 서소문, 아현동까지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민중의 바다를 이루었던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의 장엄했던 모습과 선생님의 영결식이 대비되면서 한없이 막막해지기도 했던 모습도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조태일 시인을 만나던 80년대 초의 오장동 인쇄소 사무실을 떠올립니다. 그때 조태일 시인으로부터 받은 선생님의 책『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두근거리며 읽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는 시인으로 문인단체 일들도 거들기도 하였고 한때는 문화정책의 실행기구에서 일도 했고 생업으로 대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시를 공부하면서 꽤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왜 그 책을 새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의미의 시나 글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이 허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성찰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하면 우리 전체의 문학이 선생님이 앞장서서 독전관처럼 재촉한 문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시 한 편은 하나의 혁명이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고, 시는 그러한 인식과 실천이 하나로 통일된 비나리가 되어야 한다. 순수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상의 구체적 요구를 빼버린 허위의식이며 그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구舊식민지 또는 그 이후의 신新식민지 지배질서의 일환으로서의 비인간적 또는 민족 반역적 문화풍토의 한 반영일 뿐이다. 이 땅의 깊숙한 곳에 굽이 치는 지하수와 같은 민족적 전통문학의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오늘의 박토 위로 훌러넘치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민족문학이라고 나는 부른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문학 전반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현실 속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

가면서 문학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했고 문학 전문가의 분업행위로 왜소해졌습니다.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일과는 영원히 멀어진 소박한 문화 행위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뼈저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함께 참여하고 분단현실을 깨고 나아가며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은 아득하게 먼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도 그 이후의 우리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에 따라 변증법적 변화가 있었고 문학 혹은 문학인의 대응 또한 변화 발전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분단상황(분단체제)은 휴전상황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이고, 1945년 2차대전 승전국의 자격으로 남쪽을 분할점령한 미군은 여전히 ‘기지’형태로 위장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적 권리인 전쟁권 조세권 처벌권 중 가장 본원적인 권리인 전쟁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전시작전권은 행위 주체의 이름만 바꾸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정치 경제 사회분야가 높에 빠졌을 때 문화일꾼들이 선봉에 서야 하며 그 상황을 깨트리는 봉홧불이 되어야 한다고. “혁명이 높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한다”며 참혹했던 독재시절, 반민족 반민중 투쟁의 현장에서 선생님은 늘 실천의 선봉에도 서 계셨습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불구상태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계급 계층간의 불균등과 대립, 극심한 격차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 민중의 삶이 심각하게 피폐, 훼손된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바꿀 민중적 대안으로 직접 ‘노나메기 세상’을 제창하셨습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되 올바로 함께 행복한 노나메기 세상”을 쉽고도 명확하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이보다 명쾌하게 우리 전체의 삶이 도달할 목표와 길이 동시에 제시된 살아있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문화적 비전을 넘어 전체 삶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고 주목하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기본소득을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이란 말로 풀이합니다. 호혜와 환대의 세상을 겨냥하여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상호 약탈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 자체가 상생하는 생태문명으로 가는 출발지점으로 기본소득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나 방법론을 우리말로 더 쉽고 친숙하게 풀어쓴 말이 ‘노나메기 세상’이란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이랄까 큰 말은 구체적인 노력이 그 원칙에 따라 실천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그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실천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큰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활력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만이 아니라 문학적 삶으로, 문화행위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운동으로 끊임없이 변환하면서도 근본정신을 잃지 않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셨던지 저희들에게 “한 발짝만 더” “남김없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부끄럽고 다시 부끄럽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살아오신 생애 자체가 곧바로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채찍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는 그대로 우리의 현대사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 실천 투쟁의 산 역사이며 노나메기 생애였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저희들이지요. 그러한 뜻을 크게 이어받아 더 치열하게 더 엄정하게 실천하면서 아직 못 이룬 좋은 세상 노나메기 세상을 이루는데 나서야 하겠지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끄럽고 동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승의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저희들 가슴에는 활활 타는 불처럼 살아계셔서 ‘노나메기 세상’을 이루는데 독전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란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의 세부 실행 방법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asicIncome Issue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서 위치짓는 일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참고로 쟁점 토론회는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제5호(2020년 여름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2020년 11월 쟁점 토론회(제10차) 주제였던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12월 쟁점 토론회(제11차) 주제였던 “범주형 기본소득”, 2021년 1월 쟁점 토론회(제12차) 주제였던 “주권 화폐와 기본소득”을 정리하여 소개 한다.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와 일자리보장에 관한 입장*

* 이 글은 2020년 11월 14일에 개최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0차 쟁점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를 수정하고 축약한 것임을 밝힌다.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 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03; Wray, 2017 등 다수).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8, p. 111).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¹⁾

본고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무엇이 위에서 열거한 우리 시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따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

1)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일자리보장 지지자들의 첫 번째 주요 논쟁은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Fall 2005)’의 특집논문들에서, 두 번째 주요 논쟁은 ‘Basic Income Studies 7(2)(December 2012)’의 특집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 같다. 먼저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를 종합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

위에서 정의했듯이, 일자리보장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뜻한다(레이, 2017; Harvey, 2005; Tcherneva, 2003 등 다수). 일자리보장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빗대는 용어로서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ELS)’,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완충재고’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용어로서 ‘완충재고고용(Buffer Stock Employment; BSE)’, 이 프로그램이 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한 용어로서 ‘공공서비스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P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Tcherneva, 2003, 2018; 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 등 다수).

일자리보장의 수단과 목표를 요약하자면,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무한탄력적인 노동수요(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과 일자리보장을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은 민간 부문에서 노동인구를 모두 고용하지 못하여 생긴 일자리 갭(job gap)을 완전히 메울 만큼, 즉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흡수할 만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충분히, 그것도 경기불황기뿐만 아니라 경기호황기까지 포함하여 항상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완전고용 또는 강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찬 형태의 정책 구상이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나 공공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의 확충,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일반에 대한 반대와 비판으로 결코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종합 정리한다.

첫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임금 수준은

고정시키고, 노동공급량은 일자리 갭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규칙)에 따를 경우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경기변동 상으로 경기침체 국면인지 공황 국면인지 호황 국면인지 등에 상관없이, 또한 자동화 추세의 진행과도 관계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손쉽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 부문 및 기존 공공 부문과의 경쟁·대체 관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유사 직종의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노동인구의 이동 가능성, 행정 부담 및 비용과 모니터링 문제, 자동화 추세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일자리보장론자들의 약속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완충재고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실업자)’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Sawyer, 2003).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자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일자리 자체에 본질적 가치, 다양한 비화폐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아메리코AmeriCorps와 같은 현존하는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civic service program(Wray, 1999; 2000), 현존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참여소득과 결합하는 방식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Tcherneva and Wray, 2005; Tcherneva, 2007)을 고려해볼 때, 실제 시행 및 그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보장론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자리보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노동연계복지 workfare’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fair work’(경기침체, 공황, 자동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프로그램이며, 강제노동과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현재의 조건적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소득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공정한 노동’을 가장한 ‘노동연계복지’, 노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한 강제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유의미한 액수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만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강제적 성격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일제) 유급노동의 전면화’라고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고 노동 및 사회 보호 수준을 높이며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룬다.

넷째, 일자리보장 구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 undeserving poor’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반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각종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개인(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자유, 기회, 선택, 역량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일자리보장 구상의 근저에는 ‘(전일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노동주의에 대한 집착이자,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주의, 생산주의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실부합성과 실천적합성을 담보한 진정으로 해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대 추구 행위의 강화와 불평등 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소위 ‘공정한 노동fair work’이 아니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공평한 몫fair share’이고,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아니라 ‘공유복지commonfare’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최)상위 소득자 및 자산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과 부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대신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주의적인 개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보장은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정책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창출된 부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정도 공유하는 시스템인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기회와 자유를 확장시키는 해방적인 정책이다.

일곱째, 생태, 젠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하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 그린 뉴딜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이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Tcherneva, 2007). 하지만 일자리보장론은 생태·환경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린 뉴딜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그것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는 한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힘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조차 존재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압력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생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이전보다 개선시키면서도 이들의 에너지 사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이건민, 2018. 9. 20).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 소득(기본소득 정책패키지)이냐에 따라 그 정도는 상당히 상이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주의, 생산주

의, 노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생태적 전환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급박한 생태재앙에 제대로 대처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면서 이를 촉발하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도입·배치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복지보다 우선시하고 우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론은 젠더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시간 감축, 아동, 노인 돌봄 영역 등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젠더평등 지향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마련 및 조직문화 개선 등과 동반될 경우,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에서의 젠더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각 개인의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노동시간 배분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줄이고, 각자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킨다”(이건민, 2018. 9. 20).

종합하자면,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리얼 유토피아’로의 ‘거대한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바로 “기본소득”이다(이건민, 2017, p. 112). 기본소득은 “자본과 노동 중에서 자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소유 기업 중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노동과 활동 중에서 노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생산과 재생산 중에서 생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성장과 복지 중에서 성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개발/발전과 생태/환경 중에서 개발/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기존의 사회적 기울기 social gradient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이건민, 2019, pp. 3-4).

보론: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

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일자리보장보다 기본소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일자리보장은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아이디어인가? 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일자리보장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노우에 도모히로(2020, p. 148)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Job Guarantee

Program; JGP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낫긴 하지만 “탈노동 사회가 정착할 때까지는 기본소득에 더해 JGP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희망자를 모두 받아서 매일 2시간 정도 도로와 공원을 청소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시급 1,000엔으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일하면 2,000엔이 됩니다. 그 후 도시락을 나눠 주고 공공시설 등에서 환담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 이것은 니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강남훈은 역자 후기(도모히로, 2020, pp. 192-193)에서 “기후 위기, 인공지능, 수명 연장에 대응하려면 농업을 소농 중심(소농형 스마트 농장을 포함해서)으로 개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게 만들어야” 하므로, 농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아이디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참여수당(농업 종사자들에게 개인별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전국민 기본소득 이외에 농민기본소득을 추가로 받게 된다”(도모히로, 2020, p. 193).

② 일자리보장론자들도 강조하고 있는 아바 러너^{Abba Lerner}의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접근법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균형재정론에 집착하느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유급노동 중심성, (전일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은 경계한다.

③ 시장 영역과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대처하지 못한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다. ‘미충족 사회욕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돌봄, 생태·환경 보전 활동, 자원봉사활동,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미충족 사회욕구’의 상당 부분이 재량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미충족 사회욕구’는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양의 외부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발성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이것만으로 미충족 사회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건민, 2020). 분산화된 기제라는 점도 기본소득의 약점일 수 있다(Pérez-Muñoz, 2016; 2018). 따라서 참여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참여예산제도,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기존 제도,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미충족 사회욕구’에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이때 참여소득은 Atkinson(1996) 식의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Pérez-Muñoz(2016; 2018) 식의 제약적인 형태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부문에 따라서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임금, 노동조건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충족 사회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를 통한 ‘(강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④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

다.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과 그린 뉴딜의 추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 없는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은 기대한 효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린 뉴딜의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를 통한 '(강한) 완전고용의 달성',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이건민. (2017). “‘고용크레딧 거래제도’의 문제점: 강두용의 구상에 대한 비판”. 『녹색평론』, 156, 102-112.
- 이건민. (2018. 9. 20).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③ 삶 전환의 열쇳말, 기본소득”. 『프레시안』. [2021년 2월 23일 최종접속]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1429>
- 이건민. (2019).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코드와 흐름의 잉여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월 26일]
<https://alternative.house/191026-news-2019criso-yi>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19/10/191026-session6-discussion-Gunmin-Yi.pdf>
- 이건민.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방향 모색: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에 비추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 제33차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 [12월 23일]
<https://alternative.house/news-20201223-forum-yi>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20/12/20201223-33rd-senior-society-expert-forum-yi.pdf>
- Atkinson, A. B. (1996). “A Defence of Participation Income”. Political Quarterly, 67(1), 67-70.
- Harvey, P. (2005). Right to Work and Basic Income Guarantees: Competing or Complementary Goal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8-63.
- Pérez-Muñoz, C. (2016). “A Defens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 169-193.
- Pérez-Muñoz, C. (2018). “Participation Income and the Provision of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Political Quarterly, 89(2), 268-272.
- Sawyer, M. (2003). Employer of Last Resort: Could It Delive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7(4), 881-907.
- Tcherneva, P. R., & Wray, L. R. (2005). Common Goals-Different Solutions: Can Basic Income and Job Guarantees Deliver Their Own Promise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125-166.
- Tcherneva, P. R. (2003). Job or Income Guarantee?. C-FEPS Working Paper, No. 2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ugust 2003]
- Tcherneva, P. R. (2007). What Are the Relative Macroeconomic Merits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irect Job Creation and Basic Income Guarantees?. Levy Working Paper, No. 517.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October 2007]
- Tcherneva, P. R. (2018). The Job Guarantee: Design, Jobs, and Implementation. Levy Working Paper No. 90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Tomohiro, I. (2020).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 (송주명, 강남훈, 안현효 역). 과천: 진인진. (원서출판 2019)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8).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서울: 흐름출판. (원서출판 2017)

Wray, L. R., Dantas, F., Fullwiler, S., Tcherneva, P. R., & Kelton, S. A. (2018). Public Service Employment: A Path to Full Employment. Research Project Report. New York: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Wray, L. R., Kelton, S. A., Tcherneva, P. R., Fullwiler, S., & Dantas, F. (2018). Guaranteed Jobs through a Public Service Employment Program. Policy Note, No. 18-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Wray, L. R. (1999). Public Service Employment-Assured Jobs Program: Further Considera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33(2), 483-490.

Wray, L. R. (2000). The Employer of Last Resort Approach to Full Employment. C-FEPS Working Paper, No. 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uly 2000]

Wray, L. R.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홍기빈 역). 서울: 책담. (원서출판 2015)

범주형 기본소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효상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범주형 기본소득은 겉보기에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당연히 철학적, 신학적 의미에서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물론 인간의 권리가 특정 정치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정치공동체에 의해 시민의 권리로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정치공동체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내의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형용모순까지는 아니라 할 지라도 결여된 혹은 미달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주형 기본소득이 제시된 이유는 이른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그 새로움으로 인해 실현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이야기된다. 하나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 예를 들어 GDP의 25퍼센트 정도를 새로운 원칙과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을 위해 거둬들인 돈은 고스란히 모두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재원에만 눈을 돌리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긴 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해결은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윤리 및 호혜성의 원리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개별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노동 윤리 및 호혜성의 원

리와 다른 원리에 기초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대의 노동·소유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며 인간의 상호성과 연결성을 노동·가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은 현실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 제도를 흡수할 것인지, 어떤 복지 제도와 병행할 것인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어떤 복지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이른바 도입 모델 혹은 이행 전략이라 는 쟁점을 제기한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정치공동체 내의 일부 집단에게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이렇게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직면하는 난점을 회피 혹은 극복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제기된 기본소득의 변형태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변형태인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 아이디어 혹은 완전 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주요한 원칙을 서술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의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그리고 주요한 원칙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2조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뒷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는 “인류 모두의 것인 자연적 기초로부터 흘러나온 수익”인 자연적 공유부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인 인공적 공유부 모두를 말한다. 이는 인간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거나 인간이라는 집합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부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이렇게 모든 인간을 공유자 commoner로 보는 것에서 나온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관련한 쟁점이 ‘부자에게도 주어야 하는가’인데, 기본소득의 원천과 정당성을 공유부로 볼 경우 공유자로서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가 정치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로 정치공동체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권리 주체이자 제도의 대상이 된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보편성과 구별해서 제시될 때는 가장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무조건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요하게 노동 능력, 노동 의사, 구직 노력 등과 관련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조건성과 관련된다. 사실 이는 보편성과 겹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무조건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받은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수급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개별성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따라 나오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동등자라는 것을 표현한다. 현실에서 개별성은 근대적 삶의 지향인 개인의 해방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치 않는 제도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성은 일회적 지급이 아니며, 일정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한다. 일회적 지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초 자산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규칙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는 삶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현금 지급은 받은 기본소득을 수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된다.

끝으로 다섯 가지 원칙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이 소득 보장이라 할 때 어느 정도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개 기본소득의 목표를 기본적인 삶의 영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소득 자체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보충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이 있다. 이때 전자를 완전 기본소득이라 하며, 후자를 부분 기본소득이라 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게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우선 (정치공동체 내에서의) 보편성을 포기한 정책이자 전략이다. 일부 논자가 제시한 범주형 기본소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는 인구범주형 기본소득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직업 집단에 한정하는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다.

인구범주형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편수당, 즉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고용) 노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여의 원리를 보호이라는 연대성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애는 이런 원리에서 볼 때 예외적 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보편 수당이다. 고용 노동과 기여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생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점에서는 시민의 권리 이외의 설명 방식은 없다. 이런 점은 또 다른 보편수당인 장애수당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인간은 누구나 생애 주기를 거쳐 간다는 점에서 보편수당은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령에 기초한 인구범주형 기본소득도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직업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참여소득과 유사하다.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수행’을 지급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포기한 방책이다. 참여소득은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참여소득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무엇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인지를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참여소득 수급자가 그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반대하는 관료제와 가부장제의 작동까지 여러 문제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참여소득은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제한된 성격이 있긴 하지만 단번에 기본소득이 실시되기 어렵다고 할 때, 즉 심리적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위한 동맹과 연합을 형성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일종의 파일럿으로서 의미가 있다.

파일럿으로서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에게 그만큼의 소득 보장 효과가 있다. 여기에 기본소득은 그 화폐 가치보다 해방적 가치가 더 큰 정책이라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다음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복지 경험을 통해 복지 제도의 확대를 꾀하는 전략과 달아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직접적인 이해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잠정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는 고스란히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선 범주형 기본소득을 받을 집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의 부정적 효과로 비판한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청년이건 농민이건 특정 집단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때, 왜 이들에게 (먼저)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대개는 해당 집단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어려운지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둘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차이가 범주형 기본 소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먼저 받는 집단과 나중에 받게 될 집단 사이의 연대성을 가로막

는 일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화해서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주형 기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하나하나 선정할 때마다 그만큼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범주형 기본소득이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에피소드에 불과한 일이 되거나 심지어 방해하게 될지는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실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제안된 범주형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인구범주형 기본소득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의 삶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여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지지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셋째, 지역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삼으로써 경제와 복지를 결합시키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는 복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복지 정치의 동맹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이런 효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제한된 범위의 적은 예산으로 일부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확대된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기본소득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다른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왜 기본소득을 (먼저) 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환경 보호, 공동체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해 공동체가 농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소득이라 불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운동본부가 농민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농업 참여소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런 난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 집단을 선정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 수준에 실시하고자 할 때도 등장할 것이다. 왜 청년인가? 다양한 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범주형 기본소득이 확대되어 가는 방식으로 포괄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경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본소득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지지를 확산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정책 및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략 속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포괄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략과 경로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난 기본소득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기본소득은 분명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국토배당과 탄소세-탄소배당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 주권화폐론 검토 -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원장

이 글은 현행 화폐발행 체제를 개혁하여 화폐발행이익(시뇨리지)을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권화폐론의 주장을 검토한다. 시뇨리지는 화폐가 대표하는 액면 가치와 화폐를 제조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차이를 말한다.

경제는 반드시 화폐를 필요로 하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양(통화량)이 그에 조응해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유동성 부족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침체를 겪게 된다. 화폐가 경제성장에 맞춰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뇨리지가 발생한다.

화폐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뇨리지는 전형적인 공동체 성원 모두의 공유부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민간 은행이 창조하는 은행화폐가 유통화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시뇨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화폐 체제를 개혁하여 정부가 근대 이전의 체제와 같이 법정화폐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법정화폐가 지금과는 달리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뇨리지는 기본소득의 지급과 같은 공공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I.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경제에서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통 화폐의 기본 형

태는 두가지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다. 현금은 법정화폐인 중앙은행권(지폐)과 주화를 말하며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대한 청구권의 의미를 갖는 은행화폐(bank-money)이다. 우리는 요구불 예금을 계좌 이체, 현금 카드, 수표 등을 활용하여 거래에 사용한다.

<표 1> 통화량의 범주와 구성 요소



자료: Huber & Robertson(2001), Creating New Money, p.73

일반 경제주체는 경제 활동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은행을 매개로 하여 은행화폐를 사용한다. 그 외에 또 하나의 화폐 흐름이 있다. 은행 상호 간이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지불준비금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통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상이한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현 체제에서 가장 우선적인 범주는 본원통화이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말하며 은행의 지불준비금과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구성된다. 보통 M0라고 표시한다. 그 다음으로 M1으로 불리는 통화량이 있다. M1은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합친 것이다. M1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유통 화폐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II. 현행 은행화폐제도의 문제점

정통 경제학은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와 법정 지급준비율을 통해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상업은행은 화폐창조 과정에서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화폐의 창조 과정은 교과서와는 아주 다르다. 주권화폐론은 은행이 화폐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은행은 단순히 저축을 대출로 연결하는 중개 기관에 머물지 않는다. 교과서는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고 상정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예금을 일으키고 화폐를 창조한다. 현실의 화폐창조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금리, 경제 조건, 다른 투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객에게 대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현금의 형태로 신용을 주지 않고 고객의 예금계좌에 금액을 기록한다. 그 금액은 곧 수표, 계좌이체, 현금카드 따위를 통해 지불 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된다. 곧 신용창조가 화폐창조인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양을 확인하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전망이 높으면 먼저 대출을 하고 이후 지급준비금을 맞춘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즉 상업은행의 영리적 판단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고 중앙은행은 오히려 그것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업은행이 사실상 화폐발행의 주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빼앗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시뇨리지의 유출과 공공적 활용의 제약

현대의 화폐 발행 체제에서는 상업은행이 대부분의 유통 화폐를 창조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만큼 시뇨리지를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시뇨리지도 온전히 국가의 재정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업은행이 시뇨리지를 변형된 형태로 흡수하여 특별이윤을 누린다.

우선 상업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특별 이윤을 누리는지 알아보자. 상업은행은 은행화폐를 창조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즉 상업은행이 신용을 창조하면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만들어지며 대출이 상환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상업은행이 전통적인 의미의 시뇨리지를 그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상업은행은 보통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실현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상업은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객의 저축에 의한 예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적인 예금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출 금리를 통해서 특별 이윤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처럼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서 대출을 한다면 자금 확보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채권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신용화폐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그만큼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예금 금리만을 보장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은 은행화폐를 사용하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을 화폐 사용료로 상업은행에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일종의 화폐 조세(money taxes)라고 할 수 있는데, 상업은행의 특수한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상업은행이 은행화폐의 대출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특별한 이

윤은 상업은행이 주된 화폐 공급자의 지위에 힘입어 누리는 변형된 형태의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IV. 주권화폐론의 개혁 방향

따라서 주권화폐론은 (1) 상업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여 은행화폐의 발행을 정지시키고 (2)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써 은행화폐가 담당해온 역할을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주권화폐론은 정부(지위가 변경된 중앙은행일 수도 있다)가 본원통화를 직접 자산으로서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기관이 법정화폐인 본원통화를 자산으로서 발행한다면 새로 창조된 본원통화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전되어 공적 목적을 위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에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의 한 형식으로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화폐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는 법정화폐의 창조에 따른 시뇨리지를 기본소득의 지급과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주권화폐 도입에 따른 기본소득의 재원 추정

앞서 보았듯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화폐의 증가는 자주 인플레이션을 연상시키지만 경제의 필수적이자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 국가가 주권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통 화폐를 주권화폐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시뇨리지는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추정해보자.

조세프 후버 등은 2001년의 논문에서 미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은행화폐를 주권화폐로 대체했을 때 예상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추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원용하여 한국 경제를 적용했다. 즉 한국 경제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화량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그 기간 동안 주권화폐 제도에 따라 유통 화폐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뇨리지의 규모를 추정했다.

주권화폐 개혁은 은행화폐(bankmoney, 요구불예금)를 주권화폐로 대체한다. 이는 현 제도에서 M0과 M1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롭게 규정되는 공식 유통화폐를 M이라고 하자. 개혁 이후의 M의 총량은 현재의 M0와 M1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권화폐 개혁을 단행하면 M은 기존에 M0과 M1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M은 현재 유통 화폐를 대표하는 M1의 구성요소인 유통중인 현금(A)과 요구불예금(B)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 경

<표 2> 주권화폐 개혁 이후 통화량 M에 대한 추정

	A	B	A+B	C	D	C+D+M1	E	F	E+F+M
	현금	요금불 예금	M1	시재금	지준금의 50%	현재의 M			미래의 M
2007	21.0	291.8	312.8	7.3	13.8	333.8	359.1	3.6	697
2008	22.1	285.2	307.3	7.8	15.1	330.2	410.3	3.9	744
2009	25.1	332.2	357.3	9.3	18.3	384.9	452.6	4.6	842
2010	31.3	368.1	399.4	10.1	18.1	427.7	491.9	5.1	925
2011	36.6	389.1	425.7	11.3	19.3	456.3	512.7	5.6	975
2012	41.4	400.6	442.0	12.3	20.4	474.7	539.6	6.2	1,020
2013	48.8	435.3	484.1	13.7	21.3	519.1	565.7	6.9	1,092
2014	58.2	478.5	536.7	15.5	22.6	574.8	602.9	7.7	1,185
2015	70.2	566.4	636.6	18.1	25.3	680.0	654.9	9.1	1,344
2016	81.5	652.9	734.4	20.6	28.0	783.0	702.8	10.3	1,496
2017	91.6	710.4	802.0	22.8	30.1	854.9	741.4	11.4	1,608
2018	100.0	741.0	841.0	24.7	32.5	898.2	788.1	12.4	1,699
2019	108.7	768.2	876.9	26.8	35.1	938.9	843.0	13.4	1,795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제의 M1이 해당 기간에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는 <표 2>의 4열에 표시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M1은 876.9조 원이며 GDP의 약 45.6%이다. 또한 M은 현재 지불준비금의 한 요소인 시재금(C: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과 함께 지준금 중에서 은행 자체의 영업에 사용될 부분(D)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기존의 지준금 중 50%가 새로운 제도에서는 은행 자신의 영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M1에 시재금(C)과 은행 영업을 위한 지준금(D)를 보태면 현재의 조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M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추정치는 <표 2>의 7열에 표시되어 있다.

개혁이 이뤄진다면 여기에 두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M2에 포함되지만 개혁 이후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될 M2의 약 30%로 추정되는 현재의 저축성 예금이다. 또 다른 항목은 개혁에 힘입어 늘어날 수 있는 은행의 운영 자금이다. 개혁이 이뤄지면 비현금성 결제가 지준금과 현금의 순환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단일체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증개나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금액은 오늘날 은행 시재금의 5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가 주권화폐 제도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했을 때의 M의 규모는 <표 2>의 10열의 수치와 같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개혁 이후 M의 규모는 1,795조 원으로 같은 해 GDP의 약 94%이다.

이 모델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M이 모두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로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M의 증가량이 중요하다. <표 3>의 2열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M의 연간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12년 간의 연 평균 증가액은 약 91.6조 원이다. 여기에 화폐의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뺀다면 나머지는 국가의 순수한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표 3> 주권화폐 도입 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 추정

	M의 증가액	인구	1인당 기본소득
	(조원)	(명)	(원)
2008	47.84	49,182,456	972,740
2009	97.66	49,347,461	1,978,945
2010	82.53	49,545,636	1,665,735
2011	50.03	49,786,159	1,004,942
2012	45.76	50,060,639	914,066
2013	71.28	50,345,717	1,415,892
2014	93.70	50,607,907	1,851,451
2015	158.48	50,823,093	3,118,349
2016	152.18	50,983,457	2,984,969
2017	111.59	51,096,415	2,183,994
2018	91.01	51,171,706	1,778,490
2019	96.59	51,225,308	1,885,681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만약 12년 간 M을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서 공급하고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무시한다면, 각 연도의 기본소득 지급액은 각 연도 M의 증가량을 그 해의 인구를 나눈 값이 된다.

이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액은 <표3>의 4 열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액은 약 97만 원이며 매년 약 4.6%씩 증가하여 2019년의 추정액은 약 189만 원(월 16만 원)이다.

VI. 결론. 제도 개혁의 전망

중앙은행이 정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부채의 형태로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중앙은행이 국가의 독립된 한 부(제4부)가 되어서 화폐를 찍고 그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이관하는 방식은 매우 낯설다. 또한 주권화폐제도로의 이행은 기존의 상업은행이 누리는 막대한 특권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도 아주 클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런 유형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기에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는 우선 중앙은행이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은행은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화폐를 창조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계속 민간의 자산을 매입해야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은행은 그 지급준비금을 바탕으로 은행화폐를 창조할 수 있다. 본원통화의 증가 없이 상업은행의 신용창조만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현재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주요 자산은 국채다. 그렇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 국채를 만들어 내

야 한다. 결국 본원통화가 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를 계속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 체제는 정부 부채의 증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체제 내에서는 현재 누적된 정부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다. 정부가 기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흑자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중의 국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중앙은행은 매수할 자산이 없어서 적절하게 통화를 공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민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과도해서 신용 창조를 통한 통화 공급도 한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의 민간 부채는 대부분 GDP의 200%를 넘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화폐 제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민간 부채 증가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면 성장이 정체하고, 성장을 허용하면 민간 부채가 과잉이 되어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경제는 화폐 제도 때문에 GDP 축소 없이 민간 부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 제도의 개혁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중앙은행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형적인 화폐 발행의 방식이었다. 근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정부 지폐를 발행했으며 케네디 대통령도 정부 지폐 발행을 검토했다. 현재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때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서(미국은 재무부가 동전을 발행한다) 그 동전으로 미국의 국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검토했던 적이 있다. 이 시도는 변형된 형태로 주권화폐를 활용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채를 동반해야 하는 현 제도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주권화폐제도로의 이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노우에 도모히로,『거품경제라도 괜찮아』, 강남훈 외 번역, 다들책방, 2019.
- 이노우에 도모히로,『기본소득의 경제학』, 송주명 외 역, 진인진, 2020.
- Alex Kampa, *The credit conversion theory of Money*, Godel Press, 2016.
- Atsushi Naito, *Money, Credit and the State: Post Keynesian Credit Theory and Chartalism*.
- Geoff Crocker, *Basic Income and Sovereign Money*, 2020.
- Georg Friedrich Knapp, “The State Theory of Money,” Clifton, NY: Augustus M. Kelley, 1924.
- James Tobin, Commercial banks as creators of money. In: D. Carson and D. Irwin, eds. *Banking and monetary studies*, edited by D. Carson, for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1963.
- Joseph Huber, Modern Money and Sovereign Currency, 3. April 2013. www.sovereignmoney.eu/modern-money-and-sovereign-currency

sovereign-currency.

Joseph Huber, Sovereign Money.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Kindle Edition. P. 902.

Joseph Huber & James Robertson Creating New Money, New Economics Foundation, 2000.

Laurie Macfarlane, Josh Ryan-Collins, Ole Bjerg, Rasmus Nielsen and Duncan McCann, Making Money From Making Money Seigniorage in the Modern Economy, New Economics Foundation, 31 January 2017.

McLeay, Thomas, & Radia,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Quarterly Bulletin 2014 Q1, England of Bank.

Mitchell Innes, What is Money? The Banking Law Journal, May 1913.

Niall Ferguson, The Ascent of Money, 2008,『금융의 지배』, 민음사, 2010.

Pavlina Tcherneva. Money, Power, and Monetary Regimes,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861, 2016.

Robert A. Mundell, The Birth of Coinage,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Columbia University, 1999.

Richard Vague, A Brief History of Doom, Two Hundred Years of Financial Cris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Richard Vague, Toward a New Theory of Money and Debt Richard Vague, Gabriel Investments, December 2019.

BasicIncome Issue 2.

이번 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 2’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과 병행해서 존재해야 하는 제도/이념/지향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의 ‘이 계절의 이슈 2’의 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물론 제정된 최종적인 법률 명칭은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계절의 이슈 2의 코너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18년 12월 20일 24세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월 26일에서야 간신히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은 논란과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도흠 교수님이,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 차원에서 이 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한인임 소장님이,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의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에 대해서 김현주 교수님이 다루어주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 인간 삶의 관점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

1. 왜 죽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가

환청이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퍽퍽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이어서 고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지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김용균 씨가 죽은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한동안 전깃불을 볼 때마다 그 빛에 그의 피와 살이 그 빛 어디엔가 배어있을 듯하여 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묵상하였다.

세청 촛불정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거의 11만 명(109,242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유명을 달리 한 노동자만 2,020명(사고: 855명, 질병: 1,165명)에 달한다. 매일 5.53명이 산업재해로 죽음을 맞는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노동 현장에서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사랑받는 자식들이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벨트에 끼어서, 가스에 질식하여, 불에 타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그리 처참하게 죽었을 때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게 하자고 국민이 성원하고 정부가 약속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정부와 국회가 ‘용균이 없는 용균이 법’인 산안법을 개정한 것으로 그치는 사이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78명이나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 기업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말단 공무원 한 명뿐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 8일에서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뒤에도 산재사고는 별로 변한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력, 기술, 재정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노동자의 과도한 착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위협, 환경파괴 등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면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과 국민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관이나 중재자 구실을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토의 수호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합의에서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자본에 휘둘려 이를 방기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가져가는 대신 생산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천민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서, 국가와 자본이 유착관계를 형성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사람의 목숨 값보다 안전비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위험 관리를 등한히 하고 있다.

산업재해만으로 한정하면, 매년 사고사로 죽는 9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겨우 몇 백만 원을 들여 발판이나 안전그물만 마련하였어도 살릴 수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2018~19년 사이 법원이 공개한 6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을 보면,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겨우 1.9%에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또한 9.3개월에 불과하였다. 벌금형인 것이 절반에 달하였고, 평균 벌금 액수는 458만 원이었다(『민중의 소리』 2020년 9월 15일).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안전시설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다. 그것도 확률적으로 노동자가 사고가 나고 죽을 경우에 한해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도 서열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비용이 더 싸다. 이들은 살아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차별을 받지만, 죽어서도 벌금과 보험료, 위자료 등에서도 그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강행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가

18세기에 이미 조선조의 민중들은 만백성을 다스리는 용왕과 서민사회의 은유인 산증 세계에서도 약자인 토끼의 목숨이 똑같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토끼전』에 담아 향유하였다. 중세의 ‘주술의 정원’이 붕괴되면서 인간이 신분과 처지를 떠나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원칙이 20세기의 보편이 되었고 각 나라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제10조와 11조에서 이에 대해 명토박고 있다. 더구나 이 정권과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덕에 촛불의 힘으로 집권하였다.

그럼에도 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가. 왜 이 정권은 이를 방지하는가. 촛불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전문가 및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았고 이 동맹에 민주당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외침대로 적폐의 핵심이 재벌과 미국인데 이 정권은 청산은커녕 두 적폐에 저항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구도 속에서 보수 수구세력이 개혁에 저항하고, 현 정권과 민주당이 두 적폐와 기득권 동맹의 눈치를 보며 이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당 인사들의 안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나마 재계의 로비로 받아 하나둘씩 나쁜 쪽으로 수정되었다.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대폭 수용한 누더기 법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국민과 자본 사이의 중재자인 국가는 자본의 탐욕에 일정 정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 재갈 중 최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며, 그 법은 당연히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 강제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로 지불하는 벌금이 안전비용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얼마나 부합할까.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한형을 도입하였으며,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직업성 질병을 포함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권영국 변호사의 문건).

그럼에도 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거리가 먼 ‘누더기 법’이라 하는가. 법 취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깃털이 아니라 몸통인 최고 경영자들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안전시설을 덜 설치하여 얻는 비용에 비하여 지불해야 할 벌금이 획기적으로 많아야 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틈이 잘 보이지 않아야 한다. 2014년에 현대제철에서 1년 5개월 동안 13명이나 산재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고성 전화를 하였다. 정몽구 회장이 바로 헬기를 타고 당진 공장으로 가서 5천억 원을 안전에 투자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원부터 엄중 문책하겠다고 선언하였다(《뉴스웨이》 2014년 2월 7일). 그러자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제대로 제정되면 모든 기업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몸통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이 법의 2조 8항을 보면, “‘경영책임자 등’ 이란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and’가 아닌 ‘or’는 선택을 뜻한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가 안전보건담당자를 두고 그에게 이를 위임하였을 경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무력

화하는 지점이다.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예외로 하고 있다. 전혀 없던 조항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강력한 로비를 반영한 결과다. 2019년에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8,725,160명 가운데 16%인 2,996,744명에 달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 2020명 가운데 24.46%인 4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16%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률은 24%가 넘게 차지한다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전체 사업장 수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80%에 가깝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80%의 사업장, 3백만 명의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고 500여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 아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얼마나 되지 않는 안전비용과 맞바꾸는 국가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4조 1항은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가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관리상 지시만 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게다가 처음 발의안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후퇴하였으며,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6조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벌금의 하한선도 없앴다. 이는 재벌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을 수용한 결과다.

법이란 것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번 법을 보면, 11조 밖에 안 되는 간단한 법조항임에도 이를 곳곳에 만들었다. 2조 4항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을 999 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조건에 포함되는 업소는 전체 다중 이용업소 179,256개소 중 2.5%인 4,492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7.5%는 제외된다(권영국 변호사의 문건). 2.5%의 업소도 바닥면적을 999 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면 이 법의 조항은 무력화한다. 2조 5항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육상운송교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내버스와 일반택시는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발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헌법 제7조와 3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해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불법적인 인허가나 감독부재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런 대형참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이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3년이나 유보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 사고 사망자 수의 60~80%를 차지한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재해자 109,242명 가운데 80,122명으로 73%,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1,285명으로 63.6%에 달한다(「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 사망자 10명 중 6~8명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망하는데, 유

예기간을 두면 6~8명은 죽게 놔두고 2명만 살리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문을 읽으며 “어이쿠! 이제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영책임자가 있을까? 이 법에서 규정한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두려워하여 대규모 안전투자를 할 기업이 있을까?

앞으로 경영책임자, 원청과 발주처, 공무원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사업장의 차등을 없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도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과 벌금에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야 한다.

3. 가장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지금 가장 절박한 자리는 어디일까. 코로나로 사망하는 곳도 이에 못지않지만, 단연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자리다. 매일 300여 명이 일하다가 떨어지거나 벨트에 끼이거나 무엇엔가 깔려 다치고, 그중 2.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2015~2019년 평균). 가족과 더불어 기업과 나라의 경제를 살리던 일꾼들이 안전 소홀로 죽어가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직접 원인은 떨어짐(40.6%), 끼임(12.4%), 부딪힘(9.8%), 깔림(7.8%), 무너짐(3.6%) 등이지만(「2019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발생형태별 통계」), 근본 원인은 안전비용을 목숨 값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 안전시설의 미비, 적당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다. 실례로, 안전보건공단의 3년간(2016~2018년)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약 30%가 ‘방호장치 미설치나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는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등 ‘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 차례로 분석됐다.

도대체 작업발판 값이 얼마나 하는가.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산물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이는 더욱 극단화하였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당연시되었다. 자본의 야만을 제한하던 것들이 규제 철폐로 사라지고 기업이 더욱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생명보다 비용을 더 따지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히말라야 설산에 석양이 비추는 것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잠겨서 한 왕비가 말하였다. “세상 무엇과도 저 산을 바꾸지 않겠지요?”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저 산이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목숨!”

인간의 생명은 온통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보다 더 귀중하다. 대체로, 되살림도 불가능하다. 사망자들은 모두 험씬 사랑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나 자식들이다. 유가족의 말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가족의 삶은 멈춘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하였다. 인간성의 가장 큰 징표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필자가 몇몇 단체에 제안하자 절박감과 공감으로 즉각 응답하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의평화불교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의 교수, 연구자, 불자 지식인, 작가들이 2020년 12월 18일에 함께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1월 8일까지 22일 동안 칼바람이 부는 국회 앞 길거리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로 동조 단식을 하였다. 첫날 동조단식을 한 후에 필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도 만나고 《한겨레신문》과 SNS에 글을 쓰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하여 문자도 보내는 등 깜냥이 되는 한 몸부림을 쳐보았다. 하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리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그곳에 영양과 면역세포가 모여 치유하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각 기업과 일터에서 가장 아픈 곳은 산재 사망 현장이다. 그곳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기업,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와 정부의 관계자, 국회의원부터 자본주의적 탐욕에서 벗어나 돈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문화가 바뀌고 정착되기를 갈망한다.

시민·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한인임

들어가며

노동환경건강

연구소 &

일과 건강 연구원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한국사회의 3대 문제점을 반토막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름 아닌 교통사고사망률,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국민자살률이었다. 이 지표들이 대상이 된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바로 OECD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불명예이다. 1996년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거의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지표들이다. 교통정책이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업용 차량 사고(과로 등이 원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추락·끼임·부딪침, 작업절차 무시, 2인 1조 작업 무시 등이 노동자 사고 사망의 원인이다.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괴롭힘 등이 국민자살의 원인이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보다는 기계중심, 안전보다는 이윤중심,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생명은 경시되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문화성장을 통한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10위권 수준의 GDP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그룹(30-50클럽,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K팝이나 한류는 또 어떠한가. 국가의 덩치와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2021년 1월 8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통과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시민사회·노동조합 운동영역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성과였다.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갔다. 이 동기가 되었던 법이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었다. 이 법의 배경이 된 것은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국의 경우 사건 발생 20년 만에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뒤 7년, 사회 의제화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더 늦게 제정된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던 시기부터 산재사망에 있어서는 1위였다는 점, 세월호 참사 이후 더 큰 피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 2020년에도 ‘이천참사’가 여지없이 재발되었다는 점 등은 좀 더 빨리 제정되었어야 했을 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제정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대상이 아니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근로기준법 또한 마찬가지다.) 법률이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은 제정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노동자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과 일하는 사람의 중대재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다단계 하청 노동자, 심지어 외부에 있는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배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주에 대한 의무와 원청의 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였다.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다. 또한 시민중대재해와 노동자 중대재해의 경우 모두 행위자(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에 더하여 1인 이상의 사망(질병, 사고 모두 대상), 다수의 질병이나 부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 사망의 경우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과 노동자

이 계절의 이슈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소위 하한형이 도입된 것이다. 이 경우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피해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 사항 중 강력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질병’에 대한 접근이다. 시행령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질병사망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많은 것이 ‘뇌·심혈관계질환’이고 이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수가 연간 5,000명에 이른다(직업을 가진 국민 중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는 연간 약 5,200명이다). 이들 자살자들은 정말 업무관련성이 하나도 없을까. 직장 과로, 성과 압박, 평가,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은 자살을 부추기는

조문	제정법 주요내용	해설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종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해당 -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
중대 산업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와 질병(자살 포함)을 모두 포함 대통령령에서 질병 유형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만 처벌하지만 본 법률에서는 부상과 질병도 처벌 대상
중대 시민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시민 또한 사고와 질병 모두 처벌 대상이 됨
원청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고나 다단계 모든 하청까지 대상. 사외하청 중에서도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함 - 원청이 필요 조치를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처벌
경영 책임자 처벌	-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과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위반 시는 각 항의 50% 가중 처벌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하한형 도입
법인 처벌	사망은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물질로 인한 질병으로 대통령령에서 한정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아 있는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내년이 되어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제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나 적용유예가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민·노동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또한 전체 노동자 사고사망의 3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제는 아예 빠져 있다. 적용유예기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천 명에 달한다. 모두 소중한 하나하나의 목숨이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연인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5인 미만 노동자의 사망에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숨에도 규모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소사업장 사업주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하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인·허가권을 가진 책임공무원 집단이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시설 붕괴로 수련회를 갔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사실은 위·변조된 건축허가신청서를 경주시청 측에서는 ‘모르고’ 허가를 냈다고 한다. 또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준공허가’까지 내주었다. 관할 관청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외부 감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책임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향후 ‘법 개정’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 많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이다. 노동자·시민은 항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력기관의 불공정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피고가 대기업일 경우 무조건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피해자 집단은 재판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천 명의 사망자와 7천 명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조직·날조된 것인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와 관련해 피의자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사망 20개월 만이다. 이미 2019년 9월 국무총리실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적시한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이 이렇게 뜰을 들인 이유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는 의도였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시민 재해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매 사건을 면밀히 기록해야 한다. 허투루 법을 무력화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글을 나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족·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투쟁, 노동·시민社会의 총체적 결합, 노동자·시민 재해에 긍정적으로 바뀐 언론의 태도, 21대 새로운 국회의 적극적 변화 등으로 근래에 보기 힘든 큰 성과물로 탄생했다. 물론 없던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열렬한 국민적 지지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그러나 ‘K-불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삶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 또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열악한 집단, K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초, 이 법의 통과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역시 그러하였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사망 이후 유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입법 예고 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는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교훈으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 조항 하나 하나에 산재 사망자, 부상자, 직업병을 얻은 이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법안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십여 일이 지난 12월 21일에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도급금지, 도급 제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12월 27일 본 회의에서 급하게 통과되었다. 그 뒤로 김용균의 동료들은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 부르게 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뿐 아니라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다

시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가 모여 발의되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제정운동본부)가 결성하였다. 제정운동본부는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하였다. 12월 7일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은 임시국회 회기 내 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2월 17일에는 학자 전문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시민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경영계는 이 법안에 대하여 거세게 반대하였고, 정부 역시 핵심 조항에 대하여 후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월 8일에 통과되었다. 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표였다.

이 글은 중대재해법의 제정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학자 전문가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과된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의 과정

1)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히 논의되지 못 한 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는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는 여러 노동단체들이 모여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신기할 정도로 단골 수상자 명단이 바뀌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1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공론화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시민과 소비자의 안전 이슈로까지 확장되었다. 중대재해법 논의가 ‘노동’의제에서 ‘사회적’의제로 확장되었다. 2015년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하여 23개 단체가 모여 ‘제정연대’를 결성하였다. 2017년, 고 노희찬 의원이 의사결정 책임자인 법인·이사·원청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2020년 5월, 248개 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1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과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여 만든 대안이었다.

2) 학자 전문가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본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

정부와 국회는 이 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2020년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여당 관계자가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11월 9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42명이 국회에 입장문을 제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에는 산안법은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산안법은 기업에 의한 시민 재해를 다룰 수 없다는 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재 유족의 단식농성 소식을 접하고 고 김용균 특조위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학자 전문가 2,164명이 동참하였고,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할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들어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를 철회할 것, 국민의힘 안에서 제외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교협, 민변, 안전보건학계,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의 대표들은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한정애 의원과 법사위 법안소위 간사 백혜련 의원 면담, 12월 17일 법사위원장 윤호중의원과 박주민의원 면담을 통해 학자 전문가 공동 선언인들을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법의 연내 통과를 호소하였다.

학자 전문가들은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11회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통해 언론에 의견을 제시하였다(부록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함께 핵심 조항을 누락시킬 우려를 표명하였고(신희주), 원청이 중대재해에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박혜영),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윤근, 남우근, 유성규, 강수돌). 또 한 위원 논란(한상희), 공무원 처벌조항(전주희),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안홍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에서 직업병은 사실상 제외하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하였다(김현주).

12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처음 열렸다.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12월 24일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헌법·형법 기본원칙 위배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2월 27일에는 지자체장 228명도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12월 29일 법학자 32명, 변호사 60명은 명확성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을 검토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헌법상 어떤 문제도 없다는 의견과 함께 원인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무전취식도 1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 3~5년 징역형은 과잉이 아니며, 법리적으로도 환경범죄나 산업안전문제의 특성상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안소위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도급, 위탁, 임대 등에 대하여 도급에 국한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산업노동학회는 12월 29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도급만 원청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다면 기형적인 계약 형태를 확대할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2월 31일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국회 의견서 제출이 있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면 시행해야 하고, 원청의 책임은 도급, 위탁, 임대 등 다양한 외주방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정의에 급성중독사고, 과로사 등의 사업주 과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직업병 영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1월 4일 고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은 8대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직업병 중대재해의 정의, 경영책임자의 범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 도급, 임대 등 공동의무 귀속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법인의 가중처벌, 공무원 처벌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형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들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법안소위에서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정부안을 제시했던 고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주무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1월 5일 오전 학자 전문가 공동선언 대표단은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하여 전면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날 오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 노총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에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언급되지 않았다.

1월 6일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자 300만 명이 5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고, 이중에 연간 약 300명이 산재사망을 하고, 전체 산재 사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안이 제기되자 당일 오후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회의 사회는 “방치되어도 좋은 목숨은 없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는 앞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가속화하여 노동자들에게 위험정보를 알리는 것조차 더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월 8일 오전 민주평등사회를 향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역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당일 오후 본 회의 참여 의원 300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3. 중대재해법 통과 이후의 상황과 과제

1) 중대재해법의 의미

2000년, 김신범 등은 “한국사회의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 정책문제는 사회윤리적 동기가 약한 상

태에서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저규제정책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감독이 행해지게 되며 사업주의 의무는 형식적 강조되었다. 향후 한국사회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사회윤리적 동기의 강화, 정책주체의 입지강화라는 주제에 대한 비중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대재해법은 사회윤리적 동기를 강화하지 못한 사회에서 강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고, 기업주가 법적 책임 부여의 의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은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을 처벌하는가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노동자/시민의 사망에 대한 사후 수습이 비용이 훨씬 더 싼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직후 1월 8일 대기업 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산업안전업무 위탁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월 11일 국민의힘은 재계를 만나 보완입법 등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국회에 보완입법 요청을 제출하였다. 이 법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로부터 법안을 지키는 것이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한계와 극복 방향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든 채,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부칙으로 통과되었다.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발주처 책임 등의 핵심 조항은 삭제되었고, 처벌 수위는 하한형이 도입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은 징벌적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하였다. 직업병에 대한 중대재해 정의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전락한 과정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한계는 중대재해법 내에서 완결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각각의 조항들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사용하는 수사 기구와 사법부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법의 한계의 가장 효과적인 극복방안은 역설적으로 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매우 적은 사회가 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다. 즉 현재 노동현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패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행정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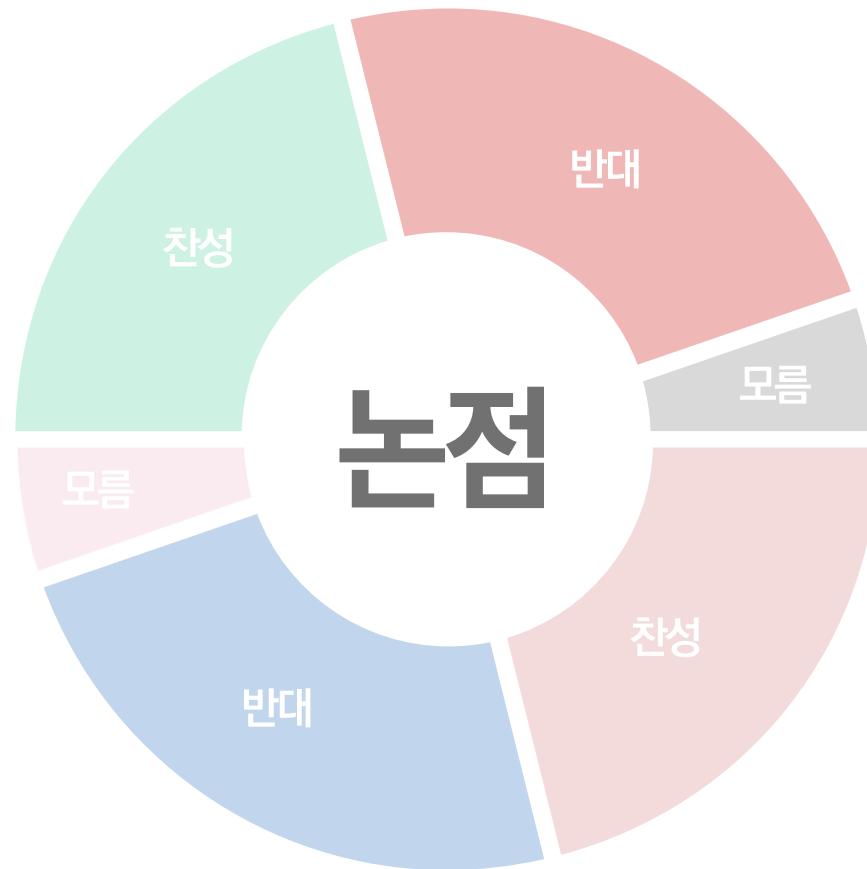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가의 감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021년 2월 22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법 위반 기업을 수사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7월 1일자로 현재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부로 승격하여 3국 12 개과로 확대하여 산재예방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재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 관련 언론 기고문 게재

게재일	제목(관련 쟁점)	기고자	전문 분야	지면
12/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신희주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노컷뉴스
12/24	중대재해법, 또 다른 '김용균법' 되지 않길	이윤근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소장	노컷뉴스
12/25	숨진 노동자들의 명단...정말 정부 기록인가	박혜영	공인노무사	노컷뉴스
12/25	중대재해·사회적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주희	서교인문연구실	노컷뉴스
12/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론이 위현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 교수	경향신문
12/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총 접근과 태도의 문제점들	김종진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컷뉴스
12/27	박영선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응답하라.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노컷뉴스
12/31	중대재해법, 원칙 따르는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하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노컷뉴스
12/31	정부의 중대재해법 '단계적 시행' 반대한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컷뉴스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에 진짜 '악덕'한가(중소기업 유예)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1/5	중대재해정의에 직업병 반드시 포함해야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 교수	매일노동뉴스

BasicIncome



[기획자의 말]

이번 호부터 ‘논점’ 코너를 신설하고,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에서 시작된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국가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수정론, 복지 확대 반대론 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 다룰 논점은 네 가지다. 첫째, 복지국가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반대론에 대항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필자 백승호)를 다루고,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1차 보편 지급 이외에 2차-4차까지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선별 지급을 강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논리였던 ‘재정 건전성’ 이슈를 점검한다(필자 전용복). 셋째,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우회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였던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점검하고(필자 강남훈), 넷째,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성격처럼 대두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보궐 선거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제기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필자 윤형중).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권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복지국가의 사회권은 ‘필요’ 또는 ‘욕구’가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누구든지 지원하는 원리이며, 기본소득은 ‘필요’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복지 국가의 사회권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복지국가의 원리는 ‘필요’에만 국한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필요’나 ‘욕구’에만 가두어 두려는 아주 협소한 접근방식이며,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경로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필요’나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해온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상실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력의 상품화에 있다. 노동력의 상품화는 인간의 소외를 유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경쟁은 상품화된 노동력의 시장가격을 끊임없이 낮춘다. 게다가 임금을 받는 대가로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고용주에게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많은 한계에 직면해 왔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이러한 상품화된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통해 시장종속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핵심 원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 초기의 탈상품화는 사회적으로 빈곤이 입증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하였다. 16세기에 시작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중산층 노동자들의 욕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사회적 위험이라 일컬어지는 노령, 산재, 질병, 실업 등 중산층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 후반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권리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을 탈상품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복지국가는 제반 권리보장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탈상품화가 주로 상품화된 남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관련이 있었다면, 여성들의 육아, 가사, 돌봄 등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통해 탈가족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의 확대로 이어졌다.

20세기까지의 복지국가에서 사회권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거나, 신구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권리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권의 범주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권의 범주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

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욕구나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향이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사회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다. 비록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의 전부를 포괄한다고 보기보다,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의 일부만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호창, 2020: 152).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도 사회권을 '필요'와 '욕구'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적 협력을 통하여,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여기서 권리는 공민권, 정치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보편성), 자연적, 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권은 이념형 수준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구현 양상은 다양하다. 현실 사회에서 사회권은 '국가적 노력,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권의 원리를 '욕구'가 있는 경우, '기여'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탈상품화, 탈가족화를 통한 인간해방이 가능해진다.

노동시장 성과performance가 아니라 시민자

격citizenship에 기초하여 불가침의 권리로 사회권이 부여될 경우, 그러한 사회권은 개인들의 진정한 탈상품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21).

인권연구의 대가인 Fredman(2009)도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Fredman(2009: 488)은 복지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설명하는데,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 대한 공적이전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Fredman(2009: 490)은 기본권 또는 자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욕구가 확인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이나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한 권리를 경시할 경우 공동체의 존립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사회권의 원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은 세 가지 복지체제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유산에 따라 사회권 원칙의 실현 수준이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산조사 욕구에 기반한 사회권 원칙이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복지수준이 일반적으로 낮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탈상품화, 탈가족화 수준은 매우 낮고, 납세자와 복지수급자 사이의 강한 이중구조와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계층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소득에 따른 사회보험료 기여라는 사회보험 원칙이 지배적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중산층들의 실질적인 탈상품화 수준은 높아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업계층들 간의 강한 사회적 계층화가

나타나며, 탈가족화 수준이 낮아 젠더 평등 측면에서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된다. 세 번째로, 사민주의 모델은 시민들을 국가복지의 수동적인 수급자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를 지닌 주체로 전제함으로써, 높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동체의 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Fredman, 2009).

따라서 현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고, 욕구도 증명되지 않은 시민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회보장의 원리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될 뿐이다. 결국, 서구의 경험에서 볼 때, 사회보장의 원리로서 욕구와 필요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지향하는 세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강한 계층화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권리의 보장이라는 원리들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은 기존의 사회보장 원리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욕구와 기여에 기초한 권리보장에 더하여,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한 층 더 두텁게 추가^{layering}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권리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복지국가다.

욕구 및 기여에 기초한 권리와 보편적 사회권의 원리가 결합할 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훨씬 유리하며,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재분배의 역설’(Korpi & Palme, 1998)론에서 도 검증되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는 욕구, 기여에 기초한 권리와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룬 사회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점을 ‘욕구’나 ‘필요’에만 가둘지, 보편적 인권의 실현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할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조차도 표준적 고용관계가 지배적인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했을 수 있다. 기여 - 욕구 기반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전제였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장은 파견, 용역 등 일터의 균열이 심화(Weil, 2014)되었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Beck, 1992). 그리고 액체화된 근대(Bauman, 2013)에서 위험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전통적 복지국가 제도들 만으로는 사회권의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 제도들에 더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서정희·백승호, 2017).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Smicek, 2019)은 산업자본주의의 분배정의와는 또 다른 분배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원리에 욕구, 기여와 보상, 보편적

참고문헌

- 이노우에 도모히로,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강남훈 외 번역, 다ಡ책방, 2019.
- 노호창. (2020).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9(1), 143-193.
- 서정희·백승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노동에 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113-152.
- Bauman, Z. 2013. *Liquid modernity*. John Wiley & Sons.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dman, S. 2008. *Human Rights Transform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조효제 옮김. 2009.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 Korpi, Walter, and Joakim Palme.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 661.87.
- Smicek, Nick. 2019. *Platform Capitalism*. King Kong Books.
- Weil, David. 2014. *The Fissured Workplace*. Harvard University Press.(송연수 역. 2015. 『균열일터: 당신들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정부부채와 외환위기 : 과학인가 미신인가

전용복 경성대 교수

감염병 국면에서 국가(정부)의 책무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정부)의 책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자연재해라 부를 수 있는 감염병조차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한 효과를 끼쳤다. 특히 경제적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집중된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서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때문이었다. 이는 반대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부자들은 오히려 큰 이익을 누렸다.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자산(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런 자산 대부분을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 불평등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소득이 붕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정부는 전쟁 등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피해 국민이 발생하면 지원하도록 법률로 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매우 소극적이다. 소요 재정 충당이 문제인데, 증세는 고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는 경제 전체에 ‘해롭다’는 이유에서이다. 여기서는 재정적자의 ‘해로운 효과’ 중 ‘외국인 자본 이탈’과 그 극단적 형태인 ‘외환위기’ 가능성만을 검토하고자 한다.¹⁾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미신에 가깝다.

외환위기의 역사적 사례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가장 큰 (혹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이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극단적 결과는 ‘외환위기’인데, 1997~98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 때문인지, 외환위기 가능성은 긴축적 재정정책 설득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 확대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일까? 실제 역사적 사례는 그렇지 않음을 보

1) 정부부채 증가가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외환위기 가능성, 정부파산(국채위기) 가능성,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금리 상승과 구축효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만을 다룬다. 이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기도 하다.

여준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정부부채 수준은 GDP 대비 (이하 동일) 11%에 지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반복해서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의 사례로, 1982년 멕시코 외환위기 당시 정부부채 수준은 42%였고, 아르헨티나의 2001년 외환위기 당시에 그 것은 50%에 불과했다. 2018년 터키의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부채비율은 28%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2010년대 초반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위기(이는 외국 은행들의 국채 투자자금 회수 위협이었으므로, 외환위기의 형태를 떠었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정부부채 수준은 약 60%(스페인)에서 120%(이탈리아) 사이에서 다양했다. 반면, 2019년 정부부채 수준이 약 250%에 도달한 일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더 큰 재정적자를 일으켰지만, 일본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0년 선진국(한국 포함 G20) 정부의 평균 정부부채 수준은 1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부부채 비율과 외환위기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긴축적 재정정책 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차이이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능성이 작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축통화란 개념은 브레튼우즈 체제(1944~1971)의 금환본위제에서 유래한다. 2차 대전 이후 선진 44개국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금Gold에 고정(금 1온스=35 미국 달러)하고, 여타 통화들과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체제의 핵심은 미국 달러화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종의 금본위제였다. 여기서 미국 달러화가 여타 통화를 금과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기축통화’라 불렸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이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체제는 사라졌다. 기축통화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달러화는 실질적인 ‘돈’으로 여겨지던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축통화란 ‘가치가 가장 잘 유지되는 통화’란 의미가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치가 안정적인 통화란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 첫째, 현대에는 과거 금Gold처럼 세계의 ‘돈’으로 기능하는 그 무엇도, 달러화처럼 그것을 대변하는 통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세계 통화들 사이의 교환비율(환율)은 수시로 변하고, 환율이 변하는 이유 또한 시기와 대상에 따라 매번 다르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특정 통화의 가치가 더 안정적이라 주장할 이유가 없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가 국제적으로 여타 통화들보다 더 많이 유통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기축통화 대신 ‘국제통화’라 부르며, 이들 국가는 외환위기(외국인 자본의 이탈)를 겪을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이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국제 자본의 ‘행위 규칙’으로 정착되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어떤 통화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크게 떨어지면 해당 통화를 버리는 일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화로 투자했을 때 5%의 수익이 나오고, 원화로 투자했을 때 10%의 수익이 난다면, 국제 자본은 당연히 원화 자산에 투자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국제적으로 엔화보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특정 통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상대적 대소大小를 기준으로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필자는 일본에서 높은 정부부채 비율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엔화가 국제통화여서가 아니라, 그 많은 국채가 일본 중앙은행과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이 보유할 뿐만 아니

라, 이들이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하기 때문이다).

걱정 ①: 국채의 부도 가능성

기축통화 혹은 국제통화 여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다. 국제통화를 갖지 않는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전이 경로는 국가신용도 하락이다. 즉, ‘정부부채 비율 상승→국가신용도 하락→외국인 자본 이탈’. 우선, 첫 번째 인과관계부터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대표적으로 S&P, Moody's, Fitch 등)은 이를 반영하여 해당 정부 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채 증가가 국채위기 가능성을 키워 외국인 자본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우선 드는 의문은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권통화(주권국가 고유의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정부가 자국 통화로 상환하기로 한 국채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1년 후 원화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1조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론적으로, 국채 만기에 세수가 부족한데 국채 보유자가 현금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것 이 가능한 이유는 원화(모든 현대 통화)는 무_無에서 (키보드를 두들겨) 무한히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직 통화발행권을 갖는 주권 정부만의 권능이다. 국채의 부도 가능성 우려는 정부의 발권력을 무시하고, 정부재정도 가계나 기업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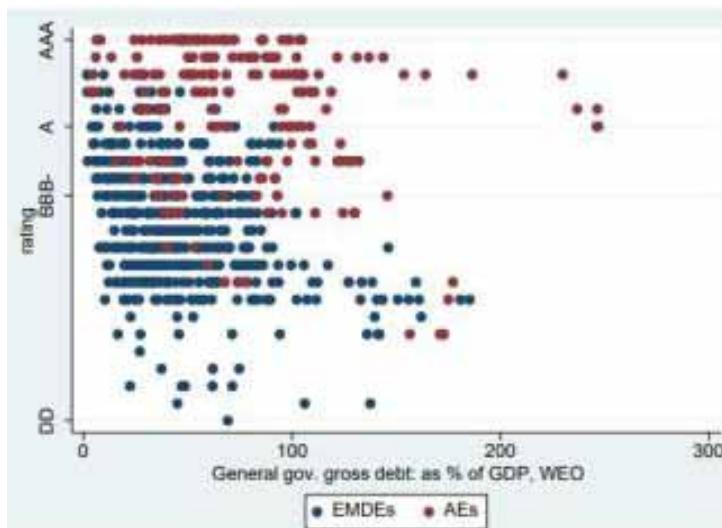
운영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 또는, 과거 금본위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이나 기타 현물로 상환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현대 주권통화는 금이 아니며, 가계나 기업과 달리 스스로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실제에서는 국채 보유자가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예도 없다. 만기가 도래한 국채는 새 국채로 교환해 줄 뿐이다. 따라서 정부부채 증가가 국채의 부도 가능성은 높여, 국채 신용등급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외화를 빌리기 위한 국채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정부는 외화를 찍어낼 수는 없으므로, 상환 기한 내에 충분한 외화를 획득하지 못하면 국채라도 부도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국채위기’도 외화가 부족해 일어난 ‘외환위기’였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달러화 부족 사태였고, 남미 국가들이 반복하는 국가부도 사태 또한 외화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다. 2011년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위기 또한 사실은 외환위기였다. 이들은 유로존으로 통합되면서 통화발행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 ECB에 넘겼기 때문에, 스스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다.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그 발행권이 없던 그들에게 유로화란 외화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전쟁 자금으로 금을 대량 차입한 후 파산했던 군주들과 유사하다. 약탈^{하든} 금광을 발견하든 금을 모으지 못하면 군주도 파산했듯, 현대국가의 정부도 외화로 빚을 지고 상환 만기에 외화를 구하지 못하면 파산한다. 금과 외화 모두 스스로 발행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 주권국가 대부분은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통화를 보유하고 있고, 그 돈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한 국채는 부도날 수 없다. 그래서 국채는 시장에서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걱정 ②: 정부부채 비율 → 국가신용도

민간 신용평가사(社)들이 정부부채 비율을 국가신용도(등급)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들은 현대 통화와 국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금본위제의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도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는 불분명하다.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 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림 1] 국가신용등급과 정부부채 비율



출처: Metodij HadziVaskov, Luca A Ricci,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ebt and Sovereign Credit Ratings", IMF Working Paper 2019-162,

[그림 1]은 1998~2014년 사이 Fitch사(社)가 제시한 국가신용등급(세로축)과 정부부채 비율(가로축)을 표시하고 있다(파란점은 개발도상국, 빨간점은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위 점들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그런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MF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변수 사이에 '통계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그림처럼 걸로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떻게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경제성장률, 실업률, 외채, 민간부채, 물가, 지정학적 위험, 정치적 안정성 등)이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면,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국가신용등급과 정부부채 비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정부부채 비율만 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부채 비율은 얼마나 중요할까?

역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또는 대외부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될 때,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면 국가신용등급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경기 개선 효과가 국가신용도를 더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걱정 ③ : 국가신용도 → 외국인 자본 이동

다음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고 주장하려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외국인 자본 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 또한 위에서 논의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은 외국인 자본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붙는다. 첫째,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자본 유출입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는 발견되지만, 후자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국가신용등급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다른 말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조건이 현실에서 모두 만족되는 경우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국가신용등급이란 해당 국가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정부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 외국인 자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조건’에는 이와 같은 국가신용등급의 상대적 수준 외에도 경제성장률, 환율 전망, 이자율 등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이 모든 변수들 또한 비교 대상 국가들 대비 ‘상대적’ 수준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계적 발견은 경험연구에서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 이후 실물투자와는 무관하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 국제 자본이동을 지배해 왔다. 이들은 단기 자본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글로벌 관점에서 국가간 투자를 배분한다. 쉽게 말해, 이들은 전 세계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외국인 투기 자본은 한 나라의 특정 변수가 아니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간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도 변수 하나만으로 외국인 자본 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망상에 가깝다.

요컨대, 국가신용등급이 외국인 자본의 이탈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상대적일 뿐 아니라 금융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조건에 더 크게 의존한다. 즉,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자본 이동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국가신용도는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과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로, 이러한 논의는 ‘점진적 이동’에 관한 연구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를 불러올 만큼 ‘급격하고 극단적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원인 이란 증거는 전혀 없다.

걱정 ④: 물가와 환율

정부부채가 증가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종종 다음과 같이 다소 복잡한 연쇄적 인과관계를 상정하기도 한다. ‘정부부채 증가 → 지급준비금 증가 → 시중 통화량 증가 → 물가상승 → 환율 상승 → 외자의 투자 수익률 하락 → 외국인 자본 이탈’. 우선 주의할 점으로, 여기 나열된 연쇄적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정부부채 증가가 외국인 자본 이탈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쇄적 인과관계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연쇄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 인과관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정부부채가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가? 정부부채 증가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통화제도에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의 통화를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정부(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반드시 시중의 민간은행을 통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기업이나 가계는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수취한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지출하면 돈은 ‘정부 → 민간은행 → 가계와 기업’으

로 흘러간다. 이 중 ‘정부→민간은행’에는 ‘지급준비금’이라 불리는 중앙은행 화폐가 사용된다(중앙은행 화폐를 ‘본원통화’라 부르는데, 크게 지급준비금과 현금(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된다). 이 지급준비금이 첫 번째 종류의 통화 형태이다. 다음으로, ‘민간은행→가계와 기업’에 사용하는 통화는 ‘민간은행 스스로 창조하는 신용화폐’이다. 이 신용화폐는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창조하고, 예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사용하는 통화는 대출 혹은 예금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10조 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삼아 설명하면, 민간은행은 정부로부터 10조 원의 지급준비금을 수령하고, 고객의 통장에 스스로 창조한 돈 10조 원의 예금을 찍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지출하는 지급준비금은 시중으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권 내부에 남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부부채 증가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일 것이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민간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통화정책이 자동으로 개입하여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대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행한다. 통제 대상 기준금리란 민간은행들 사이에 지급준비금을 서로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금리)이다. 정부부채 증가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은행권에는 지급준비금 보유량이 증가하는데(위의 예에서 10조 원), 이는 기준금리 하락 압력을 낸다. 중앙은행은 목표로 정한 기준금리의 하락을 막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흡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지출을 통해 지급준비금이 과도하게 풀리면, 순차적으로 중앙은행이 나서서 회수하므로, 지급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수 없다. 물

론,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정부지출은 민간 경제주체의 예금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민간은행이 필요로 하는 지급준비금의 양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약 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20년 12월 말 M2 3,200조 중 중앙은행 화폐(본원통화)는 221.5조 원으로 6.9%이다). 예를 들어, 10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지급하면 9.3조 원은 중앙은행이 회수하고, 0.7조 원의 지급준비금만이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위 경로에서 첫 번째 인과관계는 7% 정도만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부채의 화폐화, 즉 “정부가 돈을 찍어서 뿐린다”는 통념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돈을 찍어서 뿐릴 수 없다.

두 번째 인과관계, 즉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시중 통화량(민간은행 신용통화)도 증가하는가? 앞의 예를 통해 설명하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0조 원은 민간은행 신용화폐(예금)로 전환하여 국민의 은행 계좌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쟁점은 이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지급준비금 증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급준비금 10조 원을 지출했지만, 시중에는 극히 일부인 0.7조 원의 지급준비금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시중 통화량은 민간은행권이 임의로 정한다. 다른 말로, 민간은행은 지급준비금 제약 없이 대출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제안하면, 은행이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대출 증가에 따라 은행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필요로 하지만, 중앙은행 또한 은행권에 필요한 지급준비금 공급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임의으로 대출을 늘리지 않는 한, 정부지출에 따른 통화량 변화는 정확히 정부지출 액수와

같을 뿐이다.

세 번째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정부지출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상승하는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조 원을 가계와 기업에 지출했는데, 그 돈으로 구매(소비)할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공급 제약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충격 이전에도 100만 명 이상의 공식 실업자가 상시로 존재해 왔다. 또한, 이미 비싼 비용을 치르고 설치한 공장과 설비 중 약 25%는 놀고 있다. 대량의 실업과 유휴 설비는 수요만 있다면 즉시 가동되어 생산을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여분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증가한 통화량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설비 가동률 25%를 기준으로 가늠하자면, 우리나라 GDP의 25% 정도의 추가 수요는 물가상승 없이 충족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신규 투자가 발생하여 생산 능력 또한 점점 더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까지만 해도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할인 마스크’까지 등장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²⁾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통념이 강하게 퍼져 있다. 이 통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퍼뜨린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더 많이 유통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통념이 옳은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가와 관련된 통화량은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공급하는 신용화폐이다. 은행들이 이 신용화폐를 창조하는 데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량은 결국 신용도 높은 ‘대출 수요’가 결정한

다. 둘째, 대출을 받으면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대출 수요자는 반드시 그 비용을 능가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모든 대출과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생산과 무관하게 돈의 양만을 강제로 늘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하면, 통화량 증가는 반드시 생산을 동반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도 증가하므로, 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인과관계, 즉 국내 물가상승은 필연적으로 국내 통화가치를 하락(환율 상승)시키는가? 이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주장처럼 환율을 변화시키는 물가란 ‘상대적’ 물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더 빨리 상승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우리나라 물가만 상승하거나, 다른 나라 물가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³⁾ 둘째, 이 주장은 ‘일물일가의 원리’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뉴욕의 햄버거 가격이 10달러이고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1만 원이면, 햄버거의 가치는 같아야 하므로 10달러와 1만 원이 같아야 한다. 즉, 10달러=1만 원이므로, 환율은 1달러 =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햄버거만 가격이 올라 15,000원이 된다면, 환율 또한 1달러=1,500원으로 올라야 한다(원화 가치 하락).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물일가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햄버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연이 아니고는 찾기 어렵다. 셋째, 일물일가의 원리가 성립하

2)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자산 가격은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기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환율 상승이 아니라 하락과 그에 따른 수출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므로 통화량 증가도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이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상대 물가가 하락할 것이니,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일관성 혹은 이중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환율이 실물보다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금융시장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에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 투기 자본은 글로벌 관점에서 최대 수익을 추구한다. 환율 변화 또한 이들의 기대 수익 결정 요인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기대 수익의 변화가 해당 국가의 통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더 큰 환율 변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이 현실에 가깝다(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은 오히려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기도 한다. 원화에 대한 투자용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에서’ 국내 물가상승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명제는 기술적으로는 옳다. 문제는 환율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한 나라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다양하고, 경제성장을처럼 물가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많다.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도 상승한다는 주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에 기초하는데, 매우 비현실적이다. ‘환율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수년 내에 지구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스갯소리가 더 큰 진실을 표현한다.

마지막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환율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리란 보

장은 없다. 실제 자본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대적 수익률’이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외국인 자본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회를 찾는다. 설사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여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어떤 요인은 환율 변화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요인이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외국인 자본의 행태를 우리나라 일국의 환율 변화라는 단일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다.

어떤 인과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최종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개별 인과관계가 나타날 확률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A→B→C이고, A→B일 확률이 100%라 하더라도, B→C일 확률이 0%라면, A→C일 확률은 0%이다. ‘정부부채 증가→지급준비금 증가→시중 통화량 증가→물가상승→환율 상승→외자의 투자 수익률 하락→외국인 자본 이탈’의 연쇄적 인과관계에서 단 하나의 인과관계만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부부채 증가→외국인 자본 이탈’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 인과관계에 관한 지금까지 논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부부채 증가가 원인이 되어 외국인 자본 이탈로 나타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참고로, 이 6단계의 개별 인과관계가 발생할 확률을 넉넉히 가정하여 모두 50%라 하더라도 ‘정부부채 증가→외국인 자본 이탈’일 확률은 1.56%에 지나지 않는다. 이 미미한 가능성이 무서워 재정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더구나, 아래에서 제안하듯, 이 미미한 가능성마저도 예방할 대책이 많다).

걱정 ⑤: 한국은 신흥국이라서?

정부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을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라서 ‘신진국’보다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말로, 선진국은 정부부채 비율이 다소 상승해도 괜찮지만,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인 우리나라를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2020년 예측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GDP)가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1인당 GDP는 세계 7위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자본은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중 원금과 수익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장하는 국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본은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 이동한다는 원칙을 상기하자. 경제규모 혹은 경제성장률이 매우 중요한 수익률 결정요인임은 분명하다. 외국인 자본이동의 결정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어떤 요인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정부부채 비율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현되길 어렵다. 주권통화로 표시된 국채는 부도날 수 없고, 물가와 환율 변화를 통해 수익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실현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자율 변화가 그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의 ‘종합적 경쟁력’(외국인 자본에게는 기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는 외국인 투자 자본의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여기서 살펴볼 기준금리는 정부가 보증하는 수익률이다. 통상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야 ‘외국인 자본 이탈’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신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와 외국인 자본 이동



흥국’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웃돈 (신흥국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외국인 자본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신흥국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그것이 작을수록 미국 경제 대비 상대적으로 강건한 경제임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 대비 크게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금리역전’은 1999년 7월에서 2001년 3월까지 19개월 동안,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4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창궐 이전 2018년 3월 22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약 24개월 동안, 역대 세 번 있었다. 매번의 금리역전은 약 2년 동안 지속했지만,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는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림의 음

영 부분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시기와 그 정도를 보여주고, 아래 그림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자본 스톡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그것보다 낮았던 기간 동안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기대 수익률이 금리 격차를 능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투자 수익을 낳는 우리나라 경제의 종합 역량이 미국 경제에 크게 뒤진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투기 자본 본거지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이 셧다운되자, 3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자본은 76.4조 원이 감소했다. 그 이후 외국인 자본은 다시 유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역대 최대 규모가 되었다(앞 쪽 그림).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였다.⁴⁾⁵⁾ 금리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

가하던 시기에 외국인 자본이 오히려 대량 유입되었던 사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예를 들어,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 가해질 때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탈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외국인 자본 이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걱정 대신 제도적 대비를

1997-98 외환위기와 그 이후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정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국민적 우려에 매우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다.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정부부채 비율 억제에만 집착했을 뿐, 외국인 자본 이탈을 억제하거나 그 충격에 대비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물질적 삶도 크게 악화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지출은 국민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진정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 때문에 재정정책이 제한된다면, 우리 정부는 정부부채 비율 관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억제할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경제를 달성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제도적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제 투기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에 깊이 편입해 있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정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내외 자본에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의 ATM기’로 조롱받을 정도로, 외국인 자본의 이동에 과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자본이 투

4) 외국인 투자액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한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같은 기간 외국인 자본은 크게 유입되었다.

5)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은 낮지만,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가속도’란 과거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와 비교할 때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이전 10년 동안 그것은 약 7% 포인트 증가했지만, 2020년 한 해에만 7% 포인트 증가한 사실을 두고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국제적 비교가 훨씬 유용하다. 외국인 자본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국가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빨리 증가했던 2020년에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대략 2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7% 포인트보다 약 세 배 빠른 ‘속도’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과거와 비교하면 가장 빠르지만,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느리다’. 만약 정부부채 비율이 외국인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속도는 오히려 외국인 자본에 매력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다.

자와 고용 등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극히 미약하다. 코스피 외국인 투자 자본 중 96%, 코스닥 외국인 투자 자본 중 86%가 자산 가격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며,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은 모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가 아니라 국공채를 매입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진정 제약한다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운영할 수도 있다. 2020년 말 외환보유고는 4,431억 달러이지만, 유동성 높은 증권시장의 외국인 자본은 약 7,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재정 보수주의자는 외환보유고 확대를 주장해야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증가해 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상수지 흑자는 716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외환보유고로 흡수했더라면, 현재 약 9,226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이는 절대 규모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경제규모 대비 비율로는 세계 1위이다. 이는 이탈 가능성이 큰 외국인 금융시장 투자 총액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물론 이후에도 매년 경상수지 흑자만큼 외환보유고를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본 이탈’을 걱정하며 정책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하면서도,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외환보유고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비용 측면에서, 첫 번째 비용은 외화 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은행 혹은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로 흡수한다고 가정하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환율은 1달

러=1,000원으로 가정하면, 1억 달러의 외화를 매입하려면 1,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1,000억 원은 한국은행이 발권하거나 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가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첫 번째 비용이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권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설명해보자. 한국은행이 발권하여 외환 1억 달러를 매입하면, 시중에는 지급 준비금 1,000억 원이 풀린다. 이것이 기준금리 하방 압력을 낳는다면(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행은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채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도하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권이나 채권발행이나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이에 적용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정책변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금리가 낮은 단기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다.

외환보유고 유지의 두 번째 비용은 국내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행이 유입된 외화(경상수지 흑자)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 주장이다. 즉, 외화 유입→한국은행 매입→지급준비금 증가→통화량 증가→물가 상승. 하지만, 앞의 논의를 상기하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외화매입에 사용하는 돈은 ‘지급준비금’이고, 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현대 통화정책 프레임 하에서, 그것이 과도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방어를 위해 스스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더라도 시중 통화량(대출)이 증가할 이유도 없다. 시중 통화량을 결정하는 대출 여부는民間은행이 결정하는데, 평소에도 이들은 지급준비금 제약 없이 대출 여부를 결정해 왔다. 즉, 지급준비금 증감이 시중 통화량(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대량으로 외화를 매입하더라도 시중 통화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

고,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물가가 상승할 이유도 없다.

외환보유고 유지 비용이라 주장되는 또 다른 요인은 해외자산 가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매입한 외화 1억 달러는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것인데, 국채 시장 가격은 수시로 변한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므로, 비용이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비용이나 수익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는 비상 대책 수단이므로, 만기 이전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 미국 국채 가격 변화는 매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치의 변화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없다. 결국, 외환보유고 유지 비용이란 국내에서 저금리로 지급하는 이자뿐이다.

이제 편의를 살펴보자. 우선, 미국 국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수익이 있다. 이 수익은 매수하는 국채의 만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길수록 적용 금리가 높다. 외환보유고는 중간에 처분할 것이 아니므로, 이자가 높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편익은 외국인 자본 이탈 걱정 없이 재정정책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경기부양 효과다. 재정정책은 경기 순환에 대응하여,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불황에 빠져들 때,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재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잃었을 GDP 전체를 충분한 외환보유고 유지의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 혹은 순비용을 계산해 보자. 외환보유고는 이자 비용과 이익은 동시에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달러 매입을 위한 원화 비용 1,000억 원은 금리 1%를 지급하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1억 달러는 이자 2%가 지급되는 30년물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

게 된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이라 부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를 지급하는 정부(한국은행)에게는 비용일 수 있지만, 이를 수취하는 국민에게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비용은 없고, 재정정책 자율성이 낳는 경기 안정화 편익만이 존재한다.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부채 비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에 집착하여 재정정책 자율성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먼저 제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필요로 할 때 국내 통화를 상대 국가의 통화로 맞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나라라는 외환위기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화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고, 협정에 따라 이를 미국 달러와 즉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환율 차익을 노린 국제 투자본은 통화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 자본 유출을 우려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측이 이러한 안전 장치 마련을 외면해온 사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부채 증가가 외국인 자본 이탈이나 외환위기를 부른다는 근거는 빈약하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설계도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외환위기 공포를 조장하여 정부 역량을 제한하기보다는,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를 고안·정착시키고, 재정정책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역화폐 논쟁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이 글에서는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역화폐는 기본 소득과 결합된 경우(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차 및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경기도 일반 발행 등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소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를 포함한다.

1. 지역화폐와 경제 전체 소비

송경호·이환웅(2020)은 2018년까지의 지역화폐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해서 지역화폐가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적었던 2019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비교하지 않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을 비교하였다. 가맹점이 많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맹점 비율이 절반 미만이었으므로 지역화폐 효과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다.

김미루·어윤해(2020)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업종과 불가업종의 매출액을 비교하였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카드매출 증가액은 약 4.0조 원으로서, 재난지원금 대비 약 30%였다.

이 연구에서도 대조군 설정에 문제가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불가업종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아 소비하는 업종이고, 해당 시기는 확진자의 감소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던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불가업종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과소추정된다.

김을식, 김태영, 김재신(2020)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은 45%~60%의 소비 증가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이용률을 15.5%p 높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용률의 약 1.7배에 해당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거시 통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020년 4번의 추경을 통해서 총 66.8조 원의 재난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중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소비 증가율은 1사분기 -6.0%, 2사분기 2.7%, 3사분기 -1.4%

로서,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2사분기에 서만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20년 분기별 소비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추경일	1차 3.17	2차 4.30	3차 7.30	4차 9.22
추경액	11.7조 원	12.2조 원	35.1조 원	7.8조 원
지원성격	선별	보편 (1차재난지원금)	선별	선별 (2차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	-6.0%	2.7%		-1.4%

자료: 통계청 『계동향 조사 2020년 1사분기~3사분기』로부터 작성

것이므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 매장의 입지를 제한한다는지,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거의 실패하였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소비 지역과 업종이 한정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2.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매출

지역화폐의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이다. 설령 경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있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유영성 등(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 2020)은 2019년 4개 분기에 걸쳐 약 3,8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화폐 결제 경험 유무에 따라서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지역화폐 결제 경험은 매출을 206만 원 상승하였다. ② 동일한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시기는 없었던 기기에 비해 115만 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475만 원 높았다.

지역화폐 결제액에 따라서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145만 원 증가하였다. ②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 매출액은 57만 원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 높았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을 조사한

3. 지역화폐와 연대경제 형성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연대경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경제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모두가 공유부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 ②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써야 하는 이타적 의무의 지각 ③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만족을 넘어서 이타적 의무를 완수했다는 자긍심 ④ 손님들이 한편으로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자신들의 가게를 방문했다는 것을 의식, 친절한 대접, 다시 방문할 유인 ⑥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 ⑦ 조세를 부담할 의사 증가 ⑧ 정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

이 중에서 ⑦과 ⑧의 요인의 작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1

5월7일부터 이틀간 시사주간지 『시사인(IN)』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살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웹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시사인(IN)』은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

뢰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했
다.『한겨레21』, 2020. 6. 12

• 사례 2
2021년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에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도된 여당 후보
들은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을 약속하였다.

참고문헌

- 김미루, 오윤해(2020),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KDI 정책 포럼』제281호(2020-06)
- 김을식, 김태영, 김재신(2020),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이슈&진단』No.443, 경기연구원
- 송경호, 이환웅(2020),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 브리프』, 2020.9.15.
- 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2020),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GRI 정책 브리프』, 2010-10.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등장한 서울형 기본소득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어느덧 기본소득은 중요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의제가 되었다.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후보들이 각자 다른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고,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급진적이고 불가능한 대안처럼 보였던 기본소득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게 격세지감이기도 하지만, 공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소득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선거 시기에 이뤄지는 이런 정책 제안과 이를 둘러싼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형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던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인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다. 신 후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해 12월 8일에 출마 선언을 하며 1호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출마 선언에서 신 후보는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다”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예비후보였던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일인 올해 1월 13일에 “빈

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1월 31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도 당일 기자회견서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형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하고 서울은 당연히 정책 실험에 포함돼야 하는 지역이다. 서울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오세훈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화 한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기 전에 ‘서울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맞는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상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거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는 무조건성, 보편성과 상충한다. 하지만 주민 혹은 거주 여부 이외의 조건을 달지 않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는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기본소득의 지

급 주체가 어차피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권한을 가진 정치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도 한 단위의 정치공동체라는 점에서 주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각 후보들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신지혜 후보 “부동산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형 기본소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전국적 기본소득의 교두보’를 제시하고 있다.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고,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며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뜻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방안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50만 원, 총 4조8000억 원을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재원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7대 3으로 분담하고, 서울시가 부담할 3조 9천억 원을 부동산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일정 비율(15%)을 전용, 공공자산에 기반한 세외수입의 일부 등으로 2조 338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조 750억 원은 토지 사용 용도 변경을 대가로 징수하는 공공기여금의 70%와 재건축초과이익금의 환수액 일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재원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재정 가운데선 토목건축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부문의 지출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이런 형태의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감소하고, 부동산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 형 토지보유세를 도입을 주도해 전국적인 토지기본소득 도입을 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서울형 기본소득’		
항목	계	비고
지급대상인구	968만5139명	
1인당 지급액수	연50만 원	분기별12만5천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총 소요재원	4조8000억 원	
서울특별시 소요 예산	3조3912억 원(70%)	재산세와 취득세의 15%(9227억 원) 공유자산 임대료 및 사업, 매각수입(1조3988억 원) 공공기여금과 건축초과이익 환수액(1조750억 원)
자치구 분담 예산	1조4088억 원(30%)	

조정훈 후보 “무주택자에게 기본소득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월 15일 기자회견서 서울형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골자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쪽이 추산한 서울형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347만2662명이다. 무주택 가구수에 평균 무주택 가구원수를 곱해서 추정한 인원이다. 이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 당선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해 소요 재원은 1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세입증가분의 활용과 세출 예산 조정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 수입 증가에 따른 서울시 배분액 1717억 원과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 증가액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출 조정 예산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에 긴급 재난생활비로 책정된 5745억 원이다.

조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사용에 있어 여

러 제한이 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용처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분기마다 지급된 금액 중 미사용분은 환수되는 형태다. 정치적인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오 후보는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 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붙은 경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소득이 연 3000만 원이고, 중위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서울시가 차액인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우선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안심 소득이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자극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시대전환의 ‘서울형 기본소득’		
항목	계	비고
지급대상인구	347만2662명	무주택 가구주와 무주택 가구원 추정 인원
1인당 지급액수	연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총 소요재원	1조7000억 원	하반기 시행시
서울특별시 소요 재원	최대 1조4762억 원 재원 확보 가능	종부세와 취득세 증가분(9717억 원) 세출예산 조정(5745억 원)
자치구 분담 예산	최대 5100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7:3으로 분담

나경원과 오세훈 ‘최저 생계보장’ 대책 내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의 발언을 살펴볼 땐 기본소득이 아닌 최저 생계보장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서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중위소득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일

오세훈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화한 안심소득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나경원 예비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선별수당으로 기본소득이 아닐뿐더러, 선별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소득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담기지 않았다. 선별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내거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2020년 초 재난 기본소득 논의 때에도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던 정당 ‘시대전환’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한 전주시도 자신들의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2020년 8월 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기본소득은 국민모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현금 지급으로 좋은 것이나 의도가 선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고유담론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란 용어의 이런 측면, 즉 보통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일반명사로 이해하는 경향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교수가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요건이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개념조차 살펴보지 않은 채 무리한 비판을 하는 편이지만, 선거 시기 에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전문가에게조차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맞느냐는 나경원 후보의 경우와는 달리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질문이다.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도 같은 개념이나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여러 기본소득 이론가들이 제시한 바 있고,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저서 『21세기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을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연령과 직업 범주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어떤 범주 집단이어야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되느냐는 논의가 이뤄진 적은 드물다. 분명한 것은 범주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선별의 기준이 하나씩 늘어나고 점점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조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이 시행되려면 서울시민임을 선별한 뒤에 무주택자 가구주와 가구원임을 다시 선별해야 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가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시민’이라는 범주 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무엇을 위한, 어떤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기본소득이 아니다. 설계에 따라 다양한 기본소득이 등장할 수 있고, 범주형 기본소득일 경우엔 그 형태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이지, 어떤 기본소득인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이 공정한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등이다.

신지혜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부동산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공유하

지만, 형태는 각기 다르다. 특히 조 후보가 제안한 무주택자 대상의 기본소득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분명히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그 격차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내부에서도 격차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여전히 서울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경우엔 주택 매매가가 1억~2억 원대인 경우가 꽤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만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솔하게 많다. 게다가 무주택자 중에서도 상가건물 소유자, 금융자산가 등이 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가구원들에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가구 분리를 유도하는 불필요한 유인을 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런 공정성 시비를 차치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순 있고, 그렇게 하려면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도입될 때에도 ‘왜 청년인가’라는 논쟁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끝에 과거와는 달리 청년에게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무주택자가 기본소득을 먼저 받는 집단이 되려면 이 범주 집단 전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신지혜 후보가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유부인 토지와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자산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기본소득의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이 부동산 불평등으로 야기된 문제의 적절한 해법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 후보는 “오락가락 부동산 거품만 불리는 정책, 부동산 부자만 걱정하는 정책,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합니

다.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율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을 비판했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개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연 50만 원의 금액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본소득만으로 부동산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만, 신 후보는 기후에너지, 젠더, 산업안전, 데이터 주권 등의 분야에선 정책을 발표한 반면에 부동산 분야에선 기본소득 이외의 공약을 내놓진 않았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 연구자, 활동가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함께 제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다른 정책들을 대체하고 도입될 것이란 우려와 오해를 많이 받는 현실에선 더더욱 이런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3월 중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 을 드러낸 바 있다. 선거 초반에 전면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의제가 뒤로 물러난 것이다. 어쩌면 이런 양상도 앞서 강조했듯 우리 사회 기본소득 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지지와 자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바탕”

강환욱

판동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기본소득 제안자

인터뷰어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국민기본소득, 30조 원.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집 댓글창의 논쟁은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궁극적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아닌 정파적 논쟁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불변의 가치이기에 '배고픔'을 가르쳐야 한다며, 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주창하는 이의 모습도 그대로다. 왜 세상은 급변하는데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가.

이는 결국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농촌에서 기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게 된 이들이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부대의 주력은 노인 세대였다. 이해할 수 없었던 노인들을 농촌에서 만나며 그들이 겪었던 시대와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개개인의 생각은 시대와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섰다.

이처럼 경험은 무섭도록 불변하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좌표가 된다. 특히나 경험의 축 적이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해진다. 해당 연령대의 실험을 진행하는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경험', '세계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기본소득을 이상으로서 접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일상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열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있는 사회는 기본소득 논의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화제의 인물은 강환욱 교사로 선정됐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60명이 안되는 작은 농촌학교지만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 누구나 매주 2천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당연히, '무조건적'이다. 자유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곳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15년차 교사 강환욱씨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건 하나의 사회죠. 지금은 작은 실험이지만, 큰 파장을 미칠 겁니다. 향후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즘 말대로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힙한 교사로 등극하셨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요. 다른 인터뷰를 보면 10년간 공무원 같은 교사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웃음) 공무원처럼 살았다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주어진 것만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하자는 않았던 교사였죠. 2005년부터 교직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교사란 직업에 뜻을 품은 건 아니었죠. 교대에 진학한 건 짊었을 때 교직생활을 했던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막상 학교 현장에 와서는 기대와 달랐던 모습에 치이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죠.

지금은 공무원 같지 않은 교사가 된 건가요? 바뀌게 됐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생각이나 실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대학원에 다닌 건데, 그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마침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같이 가지고 해서 청주교대 상담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계기는 청주시에 살다가 보은군으로 이사를 온 것이에요.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촌 생활은 처음인가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가 바뀌다 보면,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만남도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 맞아요. 농촌 생활은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도 일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때부터는 청주에서 지냈어요. 보은과 인연이 닿은 건 16년 전이죠. 첫 발령지였어요. 하지만 보은이 직장 이상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5년 이상 출퇴근을 하다 보니 몸이 지치고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살 만했어요. 문화 생활도 나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매일 도로에서 낭비하던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자연스레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신 거죠?

- 우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같은 동네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더 관심 있게 살피게 됐어요. 또 저 스스로도 직장과 삶이 가까워졌죠. 그 전엔 거리가 머니까 퇴근과 동시에 집에 빨리 가려는 마음이 컸어요. 학교나 마을에 관심을 가지려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유더군요. 출퇴근 시간이 15분 내외가 되면서 기준에 하지 않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시 행복교육지구(학교 밖 교육 인프라를 키워내며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가 시작될 때였는데 위원회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의 교육협동조합인 햇살마루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희 협동조합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자, 조금이라도 마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어요. 마을 돌봄, 학교로 찾아가는 목공수업, 주말 목공수업이 그렇습니다. 삶이 좀 더 바빠졌지만 한편으로는 풍요로워지기도 했어요.

학교매점 내 포착된 불평등, 구조신호에 응답한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

그 와중에 한 가지 실험으로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

는데,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판동초의 어린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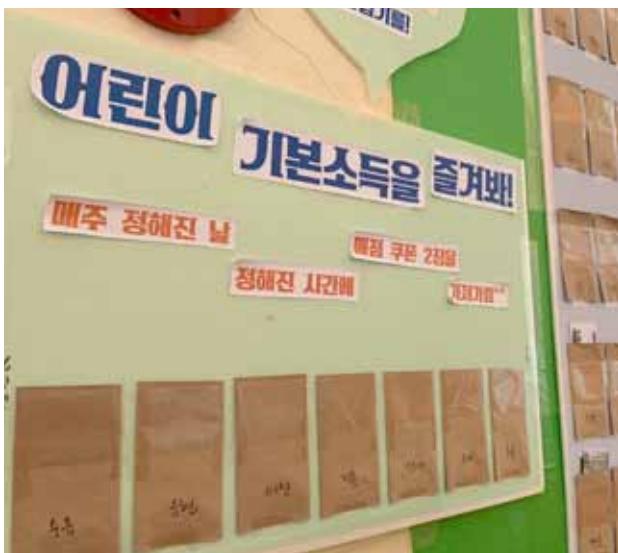
- 모든 학생이 매주 2천 원에 해당하는 화폐를 저희 교실 앞에 붙어 있는 기본소득 수령 게시판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조건은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입니다. 다만, 방학 때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요. 화폐는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매점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 졌다고 들었어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 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큰 사업이었죠. 신청과정보다는 학교협동조합을 인가받는 과정이 복잡했는데, 결국 2019년 9월에 설립을 완료하게 됐어요. (바쁘셨겠네요?) 네. 그 이전에 학습연구년을 하며 1년 동안 학교 근무는 하지 않았기에 충전이 돼 있는 상태였죠. 좀 방심했습니다(웃음). 학부모 4명과 제가 이사가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매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건강한 먹거리'였기에 생협에서 물품을 납품받아요. 그러다가 청주YWCA 아이쿱생협 이사장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의 자인이 100만 원을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잘 맞았던 거죠. 1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자마자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때 하셨던 고민이 어린이 기본소득의 단초가 된 거네요.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어린이 기본소득과 연결된 건지 궁금하네요.

- 매점이 시작된 게 2019년 9월이니까,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학교에서 슈퍼마켓을 가려면 최소 20분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점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편의공간이에요. 그런데 매점에 오는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였죠. 학생 간 소비격차가 드러났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권리의 격차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차별을 빨리, 그리고 오래도록 느낀 아이들은 서러움이 남을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민이 시작된 거죠. '구조신호'를 보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집이 멀다고 알아서 자전거 타고 오라고 하지 않고, 학교 버스를 마련해주는 것처럼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향후 학교예산으로라도 최소한의 동등한 소비 수준을 마련해주는 것을 논의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앞서 이야기한 기부금 100만 원이 들어왔죠.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어린이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언어로 잘 표현하진 못해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교에 오는 게 즐거워졌다' '학교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다' '예전보다 매점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모두가 매점을 이용하니 화기애애해졌다'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어요. 특히 화기애애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매점을 잘 가던 친구도 혼자만 가니깐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매점에) 가지 못한 친구도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미안함과 서운함은 모두 불편함인데 그런 감정이 많

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또 4학년 학생이 그랬어요. 원래는 카드도 들고 다니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은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에, 그 학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받고 기본소득으로 생활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동등한 걸 누리면서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안함과 서운함, 기본소득이 이 감정들을 한 선상에 올려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교육자로서 이런 경험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어린이기본소득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완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챙김을 받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후에 타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에 대한 지지는 협동이 필요한 시대의 기본적 가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고 하죠. 기본소득을 통해 평등과 자유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분명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흥미로웠어요.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었나요?

- 기본소득이라는 워딩은 뉴스에서 봤어요. 한 1년 전인 거 같은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보였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별하지 않고 주는 거니까요. 받는 입장에서도 모두 받기에 숨기거나 창피해할 필요가 없죠. 또 이웃마을인 옥천군에서는 서울시청년허브와 『월간옥이네』라는 잡지사의 지원으로 안내중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계와 일상을 한 단계 올려주었죠. 충북 진천에 있는 은여울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데,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자체의 화폐를 주면서 교내 매점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앞선 사례들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한 셈이죠.

단순히 용돈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 저희가 어린이 기본소득을 수령 계시판에 꽂아서 전달하는 것은 어른의 손을 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용돈이라는 말은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권리’죠. 한번 보세요. 용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보통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비교적으로 덜 가진 사람에게 주죠. 또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받을 수 없기도 해요. 이걸 교육현장에 적용하면, 좋게 말하면 ‘예의’를 가르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과 낡은 권위에 복종하는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거죠. 학교는 모두를 보듬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산만한 학생들은 존중받지 못해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혼나죠. 실은 어떤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좁고 네모난 책상과 의자에 갇혀야 하니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닐 시간인, 공장의 부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 같아요. 학교가 상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인가요? 우리 학교가 그러면 안 되요. 어른과 아이는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교사라고, 어른이라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혼내고 복종시킬 권리는 없어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대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용돈이 취소될 수도 있죠.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저조차도 잘 믿지 않습니다. 용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정적이지도 않고 간섭의 여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달라요. 누군가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에 선한 취지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 개별성 등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매주 2천 원이라는 돈은 저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그것도 오래도록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 기본소득과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기존에 개인이 지불하던 것들을 공공



이나 국가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정해진’ 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작은 학교의 경우 최근에는 스키캠프까지도 무상으로 진행해요. 이런 것들과 어린이 기본소득과의 주된 차이점은 자유 혹은 선택권에 있죠. 어린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돈이 주어져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자유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에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를 많이 묻지 않아요. 어른들이 판단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곤 하죠. 그것이 일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매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몇 주간 모아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 수 있고, 과자 종류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특히 농촌의 어린 학생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죠. 보통 보호자가 사오는 학용품이나 과자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 매점에선 아이들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누군가는 돈을 허투루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옷을 샀을 때 누군가 와서 ‘비슷한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산 거야?’라고 잔소리하

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고 아이들의 소비 행위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만입니다. 사치를 하는 사람은 남도 사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아이들의 소비 역시 선택의 영역이지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소득의 주홍글씨, '난 이렇게 바라본다'

일각에선 '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느냐'고 의미를 왜곡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나 조건(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따라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있더라고요.

- 정 조건을 말하길 원하신다면(?) 전 아이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침 9시부터 많게는 8교시까지 수업을 받아요. 무려 320분의 수업을 듣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이에요. 공부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노는 것 등이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가사노동도 일로 보지 않는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없이 주어진 권리'잖아요. 노동이라는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 자체도 누가 만든 건지 의심이 가요. 실제로 예전부터 상류층은 대부분 유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물려받고 형성했잖아요. 시점 좋을 때 산 부동산으로, 유산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노동인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노동윤리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만든 허상의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감해요. 하층민이 여유를 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막상 자신들은 정해진 노동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말이죠. 결국 그런 프레임으로 싸우는 건 우리 서민들 같아요. 정작 그들은 관람하고 있죠. 노동으로서의 소득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에 주어지는 소득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건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이야기 해주신 '허구적 노동윤리'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하고, 계간지도 열독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웃음). 이토록 열정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 열정까진 아닌데요, 과대 포장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웃음). 제가 네트워크에 가입한 시점은 작년 11월쯤이에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를 읽고 이를 개인 SNS에 언급했어요. 그 후 학교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항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 시민연대 대표였는데, 전화의 요지는 2가지였어요.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어린이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 띄워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처음 들었을 땐 무척 황당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타까웠어요. 어린이 기본소득은 순수한 교육목적이에요. 불평등한 상황을 아이들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학교에서 보완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기괴한 논리를 가진 비판이라도 이를 방어하고 역으로 비판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 그 당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찾았고 가입했어요. 기본소득에 대하여 제가 좀 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본전은 뽑았습니다. 참,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협동조합에 매년 어린이 기본소득 후원금과 연구적 지원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받으신 전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가 난 이후에 누리집 댓글이 500개 가량 달렸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정파적인 비판이더라고요. 다수가 공산주의, 전교조 등과 기본소득을 연결짓는 논쟁이었죠. 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우선 저는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요. 초임 때부터는 교총도 했었고요. 전교조도 맞아요(웃음). 마을 선생님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죠.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는 충북모임 회장이에요. 그러니 최근까



지 3개의 교원단체에 속해있던 셈이죠. 아마 색깔론에 빠져 21세기의 색맹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색을 양분하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권리 발견과 신장의 문제예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매주 2천 원 받는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자체가 사실 논리에도 안 맞고요. 작은 도전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 수준인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선 딱히 반박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느껴져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이 판동초를 넘어서 확대되기 위해선 재원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 사실 묘안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가성비가 엄청난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쓰거든요.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건 이상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교육비예산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았거든요.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수치니 방법은 다 있겠죠. 그렇다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까요? 또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대된다면 어떤 모형으로만 들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현재는 주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 3천 원으로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요구만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요구가 없네요(웃음). 2천 원이면 아이스크림 2개 사면 끝이에요. 아껴 쓸 필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적다고 봐요. 또 앞으로를 생각해본다면, 저희는 매점이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자체의 화폐를 활용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모든 학교에 아이들의 격차가 존재할 겁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 소비자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승전 ‘수능’, 기승전 ‘일자리’가 아닌 자유로운 교육이 낳는 자유로운 인간

인터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사실상 기본소득의 핵심은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율성’, ‘자유’, ‘평등’ 등



다양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자율성'을 수업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표를 살림표로 바꾸고,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 학교가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지만, 제 어린 시절과 비교해봤을 때 학교 운영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학기 말이면 진도에 쫓기고 아이들의 개별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기 힘들어요.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만 편성된 학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속도와 그 시점의 주요한 과제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양을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체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삶을 보면, 과목별로 분절된 삶을 살지 않죠. 교과서는 참고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의 구성은 결국 수능이에요. 단계성이나 학문의 위계는 있으나 왜 하필 이 내용을 이 시점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 중심의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내용, 같은 교재를 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기승전수능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쟁체제에서는 결국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딱딱하고 주객이 전도된 시간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살림표라고 부르고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라는 주제 안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우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여백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자유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향후 교사로서 목표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으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모델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 저희가 생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자유학교'예요. 가치이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립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립 내에서 초등 시기에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외 선택지가 없어요. 교육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요구가 있을텐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도 밖으로 나가서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실은 이런 제도 밖의 대안학교들을 인정해줘야 해요.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이 너무 야박하죠. 우리가 유럽의 교육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덴마크가 어떤 자생

적 학교든 공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하듯이 우리도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가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인가를 받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높은 학비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요. 그래서 두 작업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처럼 공립형 대안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전환하려는 작업, 그리고 기존의 대안학교를 최대한 존중하며 제도 내로 초청하는 작업이 말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자유학교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시키고자 함이에요. 그 공간에선 학년도, 수업시수도, 수업방식도, 교재의 유무도 학생과 교사가 합을 맞춰 가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육이 한 인간의 해방, 자아의 발견과 발현을 목적으로 해야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격화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적이지도 않죠. 또 현재의 학교가 민주시민을 목표로 한다면 그 안의 어른들부터 민주적으로 살아야 해요.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투표로 뽑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대표를 투표로 뽑지 않고 승진된 사람이 오죠. 아이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괴리를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학교 대표인 교장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놀이가 수업에 밀려서 소외되면 안 되요. 손도 부지런히 쓰면서 재주를 키울 수 있어야 하고요. 학교가 사람에 의해, 유행에 의해 흔들려서도 안 되요. 이는 철학과 공동체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필요해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를 꿈꿉니다. 올해는 그런 자유학교의 가치를 세우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다지고 공개하는 것이 목표에요.

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잖아요. 자유를 중심에 둔 교육, 어린이 기본소득 등이 만들 사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벌써 궁금한데요.

-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현재 학생들이 가진 물질적, 정신적 지지는 격차가 상당히 커요. 아예 부재

한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아마도 ‘사회가 뭔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과 같은 경험을 간직한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아이들의 무조건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죠. 심리적, 물질적 안정감, 게다가 관계 형성에도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창조성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협동과 창조는 여전히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유와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라니 결국 아이들이 중등 시기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소중한 가치들을 충분히 누리고 자란 아이들이 만들 세상은 분명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진 ⓒ 양희석

안 될 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3월 말인데 벚꽃이 한창이다. 합정동 연구소를 나서서 여의도 기본소득 당사를 향한다.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 자전거길을 달린다.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여 얼굴을 스친다. 결코 섞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지 겨울과 여름만 있는 듯하다. 얼굴을 때리던 겨울과 여름이 서강대교를 건너니 잣아든다. 좌측에 세계 제일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온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난 미지근한 봄, 가을이 좋은데…, 신의 토사물이 될지언정… 서울시장 선거도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 같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부낀다. ‘따릉이’를 반납하고 길을 잘못 들어 파란색 당사로 간다. 앞을 지키는 젊은, 아니 이제 어려 보이기까지 하는 전경대원(?)이 기본소득 당사를 알려준다. 군인 아저씨라 부르던 시절에서 군대 간 아들을 둔 아저씨로, 이미 제대한 아들을 둔 아까 아저씨(?)로 변화해왔다. 처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니 한때의 용맹정진으로 얻은 지식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건물에 도착했으나 기본소득 당사임을 알려주는 어떤 표지도 없다. 앞에서 대화 중이던 사진 담당 양 선생과 신 후보의 얼굴이 보이니 제대로 찾아왔다.

건물 4층과 7층을 당사로 사용한다. 4층에 내려 인터뷰를 진행할 방으로 들어간다. 가구가 거의 없다. 유독 의자가 많다. 실제로 많았는지 다른 가구가 없어서 많아 보였는지 모르겠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튼 조병화의 ‘의자’가 불현듯 생각났다. 뭐 이렇다 할 ‘의자’에 앉아본 적도 없지만 젊은 신지혜들을 보면서 물려줄 의자는 아니더라도 지탱할 의자는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럴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다.

4층과 7층은 모두 민트색이다. 일하는 이들도 그렇고 벽을 뒤덮은 플래 카드도 그렇다. 색의 이름을 몰랐다. 여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신록의 우거짐을 빛대서 그렇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질문을 항상 준비하는데 이번엔 많이 못했습니다.

- 괜찮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력이 좀 불은 것 같습
니다.

계간 『기본소득』이 선거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후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 그렇겠네요.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문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선거에 포커싱을 두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선거 이후에야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준비를 해도 되나? 다 끝난 다음에 나오
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요. 두서없는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혹시 마감이 4월 7일이에요?

아니오, 3월 말까지는 다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4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선거가

4월 7일이죠?

- 네.

요즘 선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해요.

-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를 해야 겠네요. 요즘 돌아보시니, 선
거 상황이 어떠십니까?



사진 © 양희석-

4가지 기본소득과 7가지 기본 서울 정책으로 맞설 것

- 이제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고, 내일이면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 4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을 담은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도지사님도 기본 시리즈를 많이 내고 계신데, 서울 시민들의 기본권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7가지를 꼽았고, 그 7가지를 ‘기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준비해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 반응은 저희가 이번에 선거 준비를 하면서 33곳의 시민단체를 만났고, 지금도 계속 정책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단체들 중에서 특히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의원이 아동청소년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수당 관련한 입법을 해 보려고 아동청소년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도 청소년 관련 단체들, 특히 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나 후기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수정당, 신인에게 홍보 기회 주는 제도 개선 필요성 실감

사실 양대 정당들, 기성 정당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미디어들이 따라와 주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많은 인력들이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잖아요. 돈, 인력, 기존 미디어의 취재 관행 등 모두에서 열세여서 홍보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서 빙기를 원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잘 안 보이네요.

- 네,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혹시 돌파할 길은 없을까요?

- 선거법 자체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홍보 부분에서는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야 하는데, 언론사나 TV, 라디오 이런 매체들에서는 단일화가 화두였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단일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일찍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왜 출마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짧은 13일 동안은, 본선 기간만큼은 몇 차례라도 부디 매체에서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어젠다가 있어도 전달에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여쭤보면서도 막상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질 않아요.

- 의미 있는 제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얘기되긴 했습니

다. 조정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정치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 불공정한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해 국민들께서 같이 문제제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당 후보들이 결정이 됐잖아요? 대진표가 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나가도 특별히 선거법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 문제 안 됩니다. 두 후보 모두 불평등한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5년, 10년의 장기 계획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 모두 각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무엇을 위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답답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10년 서울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소한 많은 서울시민께 이러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 후보 모두 불평등 개선 계획과 비전 안 보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세훈 후보랑은 뭐가 다르고, 나는 박영선 후보랑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입장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박영선 후보님과 관련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한 계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 후보께서 토지임대부 주택에 접근하시게 된 계기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토지에서 기인한다고 보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정부 여당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 기존 있던 부동산에 대한 토지정의를 세우지 않은 채로 새롭게 짓는 데에만, 다시 말해 분양공급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그동안의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약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10년 전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 귀책사유가 무상급식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무상급식 하면 재정파탄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답게,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지난 20년 동안 선별지급을 통해서 누가 지원을 받았는가? 과연 그 지원을 통해 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성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격차해소와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오후보님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의 뜻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신 후보께서는 불평등의 근원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시고 부동산 안정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부동산 안정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 부동산 안정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한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너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한 가지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가격까지 아니 그것을 넘어 심지어는 쪽방촌의 가격까지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형 토지세로 토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울의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금



사진 ⓒ 양희석

과 기본소득이 연결되었을 때 부동산 세금만큼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지원, 아주 현실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혜택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그런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면 중산층 이하까지도 출출이 막말로 여파를 미칠 수 있거든요. 재산 전부가 이거라. 그래서 기본소득당에서 말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슬처럼 엮여 있는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네. 실제로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 관련된 대출이거나 혹은 이 주담대일 텐데요. 주택보유자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집값을 어떤 과정으로 떨어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기본소득제도가 결합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만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집을 살 사람들은 이 세금을 고려해서 집을 사야 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토지 가격의 0.8%정도의 토지세를 매기는 경우 약 70조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지 정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현실변화에 맞게 더 좋은 방안과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담대가 상류층에서부터 서민층까지, 서민들도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집값 떼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연착륙 방안과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병존할 수 있느냐,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경착륙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만.

-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연착륙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구에서 주담대 비중이 다들 높기 때문에 토지세와 관련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착륙할 수 있게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혹은 그때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율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이외에도 가계대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 배당 통해 부동산 안정화와 연착륙 가능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거둬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국적 차원의 대책이잖아요. 서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설계가 가능할까요?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을 한데 묶어서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서울형 기본소득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간 30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원으로 하는 두 가지랑 말씀하신 대로 입법차원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능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서울시 차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세금, 재산세, 취득세, 서울시의 월세 수익, 재건축초과 환수금 등을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연간 80만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이밖에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이 3~4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금 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약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서울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 좋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다 써도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각 지자체에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4조 정도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3조는 2019년 기준이었고, 2020년에도 불용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서울시가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자, 이겁니다.

오히려 쓸 때다. 나쁜 상황을 대비해서 모으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공감이 갑니다.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말고 다른 선거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있습니까?

- 왠지 계간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 연관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이자 받는데 쓰지 말고 배당해야, 지금이 쓸 때

아니에요. 다른 정책들도 소개해주시면 좋지요.

-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성평등, 공공주거, 기후위기, 돌봄, 노동, 데이터, 동물권, 이렇게 7가지를 담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의 투자를 통해 기본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되 태양광 발전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것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누는 태양광 배당을 향후에 실시하겠다,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전략이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랑 또 다른 한 가지는 데이터와 관련한 것인데, 서울시는 굉장히 데이터 공개를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열린 데이터광장이라는 곳에서 각각의 정보들이 마구마구 공개되는데 그게 개별 시민 한 명, 한 명한테는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모여 있는 정보들이 기업에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박영선 후보님도 그러셨지만, 구독경제, 데이터경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업하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울시 재원이 들어갔다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서울시 세금만큼의 수익을 데이터 배당으로 나누는 방안들을 조례로 만들 기반들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

습니다.

아까 7가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뜻 들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이 혼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7가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지세라든가 탄소세는 입법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17명의 광역자체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서 먼저 제안하고 정책비전을 보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될 건 없잖아 서울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마련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알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기초인데, 한편으로는 ‘원포인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기본소득만 얘기하려나? 건설도 해야 되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가 창당한 지 1년 2개월만에 두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총선을 치를 때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공약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더 해서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몇 가지 제안, 예를 들면 무상교통이라든가 무상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 었다면 이번에 대응하는 이 선거는 천만의 서울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의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서울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개의 기본 서울 정책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6개월간 열심히 준비했고, 평등한 서울 유니버스를, 33곳의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 지방분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내의 불균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격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의 40% 이상이 서울, 경기에 몰려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람들한테 이사하고자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역격차,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풀어야

요즘 부동산이 이슈니까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신상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젊은, 어쩌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강남의 판자촌 마을인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장애인 차별이나 혹은 주거안정, 주거지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은 애초에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약속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렇게 차별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정치가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가장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러

다가 나중에 운영했던 공부방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공부방에 15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명이 집을 잃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였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다음날 당장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모든 건 다 타버렸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무작정 공부방 선생님 4명과 같이 마을회관 7~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집을 잃은 11명의 아이들과 샘들 포함해서 15명이 복작복작하면서 2달 간 같이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을이 다 타버렸으니까 냉장고도 타고 달랐는데, 냉장고의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강남구청은 화재 잔재를 치워주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건강에 너무 해롭고 악취문제도 심각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 한 곳에 모여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도 행정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거복구를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직접 시민들 손으로, 주민들 손으로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4번이나 강남구청은 부셨어요. 용역깡패를 사서. 그리고 나중에는 용역깡패를 고용할 때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봤던 그 마을을 방문한 정치인,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정치인은 딱 두 명 밖에 없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강남구청장이 화재 난 다음 날인가 한 번 왔었고요. 지금은 감옥에 계시거나 할 겁니다.

잘 찾아가셨네.

- 찾아오신 정치인 두 분 중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조승수 국회의원, 강남구청장과 조승수 의원, 이렇게 두 분 말고는 찾아오셨던 정치인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한 분만 찾아오신 거죠. 정당의 힘, 정치의 힘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정치인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면 그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 해부터 정당의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정당정치 자체를 배우게 됐죠.

강남 판자촌 경험 통해 약자 대변할 정치의 필요성에 눈떴다

그게 왜 노동당이었죠?

- 처음에 사회당이었어요. 사회당이 진보신당이랑 합당했고, 진보신당이 이름을 바꾼 게 노동당. 기본소득은 2007년에 금민 대선후보 선거운동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만났고, 제가 만났던 장애인, 판자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너무 유용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출곧 지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정도부터 성평등이라는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많은 여성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아주 중심의제로,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몸담았던 정당을 바꾸고자, 체질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그 정당도 꽤 역사가 깊기도 했으니까, 거기는 노동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과 기본소득이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정당을 바꾸는 데 그렇게 계속 시간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로, 즉 창당을 하기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시장이라는 지위는 행정가, 정치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현실과 실정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관내에서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가 기층민중들의 요구일 수 있는데, 실정법으로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고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거대양당에는 계속 안 보이는 상황이고,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기본권인가 아닌가, 이것이 모두의 존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분명한 행정 원칙이나 정치 기조를 가지고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법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근원에는 정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정치는 법을 만들어내니까. 또 하나, 말씀 중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가 전철을 탔는데 두 번이나 겪었어요. 몇 때리다가 어떤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없네. 하여튼 젊은 여성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나를 짹 아래위로 훑더니 다른 칸으로 가요. 이걸 제가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너무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던졌나요?

조용한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여성의 자살률 급증

-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뿐만 아니라 밤거리리를 걸을 때 내 앞에 어떤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나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듯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토로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조차 안전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는 것 이고, 그런 경험들이 몸에 체화돼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기분 나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대중교통을 탈 때든 어떤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든 나의 안전에 큰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과도기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아저씨가 희롱을 해도 불쾌감을 표시 못 했는데, 이제는 불쾌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 변화의 신호일 수 있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불쾌한 느낌은 이해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카메라 문제도 있고, 아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에서도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90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의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혐오의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못 찾는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 네. 지금 '조용한 학살'이라는 이름이 불을 정도로 자살률이 엄청 급증했어요. 전년 대비 43%.

저도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과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어났을까요?

- 지금 관련한 토론회도 많이 하고, 특히 청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그것이 중요 이슈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놀랍게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여성들의 능력 뛰어나도 사회적 차별의 벽은 여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대학진학률도 여성이 더 높죠. 여성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여성이라는 이유

로 너무 많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직, 승진, 그리고 워낙 데이트 성폭력도 많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나마 학창시절까지는 남녀평등 분위기가 옛날부터는 나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진출해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박탈감, 상실감이 오히려 클 수 있겠네요.

-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그런 걸 잘 참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 계속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발언이 문제예요, 얘기를 해도, 혹은 저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험을 계속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요?

- 네. 지금도 스쿨미투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는 순간 더 많은 벽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일자리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소득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계층이 청년이자 여성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자리 줄어든 걸 보면 20대,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작년과 대비해서도 확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사회 분위기는 자립해야 되는 요구는 더 커졌는데.

- 그렇죠. 워낙 1인 가구가 더 늘기도 한 시점에서 거의 각자도생 하듯이, 사회안전망은 불안하고 각자도생해야 되는데,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이 차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손을 내밀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하지 않나, 하는 연구결과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 페미니즘 관련해서 지금 여성의 당이라고 정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여성들이 기본소득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성에게 더 많은 돌봄을 강요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받으니까 바깥일 하지 말고 가사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고용환경,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많은 여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세대주한테 주지 말고 각자한테 주라고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어도,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더라도 이 한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더 기본소득을 여성들이 지지하시기도 하죠.

여권 신장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이 큰 도움될 것

지금 선거국면이라 선거 관련된 얘기만 계속했는데, 개인적으로 시장이 되든 안 되든 향후 일정, 본인의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언론이든, 다 물을 것 같아요.

-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7월 7이 되었다. 당선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낙선했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재미있네요.

- ‘임기 첫날에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보궐선거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서울시 공공 부문 성폭력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진 ⓒ 양희석

그러면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이면 전수조사는 끝났고, 성평등 업무지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이 재산세 기준으로 2022년에 서울형 기본소득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계획, 7대 기본 서울을 약속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말씀드렸고요. 만약 낙선하게 된다면.

임기 첫날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웃음)

- 또 준비해야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불평등 해소조치들도 있고, 5년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장기과제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서울시민들께 공약으로 제출했는데요, 모든 서울시장 후보가 아마 5년 정도의 기간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준비하고,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 낙선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년 대선에도 후보를 내실 건가요?

- 논의를 해야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원 이슈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광역단체 비례대표, 광역시도 비례의원들의 경우는 다 출마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당장 선거 끝나자마자 시행해야 돼요. 후보 발굴부터 후보 교육, 이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광역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상을 구상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시도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선 때 독자 후보를 내고.

지금은 다 열어놓고 고민한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 중이다?

- 맞아요. 너무 다이나믹하네요, 정치.

대선에 참여하되 어떤 방식일지는 열어 놓고 논의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 포부? 아까 그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 저의 앞으로의 비전이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 ‘신지혜가 만드는 서울은?’, ‘신지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이런 질문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부터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정당이고 정당정치에 참여라고 생각했고요, 생각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해 정당을 통한 정치운동을 해보자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창당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사진 © 양희석

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자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줘야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내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국가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갖춰야 하는 기본들을 더 촘촘히 만드는 일들을 계속 기본소득당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계간 『기본소득』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9년에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105조 원가량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불로소득 전체의 3분의 1이나 몰려 있을 정도로 서울은 정말 불평등이 압축된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서울시민들께 제안드리는 방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경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같이 상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궐 선거 전후 기본소득당과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 여기서 마쳐야겠지요? 오늘은 더 이상은 곤란하시죠?

-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황제의 식탁

김인숙
소설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다. 책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 원고를 쓰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한다. 햇살이 좋은 도서관, 혹은 창밖 풍경이 좋은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꺼서가에서 꺼내온 책은 책상 위에 펼쳐 놓고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있게 되기도 한다. 물론 한가한 소리다.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동안, 내 옆자리 사람은, 그리고 옆 옆자리의 사람은, 실은 나 빼놓고 거의 전부 다 잠시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하며 뭔가를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참고서를 풀고, 외우고,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그 위에 빨간색 밑줄을 몇 번씩이나 긋는 사람들.

가끔은 코앞에 닥친 원고마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매일 이 다시피 도서관에 갈 때도 있다. 노트북을 싸 들고, 메모지를 챙기고, 연필과 빨간색 색연필과 포스트잇과, 아무튼 닥치는대로 다 챙겨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그런 때는 정수대 앞, 혹은 화장실 앞의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묻는 사람도 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공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최고라고 알고 있다.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른다. 내게 인사를 건넨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갑자기 동지가 되거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눈으로는 서로 ‘화이팅’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의외의 책을 발견하는 것에도 있는데, 서가를 왔다갔다하다가 우연히 뽑아든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하거나,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줄거리에 끌히거나,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인물들을 발견할 때가 그렇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사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도록 한 권을 발견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도록은 2019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때 나온 것이다. 제목 그대로 ‘황제의 밥상’에 대한 것인데,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인 만큼 전통과 서구의 물결이 뒤섞인, 말하자면 한식과 양식이 뒤섞인 ‘밥상의 전환기’에 관한 책이라 하겠다.

도록은 말 그대로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니 서가에서 선 채로 보기 좋은 책이기도 하다. 슬렁슬렁 보다가 다시 끊어두고 또 다른 책을 읽기 좋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불들었다. 개인적으로 난생 처음일 뿐만 아니라 유사이래로도 처음인 낯선 서양 음식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보다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표현의 방식이었다. 그토록 낯선 밥상 앞에서 그들은 그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남겼을까.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이라면 익숙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그도 저도 아니어서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에 관해서라면 어땠을까.

이 책에는 1876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기수의 견문록인 『일동기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6월 3일의 일기에 도쿄의 한 료칸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연회가 서양식이었던 모양이다. 1876년은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한 해다. 그 전에도 물론 서구인들의 침입이나 방문이 없지 않았고, 그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서양식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조사하러 온 조선 관리들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그 연회는 기껏해야 배위에 차린 한끼 밥상일 뿐이었다. 김기수가 일본에서 참석한 이 연회야말로 조선 관리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혹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정식 서양식 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수는 이 연회를 마치 글로 쓴 정밀화처럼 상세히 묘사해 그의 견문록에 남겨두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화 꺾꽂이 두 병과 조화 두 대를 서로 엇갈려 놓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와 떡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앞에는 각각 자기 접시 두 개를 놓았는데 접시 한 개에는 백포와 떡을 담았으니 백포는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것이고 떡은 음식을 먹는데 둡는 것이다. 접시 한 개는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빈 접시의 원편에는 대, 중, 소의 숟가락 세 개가 있는데, 이빨이 있어 음식을 젓가락질할 수 있으며 찍어 먹을 수도 있다.”

도록에는 김기수의 위와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

접 서양음식을 주문해 먹고 그 소회를 남긴 한 관리의 서찰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조선 정부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김득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촌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후로 겪어야 했던 한가지 고충은 외국 음식과 식사법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네.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 -오래된 야만인의 유물- 를 써야 했던 까닭에 처음 며칠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네. 입술은 베이고 혀를 찌르고 옷에 고기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어.”

김득량은 재기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적인 서찰인 만큼 건조한 기록보다 상징적인 과장을 섞은 풍부한 묘사가 돋보인다. 설탕인줄 알고 소금을 커피에 넣었다던가, 꿀인줄 알고 버터를 삼켰다던가하는 일화를 ‘문학적으로’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루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네. 주변의 의미심장한 눈길과 웃음을 감지했지만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안전한 바법이라는 점을 간파했지. 주변 사람을 보니 노르스름한 원가를 빵에 바르길래 꿀이라 생각하고 듬뿍 입에 넣었는데, 맙소사! 꿀이 전혀 아니었다네. 영어로 버터라 부르는 음식이었는데 그 후로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네.”

김득량의 글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야만인의 유물이라던가 칼과 창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밥상에 떡하니 놓인 칼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을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기수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크를 이빨달린 숟가락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도록에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그 기발한 묘사에 순간 폭소가 터졌다가, 곧이어 감동적인 기분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 하여 한 묘사인가. 기발함과 재기가 아니라 진땀과 노력이 느껴지는 묘사가 아닌가. 포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김기수의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이 눈에 보일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나는 얼마나 쉽게 쓰고 있나. 익숙한 것을 날름날름 받아먹듯이 한번도 되새기지 않고 꿀꺽꿀꺽 삼키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김기수의 글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었을 터이다. 반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글은 정보가 아니라 묘사다. 사물부터 사람까지, 사물의 본성부터 사람의 본성까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세계의 본성까지. 익숙한 것은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 경계의 지점을 새롭게 만드는 것.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고,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익숙하지만 구태의 연하지 않게, 낯설지만 생경스럽지 않게. 그래서 김기수의 건조하기 짹이 없는 글은 김득량의 재기 넘치는 글보다 내게 오히려 감동적이다. 김기수가 그 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보지 못했을 그 생소한 물건이 아니라 그 생소한 물건이 뜻하는 바였을 것이다. 굴욕적인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신분이었던 그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하는가, 아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커피를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커피와 함께 이빨 달린 숟가락으로 케익도 먹었을까? 그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해도 즐겁거나 유쾌한 일 이 아니다. 고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밤새 깨어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잠들 수 있었던 황제는 커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이 모두 그를 물어뜯는 이빨과 같았을 테니.

도록을 다시 서가에 꽂아놓고, ‘황제의 식탁’과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 도서관에 가는 즐거움 중의 또 하나는 뭔가 반짝 흥미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그와 연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은 많아지고, 점점 더 끈기는 사라져, 내일 봐야지 하는 것은 영원히 기약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관심가는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

황제에게는 서양 요리사가 있었다. 잘 알려진 손탁이 있고, 손탁의 후임으로 왔던 엠마 크뢰벨도 있다. 1906년 한 해 동안 황제의 서양식 밥상을 책임졌던 엠마 크뢰벨은 그 후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소개되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서양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던 것처럼 서양인들 역시 조선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다. 조선인들은 흔히 대식가로 표현된다. 그때 그려진 그림 중에는 수북이 쌓인 밥을 밥상 한가운데 두고 김치 하나 만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 흔히 보인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과하게 많은 밥이다.

그러나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서양인들이 놀라움으로 표현한 대식가의 밥은 실은 우리에겐 힘이었다.

그래서 나도 힘이 되는 밥상을 차리기로 한다. 밥이 중심인, 그것도 흰 쌀밥으로. 영양학적으로 보면 잡곡 하나 안 섞고, 반찬도 부실한 이 밥상은 매우 나쁜 밥상일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밥상이 힘이 된다. 이런 밥상에 얹힌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때는 잡곡 섞어먹기 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쌀 아낀다고 막걸리를 못 빚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쌀수입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쌀아 남아돈다고도 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떠오르는 건 생일날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미역국과 함께 놓인 흰쌀밥, 소복이 쌓아올린 고봉밥이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던 엄마의 말.

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른 번을 씹으랬나, 백 번을 씹으랬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성과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황제의 식탁같은 내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

<끝>

휴가

강화길
소설가

그해 여름, 우리는 친자매인 척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경인언니와 나는 사촌지간이었고, 생김새가 꽤나 많이 닮았으니까. 물론 얼핏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는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컸지만 나는 사각턱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 모양이 똑같았다. 내게는 친할머니, 그러니까 경인언니에게는 외할머니인 이경자에게 물려받은, 아랫입술이 도톰한 모양새의 작은 입술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모습이 매우 비슷했다. 그러다보니 뭐랄까, 분위기도 비슷했던 모양이다. 솔직히 나는 그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뭔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가보다 했다. 아, 나랑 경인언니는 많이 닮았구나. 혈육은 혈육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이이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꽤나 가까웠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랬다. 고모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동네에 살았다. 김장철이 되면 함께 김치를 담았고,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모여 밥을 먹었다. 그러다보니 경인언니와 나는 서로의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났다.

나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나는 외동딸이었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밀려드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오르는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가라앉곤 했다. 이제는 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 나는 경인언니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사랑했다. 경인언니도 그랬을까.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데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래 여름, 언니는 가족을 바꾸려 했다.

그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것, 그것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를 그렇게 불렀다. 내 친엄마와 친아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름에 잠시 그렇게 불렀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나이통 부부’였다. 그들은 불륜

관계였다. 이영진은 부인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오연주의 경우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 있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새 출발을 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때문에 이영진과 오연주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뿐이었다. 불안하고 외로운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남사스러운 짓거리로. 어쨌든 그들은 우리 마을의 탄천맨션 203동 3층에 자리를 마련했다. 살림을 차린 것이다.

고백하자면 열한 살이었던 그 시절, 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들이 우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때 내 생각의 최선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인언니가 그 집에 놀러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나는 언니를 좋아했고, 언니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집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듯 놀다 오는 일에 왜 위화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까? 그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경인언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열세 살이었던 그녀는 분명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들을 좋아했다. 언니 말로는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연주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언니는 꾸준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저런 소문을 달고 다니며 많은 시선을 받을 때부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들을 그토록 따른 것은, 그래, 역시 사랑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언니의 말을 따라 탄천 맨션 203동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내게 매우 잘해주었다.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다.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테니까. 결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잘 따르는 이 여자애들을 친자식인 셈치며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해 여름, 우리는 한 가족처럼 휴가를 갔다.

그날 바닷바람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나와 경인 언니. 우리는 그날 동해로 놀러갔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 만화영화 주제가를 따라 불렀다. 지금도 부를 수 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전생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공주와 왕자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 세상을 지키는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빠는 노래를 크게 틀어

주었고, 엄마는 경인언니가 만화영화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웃으며 들어주었다. 나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과자를 먹었다. 나의 친엄마라면 절대 사주지 않았을, 치토스와 버터링 쿠키. 불안한 것도 없었고 가책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건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과 비슷했고, 놀이터에 가는 것과도 비슷했다. 치토스와 버터링. 만화 주제가. 차창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닷바람. 웃음소리. 엄마. 아빠. 행복했다.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났다.

툇집이었다. 과자를 많이 먹은 탓인지 나는 속이 더부룩했다. 뭘 먹든지 별 관심이 없었다. 반면 경인언니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우와, 우와 소리를 내며 눈을 반짝였고 광어회가 나왔을 때는 요란하게 손뼉을 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다. 아니,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해야 맞을까. 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분명 과장되어 있었다. 반찬 하나하나에 이렇게 감탄할 일인가. 언니는 분명 엄마와 아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놀이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감탄을 내뱉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낯선 강박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의 진짜 가족. 그러니까 고모네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경인언니는 항상 그런 과장된 행동을 하곤 했다. 큰고모에게 유독 친근하게 굴었고, 외삼촌과 외숙모 – 나의 친부모 – 에게도 그랬다. 마치 우리 가족은 굉장히 다정하고 화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걸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처럼 쉼 없이 깔깔대며 웃고 감탄을 연발했다. 어색했다. 왜나하면 ……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언니의 부모님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큰고모 역시 자신의 형제들에게 데면데면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한 마을에서 왜 그 토록 오래 붙어 살았을까. 뭐하러 김치를 나누어 먹고, 생일 때만 되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밥을 먹어 댔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언니의 행동에 살짝 긴장해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와,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가게에는 큰 소리를 낸 남자와 일행인 여자, 그리고 우리들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으니 말이다. 가게 주인이 힐끔거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들어보니 별 건 아니었다. 남자는 가게에 놓여 있는 신문을 보고 화를 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신문에 실린 어떤 불행한 기사 때문에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는 그냥 그 신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만 좀 해.”

남자의 앞에 앉은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남자는 소주를 들이키며 대답했다.

“뭘 그만해? 이런 신문은 없어져야 해. 내가 저것만 보면 아주 열불이 터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또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 내가 열이 뻗쳐서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이따위 신문을 구독해?”

여자는 포기했다는 듯 혼자 회를 집어 먹었다. 남자는 계속 혼자서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는 모른 척, 사이다를 컵에 따라 내 앞에 놓아 주었다. 나는 사이다를 한 번에 다 마셨다. 남자는 계속 혼자 떠들었다. 같은 말이었다. 이 신문은 나쁜 것이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짓이다. 이 가게는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가게 주인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다.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신념은 있어.”

여자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엄마와 아빠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경인언니는 마치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듯 행동했다. 여전히 행복을 과장되게 과시하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두를 지켜보았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경인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언니에게 물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도서관 책에서 복사했어요.”*

아빠가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의 얼굴이 조금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경인언니를 달래듯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리고서 종이를 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았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놀랐는지 곧장 이해했다. 그건 입양서류였다. 아, 언니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니 나와 자신을 함께 입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 그대로 엉엉 울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당황했고, 언니 역시 그랬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남자가 계속 화를 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나는 차 속에서도 내내 울었다. 동해로 떠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네 사람 중 누구도,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친부모님을 마주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앞에 모여 들어서 뭐라 뭐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의 친부모님에게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 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온종일 엄마,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과 나의 진짜 엄마 아빠 사

이에서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인 건 친부모님들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왔고, 우리를 끌어안았고, 자신들 쪽으로 잡아 당겼다. 우리를 그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다.

이후 우리, 그러니까 고모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경인언니는 그때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영진과 오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주 나중에,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해 여름 내내, 내가 엄마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엄마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최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 무엇도 부끄럽지 않다.

* 이 대사는 영화 마틸다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다.

봉인된 시간. 4

신경숙
소설가

-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이곳에 생길 줄은 몰랐는데요?

4.3 때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후박나무

아래에서 아침마다 일생을 술을 마시며 살다가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아저씨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나는 유정씨에게 애먼 자전거 빌려주는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서 나도 모르게 이미 지나쳐온 그 집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나의 눈속에서 그 집 낮은 담장 위의 소라 껍데기, 혹은 전복 껍데기가 빛 속에서 반짝거려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저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도 통통 부어있는 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문득 오년 전에 내가 이곳에 머물 때 아저씨가 저 후박나무 아래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 일을 멈추고 귀를 바짝 세우고 그 노랫말을 알아 들으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유정 씨가 그 아저씨의 가족이 4.3 때 모두 학살 당했다고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때는 끝내 알아들을 수 없던 그 아저씨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이 저절로 해독되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을요. 걸음을 뗄 때마다 그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귀에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정 씨 보폭 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유정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 하며 자신도 보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 자전거 탈 줄은 아는 거지요?

유정 씨의 목소리가 일렁이다 멀어지는 바람 속에서 잘려나갔습니다.

- 왜요? 자전거 같은 거 못 탈 사람처럼 보여요?

- 아니요, 잘 탈 사람처럼 보여요.

- 그런데 왜 물어요?

- 대답을 하나 안하나 보려고요.

유정 씨는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이상한 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집은 마을 안의 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난 듯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초입에 세워져

있는 몇 채의 빌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에는 빌라를 짓느라 기초를 닦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고동색과 아이보리 색이 섞인 드라이빗 공법의 외벽은 새 건축물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서 있더군요. 내게만 그리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는 어쩐지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나지막한 돌담도 크고 작은 후박나무도 없이 빌라의 1층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엔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 그래 타지에서 아이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사를 왔나요?

내가 빌라를 바라보며 묻자 그걸 잊지 않았네요? 중얼거리며 유정 씨도 빌라 쪽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마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없자 전쟁 후에 지어진 이곳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5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는 수령이 몇십 년 되는 나무들이 학교 앞과 뒤에 무성한 그늘을 이루며 살고 있지요. 5년 전에 이곳에서 머물 때 동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소롯한 길을 따라 들어갔다가 발견한 이 마을의 초등학교는 나를 단박에 사로잡았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초등학교의 화단엔 이 섬의 꽃들이 만개해 있고 나무들은 학교의 앞뒤에 우뚝우뚝 서서 큰 그늘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는 화단으로 들어가 발돋움을 해서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교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칠판 앞의 교탁과 그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음직한 책상과 의자들이 나란나란 놓여있고 그 텅빈 교실에 찾아든 별만 어릉어릉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 가에 나란나란 심어진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 사이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초등학교에 사람의 기척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유정 씨에게 학교가 왜 텅 비었느냐고 물었던 기억. 그때 유정 씨의 대답은 마을에 학교에 다닐만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교의 위기를 막고자 타지에서 이주민을 받기로 했고 이주민들이 이 섬의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에 집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꽤 되어서 마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때도 공동주택이라고만 했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빌라라고 말해 준적도, 어디에 세워질거라는 것도 말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자전거를 빌리러 가는 길에서 새롭게 지어진 빌라를 보는 순간 저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 저절로 들었는데 틀리지 않았던 거지요.

- 의외로 이곳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계획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지어졌어요.

- 학생들도 많아졌겠군요.

- 예. 일학년은 없지만 이학년 셋, 삼학년 일곱, 사학년 넷, 오학년 열둘, 육학년이 여섯... 그렇다고 들었어요.

- 숫자를 다 알고 있네요?

내가 묻자 유정 씨는 그러네요, 내가 하며 웃었습니다. 유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아이들 양호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했습니다.

- 유정 씨가요?

내가 되묻자 유정 씨가 멋쩍게 웃으며 섬에 들어오기 전에 육지의 초등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었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유정 씨의 전직이 한번도

학교 양호선생님이었을거라는 것은 짐작을 못했습니다. 집을 꾸며놓은 것을 보고, 특히 내가 묵고 있는 유정 씨의 집의 거실에 아일랜드 식탁을 유정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유정 씨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쪽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다시 앞장서서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유정 씨가 혼잣말 하듯 웅얼거렸습니다.

- 갑자기 이런 얘기 이상할 테지만 나는 양호 선생이라는 내 직업에 만족했었어요. 어려서 어쩌다 할머니랑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지켰거든요. 할머니는 한 밤에 열이 나곤 했었는데 그때면 나도 모르게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 이마에 올려주곤 했었어요“

.....

- 할머니 모시고 보건소 다니는 일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순서대로 잘 드시게 하려고 약봉지에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써서 볼이기도 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내가 챙겨주는 약을 드시다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이 생각나요. 병실에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셔서 내가 할머니 가까이 가자 두 팔로 제 머리를 안으시더니 내 귓결에 대고 고맙고 감사하다 고 가쁜 숨을 쉬시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가도 되지야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린 나를 두고 가시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시면서 버티셨다는거요.

나는 갑자기 듣게 된 유정 씨의 할머니 얘기에 유정 씨를 흘깃 바라보았다. 유정 씨는 담담해보였다. 그냥 어제 날씨가 어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 그렇게 양호선생이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나를 찾아올 때면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이들과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그랬어요. 배 아픈 아이는 배를 쓸어주고 운동장에서 무릎 깨져서 양호실에 오는 아이들 흐르는 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하는 일들이 좋더라고요.

유정 씨는 얘길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정 씨를 잘 알게 된다고 해도 저렇게 혼자 가만 미소짓는 그녀의 시간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겠지요. 내가 혼자 웃는 유정 씨를 바라보니까 유정 씨가 웃음을 거두고는,

- 죄송해요, 혼자 웃어서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도시에서 양호선생으로 재직할 때 어떤 여름날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수업 중에 양호실에 거의 실려다오다시피 했는데 내가 머리 어디가 가장 아프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인데 생긋 웃으며 다 나았다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 유정 씨가 그런 데가 있어요.

- 내가요?

그렇습니다. 유정 씨에게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구석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석. 별 말을 안 하는데도 유정 씨 생각을 하면 어떤 쓰다듬을 받고 있는 느낌.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그런

구석을 더 강하게 지니고 계시지요. 제가 뉴욕에서 머물 때 언젠가 한번은 선생님이랑 맨해튼 외곽의 디아재단의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지요. 쇠를 사용해서 둥근 원형의 작품들이 마치 책장처럼 펼쳐졌던 인상적인 전시였는데 그 전시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기차를 타고 디아재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생각만 선명하게 납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잊으셨을지도. 기차 안에서 무심히 차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팔을 펼쳐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나 하고 팔을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몸을 약간 제 쪽으로 돌리시고는 제 팔을 조용히 쓸어내려 주셨어요. 어깨 쪽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계속해서 쓸어내려주셨어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하다가 선생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자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차창 밖의 스쳐지나가는 풍경을 무연히 내다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짧은 잠은 달콤하고 깊었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그때까지 제 팔을 가만가만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디아재단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역에 이를 때까지 선생님이 제 팔을 쓸어내려주던 기억. 유정 씨가 양호 선생으로 만났던 피아노를 치기 싫어 두통에 시달리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이야기를 듣는데 선생님의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디선가 들으니 이렇게 무게 없이 바람결처럼 몸을 쓰다듬어 주면 새 기운이 고인대, 라고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하셨지만 제게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기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 피로가 쌓여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선생님과 그 전시를 즐겼지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자주자주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출몰해서 그 기운을 전해주는 것도 그 증명이지 않을까요. 말 수 적은 유정 씨가 자신이 양호선생으로 재직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선생님 이야기를 유정 씨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가만 참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유정 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 것 같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일이네,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입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이 팬데믹 시절에 살던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섬으로 들어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유정 씨네 집 거실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군요, 꼼짝하지 않고만 있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한밤중에 무슨 유령처럼 흐느적흐느적 몸을 일으켜 폭식을 해대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유정 씨에 대한 예찬이 흘러나와서요. 유정 씨는 제 말을 들으며 또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멋쩍어져서 사실이에요, 하니까 유정 씨는,

- 그러게요, 내가 아이에겐 그런 존재였던 것도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 엄마 국성이 참 대단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집에 가면 밤이 깊도록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

제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유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내가 건네 준 약을 먹은 아이 하나가 그 약이 맞지 않았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만한 그릇밖에 못되었는지 그 후로는 양호 선생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

-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

-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결국 다시 이 섬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이 되었네요.

- 좋은데요.

- 폐교를 앞둔 학교의 대책이 통했다는 게 나에겐 신선했어요. 물론 이 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아이들이 원해서 이 섬으로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이 옮겨 심어지는 나무같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으로 이동해 와서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호 선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지원을 했어요.

-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유정 씨는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라는 제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밝고 맑게 큰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 그럼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나누며 오솔길 사이 건너에 있는 두 채의 무덤을 지나 자전거 빌려주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항상 비어 있어서 5년 전에 그곳을 지나다닐 때면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보던 작은 마당을 지닌 빈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낮은 돌담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돌담 한 쪽에 부재시에는 전화를 걸어달라는 표시와 함께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그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네요, 마당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긴 했으니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게 표시가 되었겠군요. 유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놓은 것인지 안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미리 한쪽으로 세워둔 자전거를 유정 씨에게 가리키며 방금 체인에 기름칠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유정 씨가 바퀴를 눌러보자 아주머니가 방금 바퀴에 바람도 ‘쎄게’ 채워두었다고 발음하더군요. 아주머니가 바람 ‘쎄게’ 채워두었다고 할 때에야 저는 아주머니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자글자글한 퍼머 머리에 그을린 얼굴의 이 곳 아주머니들의 일반적인 얼굴인데 말할 때마다 하얀 덧니가 드러났습니다. 덧니가 그렇게 하얗 수도 있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유정 씨가 자전거 빌리러 가자고 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남자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쟁겨주고 돈을 받고 해가 저물때까지만 반납을 하면 된다고 체크를 하면서 하얀 덧니를 내보이며 웃을 때마다 묘하게 같이 웃게 되었어요.

- 어느 쪽으로 나가볼까요?

유정 씨는 먼저 자전거위에 올라타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 바당 쪽으로 나가 봅소

유정 씨는 제게 묻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아주머니가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라고 덧붙였어요.

- 그럴까요?

다시 동의를 구하는 유정 씨에게 그러자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은 눈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으나 바다와 멀지 않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고 십분 정도 가면 바다에 닿을 겁니다. 예전에 이 섬사람들은 어쩌든지 바다 쪽에 먼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는 집이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곧 삶의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도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바로 바다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 폭풍의 위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섬의 바람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바다의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거리는 20키로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쯤은 거리를 두고 집을 짓는 게 좋다고요.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기준은 아니지만 예전엔 바닷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보면 맞다 했습니다.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내륙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얼핏 섬에서 살려면 기왕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바닷가 쪽에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무심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닷가 쪽에서 한 달 쯤만 지내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해줬던 사람이. 그는 말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당장 열흘만 지나도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더군요. 특히 이곳 섬은 비와 바람이 많아서 매일 불어오는 모래 섞인 바람에 매일 창틀을 닦지 않으면 모래 먼지가 수북한데 아무리 좋은 창틀을 사용해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래먼지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설령 널어놓는다고 해도 습도가 높아서 잘 마르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토박이로 사는 타지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이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육지에서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바닷가에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페달을 굴리며 먼저 출발한 유정 씨를 따라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서 자전거에 달린 거울 속으로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통통한 눈자위를 잠깐 응시하다가 유정 씨를 뒤따라 페달을 굴렸습니다. (계속)

위기의 지구와 ‘노나메기’라는 ‘하제’(희망)

류보선

문학평론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희망 없는 역사와 ‘악의 평범성’

장편 연작시 「한라산」(1987)으로 필화사건을 겪어 ‘한라산의 시인’으로 알려진 이산하가 오랜만에 시집을 냈다.『악의 평범성』이다. 그런데, 이거, 참, 뭐랄까, 「한라산」을 발표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이산하는 여전히 ‘한라산의 시인’이다. 일찍이 평론가 김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 18세에 멈춰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4.19세대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니와, 이 김현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이산하는 거의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라산’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악의 평범성』에 따르면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시금석적인 사건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전역에서 ‘제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제주 4·3 항쟁’ 이후에도 ‘제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은 줄곧 반복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폭력적 구조 혹은 구조적 폭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그 구조적 폭력은 ‘악의 평범성’ 혹은 ‘평범성의 악’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수산시장의 대어들.”/ “육질이 빨간 게 확실하네요.”/ “거즈 덮어놓았습니다.”/ “에미야, 흥어 좀 밖에 넣어라.”//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여러 시신들 사진과 함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글이다./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된 게 아니라/ 진도 명물 꽃게밥이 되어 꽃게가 아주 탱글 탱글/ 알도 꽉 차 있답니다~.”// 요리 전의 통통한 꽃게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글이다./ 이 포스팅에 ‘좋아요’는 500여 개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댓글은 무려 1500개가 넘었다./ ‘좋아요’보다 댓글이 더 많은 경우는 흔지 않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환호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내 옷깃을 스쳤을 우리 이웃이다./ 문득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범인을 찾은 듯 관객들을 뛰뚫어보는/ 송강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른다/ 범인은 객석에서 숨어 있고 우리집에도 숨어 있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범인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이다.(『악의 평범성 1』 전문)

『악의 평범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범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렇게 평범한 존재로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악을 실현하는 한, 아우슈비츠는, 제주의 4·3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시인은 ‘시인의 말’에 “내 시집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악의 평범성』은 세계의 역사 전체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오늘날의 현존재들에 대해 비관적이다.

비록 『악의 평범성』이 인간 역사 전체의 발전가능성과 현존재들의 잠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그렇다고 언뜻언뜻 현현하는 진리의 빛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두운 심연에 극단적으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찰라적으로 현현하는 일망의 희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故 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故 남윤철 단원고 교사// “내 구명조끼 니가 입어.”/-故 정차웅 단원고 학생// “지금 빨리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 길게 통화 못해. 끊어.”/ -故 양대홍 사무장/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故 최혜정 단원고 교사// '세월호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시 청탁을 받았지만 결국 쓰지 못했다./ 이 이상의 시를 어떻게 쓰겠는가.(「유언」전문)

『친일문학론』과 『일제침략과 친일파』 등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이 짧었을 때 일제시대의 신문을 뒤지다가/ 뜻밖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혼자 며칠 고심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친일파 책을 쓰려고 옛날 부역자 자료를 찾다가/ 아버지 이름이 나온 신문기사를 봤어요……” “……” / “아버지 이름을 ……빨까요?” / 아들 앞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종국아. 나를 밟고 가라./ 내 이름이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나를 밟고 가라」의 전문)

『악의 평범성』 속에 간혹간혹 튀어나오는 ‘선의 비범성’의 빛은 이렇게 강렬하다. 때문에 그 찰라적인 불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혹시 이러한 진리의 순간이 이어지면 이제는 ‘악이 비범’해지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 ‘선의 평범성’이 구현되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곧 선하고 참한 삶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한라산의 시인’에게서 ‘낙관 없는 희망’ 같은 제목의 시집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날은 결코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날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이산하의 시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기 를 기원해 본다.

2.

뒤늦은 귀환 혹은 진정한 출발

여러 차례 텅 빈 영화관에서 거의 홀로 영화를 보면서 가능한 한 자주 영화관을 찾으려 했다. 이 다짐이 영화관이 계속 열려 있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덕분에 세 편의 인상적인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이의 아내>. 세 편 모두 강렬한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느낌도 있었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어두운 영화였다. 여기, 세 자매가 있다. 이 세 자매는 모두 극도의 불안 속에 휩싸여 살아간다. 물론 그녀들의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의 불안과 거리가 멀다. 그녀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불안은 과거로부터 온다. 예고 없이 출몰하는 어떤 원장면들 때문에 그녀들은 문득,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떨거나 기도하거나 술을 들이켠다. 맏언니는 말한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가 하면 둘

째는 기도한다. 그리고 말한다. ‘언니가 놀 기도하는 거 알지?’. 막내딸도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쓰레기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그녀들의 불안의 실체 혹은 실재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문득문득 귀환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들이 공포의 정동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음이 암시된다. 이쯤에 이르면 이 영화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데, <세 자매>는 그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 그것을 덮느라 병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녀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어두려 했던 바로 그 원장면을 향해. 하지만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장면들이 연속된다고 해서, <세 자매>의 긴장감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다. <세 자매>는 그 유일한 길,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측가능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독특한 속도와 풍부한 디테일들로 조절하여 끝까지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을 유지한다. <세 자매>는 바로 그 원장면을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최대한 지연시키고 정말 오싹할 정도로 강렬하게 터뜨린다. 히치콕이 말한 서스펜스와 공포를 동시에 가동시킨다고 할까. 하여간 <세 자매>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세 자매인 그녀들과 외아들인 그의 삶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원장면을 관객 앞에 드러낸다.

<세 자매>가 마지막에 드러낸 그 원장면은 원장면에 값할 정도로 충분히 무시무시하며 실재적이다. 세상에는 점잖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집에서는 치명적 폭력을 일삼는 원초적 아비가 있고 그 아비가 빚어내는 공포와 전율의 풍경. 이 원장면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들과 그의 마음의 병이 이 원장면을 얹누르고 이겨내려는 안간힘의 결과임인 밝혀지고, 그녀들과 그의 수수께끼같았던 이상 행동의 퍼즐이 맞춰진다. 그녀들과 그는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각기 신경증(맘언니는 히스테리, 둘째는 강박증), 분열증(막내딸), 정신병(아들)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두는 원초적 아비의 가혹한 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안간힘, 그러니까 방어기제였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 자매>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재현한 정신분석의 드라마라 할 만하다.

<세 자매>를 보는 내내 정교하게 세공된 정신분석 드라마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감추었다가 마지막에서 드러내려는 그 원장면이 혹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 장면 아닐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족 모두의 생사여탈권을 끈 듯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는 아비와 그 남편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어머니, 그리고 그 폭력의 노골적인 희생자인 아이들(특히 딸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던, 그것도 한두 세대 전의 성장 서사에서 단골 메뉴였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러날 원장면이, 그것이 어떤 장면이어야 할지는 가늠조차 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장면이 아니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 자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 <세 자매>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이 기시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자매>를 되짚어 보면서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감상을 접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세 자매>가 ‘세 자매’의 실패한 성장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병증이 깊은 상태이지만 ‘세 자매’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통해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지켜내며, 그 덕분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녀들은 어머니의 역능을 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과잉이거나 과소의 억압을 행할 뿐 필수불가결한 억압을 적절하게 행하지 못하며, 그 결과 그녀들의 아이들 역시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겪는다. 그녀들은 덮개-기억을 걷어내고 새삼 그녀들의 원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그것이 두렵지만, 결국은 원장면과 마주한다. 그래야만 이 성장장애의 상태를 그녀들 세대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 자매>는 익숙한 이야기의 단순 반복과 거리가 멀다.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것을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그것’으로 되살려 놓았다고 해야 한다. 시대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란 곧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발칙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현존재들의 실존 형식과 탈-존의 가능성을 가장 밀도 높게 재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터, <세 자매>는 바로 그런 사례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세 자매>가 현재적 의미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관련이 있다. 힘겹게 갑작스레 귀환한 원장면과 마주한 ‘세 자매’는 용기를 내어 그녀들의 삶 전체를, 그리고 그녀들의 딸/아들들의 성장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아비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원초적 아비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 세 자매의 삶 앞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 된다. 그것은 가해자인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과-용서-화해의 길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데리다가 말한 진정한 용서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이건 간에 ‘세 자매’의 앞에는 또 다른 결단과 결전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 자매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 앞에 제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 자매>는 성장에 실패한 세 자매의 뒤늦은 성장 이야기를 통해 현존재들의 성장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영화라 할 수 있다.

케빈 맥도널드 감독의 <모리타니안>은 2015년 출간된 모하메드 올드 슬라히의 「관타나모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모하메드는 9.11 테러 이후의 어느 날 집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9.11 테러의 주동자라고 볼 만한 몇 가지 정황 증거 때문이다. 빈 라덴의 측근인 사촌과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사촌이 그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 사실 이 돈은 사촌의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달라며 부친 돈이지만 테러 자금으로 받아들여져 그는 의심만으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2002년부터 관



타나모 수용소에 갇히는 몸이 된다. 그리고 6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오로지 그의 자백에 기대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자백이란 혹독한 고문과 협박, 인간적 모멸의 결과물임이 밝혀지고,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혹독한 고문과 치욕적인 모멸의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관타나모 다이어리」로 묶인 이 기록 덕분에 그는 무죄판결을 받지만 그가 관타나모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책이 출간된 이후인 2016년 10월 17일이었다.

<모리타니안>은 「관타나모 다이어리」가 출간된 지는 4년 만이지만 '관타나모 수용소'가 그 악명을 떨친 지 거의 20여년 만에 나온 영화인 셈이다. 물론 「관타나모 다이어리」같은 기폭제가 있어야 했겠기에 오랫동안 '관타나모'를 외면했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느낌까지를 떨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안을 삼을 점도 있다. <모리타니안>이 뒤늦게 도착했다는 시차^{時差}가 주는 아쉬움을 메우고도 남는 강렬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원작의 힘 일 수 있겠다. 하지만 감독의 연출력과 명품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양상을 또한 이 영화가 줄곧 유지하는 밀도의 원천이다. 특히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두 입장의 네 가지 시선¹⁾을 비교, 대조해가다가 정점에서 외설적으로 조우하게 하는 치밀한 배치는 경탄할 만했다. 그리고 모하메두에게 가해지는 긴 고문 장면(수면 장애, 물고문, 성적 수치심, 극심한 추위와 공포, 시청각 자극제, 가족을 이용한 협박 등)을 통해 표출되는 영화의 진실을 향한 열의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한마디로 <모리타니안>은 뒤늦게 도착한 감은 있지만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예외상태적 구조적 폭력과 인종적 증오와 혐오를 핍진하게 재현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모리타니안>은 이 구조적 폭력과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바, 이 또한 경청할 만하다. <모리타니안>이 제시하는 제시하는 탈·존의 윤리학은 이렇다.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용기를 내서 그에 맞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폭력적 구조의 한 성원일 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아감벤)을 발휘하라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엔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는 늦어도 한참 뒤늦게 도착한 영화로 보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스파이의 아내>는 731부대의 그 악명 높은 생체실험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일본 영화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그간 일본 영화에서 이

1) <모리타니안>은 특이하게 모하메두를 두 개의 대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다른 시차^{時差}가 발생, 모하메두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네 개가 된다. 먼저 국가기구의 시선, 국가기구는 모하메두를 9.11 테러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사형선고를 내리고자 하나 국가기구의 대리인인 군검찰관은 모하메두의 혐의가 고문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그는 말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나가 아니라.") 기소를 거부한다. 반면 모하메두의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 역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 중 낸시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6년간 초법에 의해 강제로 수감된 모하메두를 변호한다. "난 그를 변호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법도 변호하는 거다." 이에 비해 동료 테리는 처음에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한다. 그 때문에 고문에 의해 조작된 그의 진술서를 보고 테러범을 변호할 수 없다며 사건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모하메두의 다이어리를 읽고 다시 합류한다. <모리타니안>은 이렇게 모하메두를 둘러싼 두 입장, 네 개의 시선이 서로 뒤엉키면서 서사가 진행되며 이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을 훌륭하게 비켜간다.

소재가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 자체로만 한정하자면 늦어도 너무 뒤늦게 731부대 사건을 불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은 호명에 그치지 않는다. <스파이의 아내>는 나치의 아우슈비츠와 비견되는 그 사건을 불러내면서도 희미한 그림자로 불러낸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달까.

여기 일본인이기보다는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하는 한 사내가 있다. 그는 코스모폴리탄적 존재를 악마화하고 오로지 일본국민-되기를 강제하던 1940년대의 상황에서도 자신은 변함없이 코스모폴리탄으로 살아갈 것임을 때로는 냉소적으로, 또 때로는 호방하게 선언하곤 한다. 그러던 중 사업차 만주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731부대의 만행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비-국민이 아니라 스파이라는 반-국민이 되기로 한다. 그의 곁에는 애오라지 그만을 바라보고, 다만 그와의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만주국에서 돌아온 그가 변화했음을 감지한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부인하고 예전의 그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731부대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스파이가 된 그를 인정한다. 아니, 인정을 넘어 동조한다. 한데, 스파이인 그는 아내의 만류도, 아내의 동조도 흔쾌하지는 않다.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아내가 그의 결단을 만류할 때는 그로 인해 사랑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내가 그를 따르기로 할 때는 그 모험 때문에 아내가 위험에 빠질 것이 걱정이다. 그는 아내를 속이기로 하고, 결국 아내를 두 번 속인다. 한번은 스파이가 아닌 척, 다른 한번은 아내와 같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는 아내와 함께 두 개의 서로 다른 판본의 영화를 만든다. 하나는 아내를 주인공으로 한 비련의 사랑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필름에 731부대의 만행을 덧붙인 판본. 결국 그는 아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번째 판본의 영화를 그녀에게 주고 잡히게 하고, 자신은 두 번째 판본을 들고 미국으로 떠나 성공적으로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을 알린다. 이처럼 <스파이의 아내>는 스파이인 그가 그의 아내를 두 번 속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니와,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은 몇 장의 사진으로 뿐옇게 제시된다. 80년만의 귀환인데, 게다가 아우슈비츠에 비견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정도인 것이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까닭이다.

하지만 <스파이의 아내>의 이 뒤늦고도 빛바랜 듯 뿐연 귀환은 현재의 일본적 상황을 비추어보자면 엄청난 결단의 결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스파이의 아내>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그렇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반하지 않게,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최근 일본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알고 있지 않은가. 최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자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고한 권력의지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폐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일본은 1940년대의 그 군국주의적 상황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파이의



아내>의 뒤늦은 귀환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적 퇴행과 맞서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사와 기요시 김독은 <스파이의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름의 각오’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스파이의 아내>가 놓인 자리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스파이의 아내>가, <모리타니안>과 비교해보자면, 731부대의 실체적 진실을 너무 완곡하게 불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용기’로 어렵게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되덮으려는 국가-기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은 열렬한 환호와 환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거니와, 굳이 이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먼 시기 여러 공간을 돌아 도착한 장면들은 그 동안 상징질서로부터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집요한 억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뒤늦게 도착한 사건 거의 대부분은 상징적 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실제화된 사건들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뒤늦게, 그것도 너무 오래 전의 것을 뒤늦게 불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견고한 상징질서의 덮개를 걷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터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세 편의 영화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이의 아내>는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기보다는 상징질서의 견고한 억압을 뚫고 이제야 비로소 도착한 실제적 진리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무엇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각자의 탈-존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차의 상징질서를 향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뿐어낸 진리의 빛을 자기화, 내면화하여 그 진리의 길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한 줌의 강렬한 불빛을 비쳐준 이들 작품을 열렬히 환대하고 뜨겁게 응원하는 일.

멋지다, <스파이의 아내>. 환영한다, <모리타니안>. 고맙다, <세 자매>.

3.

‘채식 아침’과 대지의 발견;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두 가지 길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를 읽었다. 『우리가 날씨다』는 현재 지구가 처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 책이다. 그런데 책 제목을 ‘우리가 날씨다’라고 붙여 놓았다. 부제도 흥미롭다. ‘아침식사로 지구 구하기’. 인류가 지구의 생태환경에 불가역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있음을 적시한 인류세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나가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 가고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모두가 이런 위

기를 모른 체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충분히 계산된 제목이고 부제다 싶었다.

사실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지구가 심각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지구 전체의 생명이, 그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부터 그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들어 알고는 있으나 체감하지는 못한다. 아니면 잘 모르면서 알은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면 충분히 알지만 다들 태연하게 사는데 혼자서만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계산적, 냉소적 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지구가’ 하는 마음 때문이거나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보 차원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당장 우리 눈앞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물론 현재 지구가 처해 있는 생태적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더 두려워하는 상황은 이 비대칭 상태,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지구와 인간 모두의 무감 혹은 무책임 사이의 어마무시한 시차^{時差, 視差}다. 당연히 그는 이 시차를 줄일 묘책 마련에 모든 에너지를 쏟거니와, 그 묘책을 담은 책이『우리가 날씨다』이다.

『우리가 날씨다』는 먼저 ‘우리가 날씨다’라고 선언한다. 날씨야말로 인간을 포함 전지구의 생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인데 그 날씨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라는 것이다. 날씨와 인간은 한 몸이다. 굳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빌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문명이다. 만약 기후 위기가 어떤 임계선을 넘어 지구의 생명체 전체가 죽어 나간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인간은 자신의 묘혈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가 날씨다』는 ‘우리가 날씨다’라는 선언으로 그것을 명확히 한다.

지구를 파괴할 존재는 우리뿐이다. 지구를 구할 존재도 우리뿐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희망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쓸어버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닥치면 지구상의 생명을 다시 살려 낼 방법도 찾은 것이다. 우리가 홍수이고 방주이다.²⁾

하지만 『우리가 날씨다』에는 임박한 파국적 상황에 대한 경고와 우리의 태도 전환에 대한 막연한 촉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을 덮고 그것을 발판 삼아 ‘눈이 부시게 푸르른’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알려준다. 그런데 그 길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와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날씨다』는 ‘아침식사



2) 조너선 사프란 포어,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다』, 민음사, 2020, 230면.

로 지구 구하기’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감지할 수 있듯 그 일이 의외로 간단다고 말한다. ‘아침식사만 바꾸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조너선 샤프란 포어는, 그가 이전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에서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밝힌 것처럼 오늘날 지구 파괴,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을 축산업에서 찾는다.

- 2018년, 미국에서 식용 동물의 99퍼센트는 공장식 농장에서 키워진다.
- 인간은 해마다 650억 마리의 닭을 먹는다.
- 1960년 공장식 축산이 시작되고 1999년까지, 메탄의 농도는 지난 2000년 중 어느 시기의 40년과 비교해도 여섯 배 더 빨리 증가했다.
- 벌목의 약 80퍼센트는 목초와 방목에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다.
- 아마존 벌목의 91퍼센트는 축산업 때문이다.
- 개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채식 위주로 먹기, 비행기 여행 피하기, 차 없이 살기, 아이 적게 낳기.
- 위의 네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질소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뿐이다.
- 누구나 식사는 곧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구에 대한 걱정을 행동으로 당장 옮길 수 있다.
- 아침 점심으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세 끼 모두 채식으로 하는 식단의 평균보다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더 줄일 수 있다.³⁾

화석연료의 한도를 정하여 기후변화를 되돌리기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53조 달러의 비용에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때 쯤이면 기후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겁니다. 이와 달리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동시에 땅을 비워서 더 많은 나무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 중 탄소 초과분을 가둘 수 있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기후변화를 되돌릴 유일한 실용적 방법인 것 같습니다.⁴⁾

『우리가 날씨다』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의 양식으로 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이 문제다. 동물 사료를 위해 어마어마한 농토가 점유되고, 지구의 심장이라 하는 아마존이 나날이 사막화되어 간다. 이처럼 동물성 식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그것도 ‘식습관을 포기하거나 지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그러므로 지구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일이

3) 위의 책, 2장 ‘어떻게 하면 대멸종을 막을 수 있을까’의 여기저기.

4) 위의 책, 284면.

다. 그러나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점심) 식사’만 채식이어도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날씨다는 이처럼 머지 않아 직면할 위기적 상황을 경고하는 한편 그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벗어 날 실질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강령이 뜻밖에도 간단하다. 만약 이 정도인데도 망설인다면, 그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이거나 브루노 라투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만을 피신시키기 시작’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가 생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흔히 ‘네트워크의 군주’로 불리는 브루노 라투르의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하 『착륙』으로 약칭함)은 생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역사철학의 정립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착륙』은 우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세 가지 현상을 각각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착륙』에서 주목한 세 가지 현상은 다름아닌 신자유주의 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제 자체를 부정하는 체계적인 시도)이다. 『착륙』은 이 ‘세 현상을 동일한 역사적 상황의 증상’이라고 파악하고, 그 증상이 ‘핵심지배계층이 지구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번영할 세계, 그 공동의 지평선을 향해 역사가 나아갈 거라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만 피신시키기 시작⁵⁾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착륙』은 이 증상이 단지 오늘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포퓰리즘의 발흥’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근대주의의 폐허’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착륙』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를 단순히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의 ‘근대주의의 폐허’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파악하고, 근대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18세기 이후의 상징질서를 해체하고 보다 고차의 질서를 구성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착륙』에서 그가 제시하는 방법 역시 이제까지 그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비근대적 계몽주의의 실현이고 객체들의 민주주의다. 브루노 라투르는 『착륙』 이전 여러 저작,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인류의 한 역사적 단계를 결정지은 근대성의 원리가 이중의 교묘한 자기 합리화 혹은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사실과 가치, 대상과 주체의 분할과 이에 비대한 대칭적 태도를 통해 문화와 자연 사이의 다양한 매개체와 정치적 행위자를 배제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동시에 이 비대칭성이 전근대인(과거)과 근대인(현재), 그리고 근대 문명 외부의 ‘그들’과 ‘우리 근대인’ 사이에도 강력한 형태로



5) 브루노 라투르,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름, 2021, 17~18면.

관철되었음을 지적한 비⁶⁾도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근대는 근대가 명분으로 내건 것과는 전혀 불완전한 형태로, 폭력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 전체가 각 지역에서 쌓아온 민속지적 지혜와 혜안들이 이름뿐인 근대성의 원리에 의해 정화의 명분으로 폐기되었다고 진단한다. 브뤼노는 줄곧 이러한 근대성의 비대칭적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비근대적 계몽주의로의 전회를 주장해왔던바,『착륙』에서도 이러한 그의 일관된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브뤼노 라투르는 최근 브라이언트가 정리한 것처럼 비근대적 계몽주의로의 전회를 위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그 길로 제시하는바,『착륙』에는 그 객체들의 민주주의의 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브루노 라투르는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결정하고 있는 소위 우리의 근대주의가 문화와 자연,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혹은 인간 주체와 비인간 객체 사이의 견고한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런 근대성론으로 인해 인간은 그 다양하고 무수한 객체들과 준객체들을 배제한 채 세계를 단지 인간에-대한-세계로만 규정함으로써 비인간 객체들의 존재 자체를 도외시하게 되었다고 줄곧 말해온 이다. 그런데『착륙』에 이르러 브뤼노 라투르는 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착륙』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체계적인 시도) 등 근대성의 논리가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트럼프식의 자멸적 포퓰리즘("우리 미국인은 당신들과 같은 지구에 있지 않아. 너희들의 지구는 위협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구는 괜찮아!")이 열렬한 환호를 받는 상황을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당장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구와 충돌하며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나 할까.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착륙』은 '대지'라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착륙』에 따르면 오늘날 대지라는 정치적 행위자는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단순한 틀이 정도가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이며, 인간 이외의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만들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대지 속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대지의 것'의 거주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방어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늑대에게도, 삼림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가족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모두 유효하다. 그런 목록을 만드는 일은 확실히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생산 프로세스와 생성 프로세스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산 시스템에서는 목록을 만들

6) 브뤼노 라투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가 지적한 근대성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홍철기, 「옮긴이 후기」(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참조.

기 쉽다. 투입된 노동자와 자원을 고려하면 된다. 생성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매개자, 활성체, 행위자 모두가 고유의 궤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이 훨씬 더 어렵다. ……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찾아서 계급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지의 것’인 당신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쓰는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가? 생존을 위해 누가 당신에게 의존하는가? 누구를 상대로 투쟁해야만 하는가? 매개자의 중요도를 어떻게 순위 매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⁷⁾

원칙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상태에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는 근대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우리 인간 때문에 대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봄아하고, 대지의 온갖 사물들이 원하는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통일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 일은 이제 미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을 미루면 착륙이 경고하는 대로 우리는 지구와 충돌하여 난파하여 거처를 잃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4.

‘먼저 나눠주기’와 ‘노나메기’ 혹은 기본소득의 전사前史

소위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언제나처럼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지만, 이상한 선거였고 혼쾌하지 않은 선거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불완전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주거안정정책 때문에 순식간에 주거가 불안정해진 이들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을 소리 높여 비판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리고 그들 중 적은 않은 이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기로 한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러나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집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집값이 폭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소위 ‘영끌’의 모험을 감행한 것도 납득할 만했다. 여기까진 있을 법한 일이었다. 한데 상황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집값이 들썩이자 소위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들이 다시 ‘영끌’을 시작했고 이 폭발적인 가수요는 몇몇 이들에게 벼락같은 이익을 안겨주었고, 그러자 어!, 하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된 이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 분노는 한 갈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벼락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7) 브뤼노 라투르, 『착륙』 134~135면.

상실감에 기반한 분노일 수도 있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주거안정대책 때문에 갑자기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분노 중 정치권은 전자의 분노에 집중,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올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한쪽은 어정쩡했고, 한쪽은 노골적이었다. 노골적인 한쪽은 심지어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선거는 노골적인 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 노골적인 쪽은 그 여세를 몰아 집으로 부자가 된 이들이 어떤 불편과 불리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니 앞으로 계속 집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이어가 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중이다. 진 쪽도 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은 완전 실종되고 누가누가 더 우리들의 화수분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인지를 놓고 처절한 쟁투를 벌인 선거였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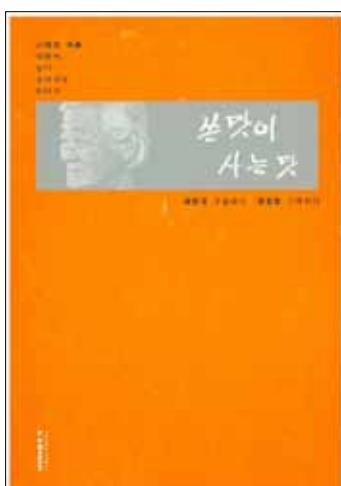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작고 확실한 행복’ 혹은 ‘작으나 확실한 행복’에 관심을 갖던 때. 그것을 삶의 바람직한 자세 혹은 윤리로 서로 응원하던 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소확행’이란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다가온다. ‘소확행’의 시대는 가고 ‘영끌’의 시대가 온 듯하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최근 이렇게 노골적인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 사표가 될 만한 두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바로 채현국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다. 두 분은 모두 브뤼노 라투르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이 편안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에서도 지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척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지배계급과 한평생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저항했던 분들이고, 이 탐욕의 세상에서 ‘소확행’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을 한 틀이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분들이다.

자기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딨나?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내가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야 해. 그것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⁸⁾

나누어 먹기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돈 혹은 성과물을) 조금 늦게 나누어줍니다. 남들보다 앞에 나누어주면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줍니다. 바로 그걸 했던 겁니다. 좀 힘들 때 먼저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벌어줍니다. …… 나누먹기를 잘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⁹⁾

채현국 선생의 말이다. 재산은 세상 것이므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하고, 나누는 것도 나중에 보상하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나누어주면 그가 속한 곳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채현국 선생을 두고 앞서 기본소득의



8) 채현국·정운현,『쓰 맛이 사는 맛』, 비아북, 2015, 42면.

9) 위의 책, 48면.

정신을 실천한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니 참된 하제란 무엇이겠어요. 남을 시켜만 먹으려 들면 그건 참짜 하제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도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살아야 그게 참짜 하제지요. 무슨 말이냐, 잘살되 나부터 잘살겠다고 하면 그건 남이 훌린 피눈물의 땀을 내가 뺏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부터라는 뜻속(욕심)을 찢어 팽개치는 참된 깨우침으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만 잘살겠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 누름(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만 잘살아보자고 하면 이 누름, 이 아름다운 누리(우주)까지를 모두 째코라뜨리게(망치게) 됩니다. 셋째, 사람의 몸을 된깔(본질)의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깜빡 깨어났다가도 깜짝 잊고 마는 깜딱(나밖에 없다는 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는 목숨(생명)으로 다른 모든 목숨을 다 내쳐버리는 그 못된 된깔입니다.

어떻게 제 목숨만 목숨입니까. 다른 모든 목숨도 목숨이지. 그러니까 그런 몸을 된깔일랑은 그대로 찢어 팽개치고는 참목숨, 다시 말하면 목숨 아닌 댄목숨(반 생명)과 싸워 트운 참목숨인 살티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무엇이겠냐구요. 그게 바로 노나메기입니다.¹⁰⁾

백기완 선생의『버선발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백기완 선생은 한평생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며 사셨던 이다. 백기완 선생의 ‘노나메기 세상’이란, 거칠게 정리하자면,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서 만들어진 모두의 땀을 모두에게 나누는 세상일 것이다. 그를 통해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살며’ ‘누름(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백기완 선생은 이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항상 ‘앞서서 나가’셨던 이다. 앞서서 나가는 것으로 모두를 산 자로 이끌었던 분이며, 폭력 앞에 동요할 때 용기를 잃지 않게 하던 분이다.

돌이켜보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백기완-키드인 듯하다. 나는 페미니즘을 백기완 선생의『자주 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통해 배웠다. 내가 지금 여성에게서 오히려 탈-존적 주체일 가능성을 훨씬 더 자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백기완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역사의 현장에 한 순간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던 것 또한 백기완 선생의 이 글에 따른 것이다. 나는 선생에게서 어떤 순간이라도,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일어서는 용기를 이어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 덕분에 ‘욕처럼 남은 목숨’을 부끄러워하며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나를 기본소득으로 이끈 것 또한 선생인 듯하다. 다시 보니



10) 백기완,『버선발 이야기』, 오마이북, 2019, 268~269면.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기본소득 세상과 ‘노나메기’ 세상이 거의 같다.

끌으로 확고한 용기와 결단으로 앞서서 나가서 세상을 보다 높은 지점을 이끈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 원컨대, 나에게도 용기가 생겨 앞서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작년 8월부터 여러 학술저널 또는 문학저널들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호(특집호)를 발간하였다.『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2020년 8월) - 곽노완, 권정임, 금민/김창근, 김공희, 『문학들』 제61호(2020년 9월) - 류보선, 양선형, 이다희, 임정균, 『창작과 비평』 제189호(제48권 제3호)(2020년 9월) - 김현우, 양재진, 윤홍식, 이일영, 『동향과 전망』 110호(2020년 10월) - 유종성/양재진 & 이일영, 전승훈,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2020년 10월) - 안효상, 서정희/제갈현숙),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8호(2020년 12월) - 백승호/양재진, 임운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들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의 발현에 중요한 요소이자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구별하는 데(또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사고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충분성에 관한 교훈,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본다.¹⁾

1)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나 쟁점을 평가한 이전의 글들로는 강남훈(2010), 백승호, 이승윤(2018), 이건민(2020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해외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1.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핵심요소를 이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의 충족으로만 보는 입장(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위험과 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위험에 처한 계층 또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부터 무위험계 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사회의 자원과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본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과연 그러할까? 달리 보아야 한다. 첫째, 위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만을 일면적으로 볼 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여(부담)’는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기여(부담)’와 ‘지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고소득층·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저자산 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지급’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기여(부담)’ 면에서 위험(필요) 발생과 무관하게 ‘기여능력(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확실히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여(부담)’도 ‘지급’도 전체 사회구성원을 아우른다는 ‘보편성’ 때문에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의 각 개인의 격차를 전 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작동 시킨다. 물론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역시도 위험(필요)의 식별과 인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특정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나 정도는 각 제도의 급여수준과 성숙도, 수급층과 비수급층의 소득분포, 가구구성, 수급률, 사각지대 정도 등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강조 지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따라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²⁾ ‘기여(부담)’와 ‘지급’ 면에서의 ‘보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소득은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됨 없이 소득불평등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율, 지급수준 등 몇 개의 모수들에 대한 정보만 알면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사전적 예측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적인 특성과 독자적인 지향을 갖는 ‘기관 없는 신체’로서 기본소득을 파악하는 것(류보선, 2020)은 물론 여러 심오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자동화된 불평등”(유뱅크스, 2018)이라는 책 제목에 기대어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된 평등”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재진(2020a; 2020b)은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가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위험(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기에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 역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성

2) 이는 맥락에 따라서는 상대적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존 제도들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를 단기 간에 바꾸는 것은 복지정치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외부충격(?)이 기존 제도들에서 요구되었던 내부개혁을 주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6에서 자세히 다룬다.

indiscriminateness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양재진(2020a, p.62)의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³⁾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해온 반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그것들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부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복지의 수혜층과 기여층(부담층)을 날카롭게 나눔으로써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기여를 토대로 하지만, 위험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금 크레딧 제도 등과 같은 요소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에서 잘 드러나듯 이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 곧 기존의 노동 경력과 지위, 소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계층화 효과를 낳는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존의 제도로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꼽을 수 있는데(Esping-Andersen, 1990), 이는 사실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리의 실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호, 2020). 여기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입각하여 전 인구층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백승호, 2020), 당연히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asy, 2018; Mays, 2019).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p.70-7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반대방향으로 보자면, 모두가 모두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기여(부담)’는 능력에 따라 ‘급여’는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는 단지 이론적 예측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 기본소득(관련) 실험들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동체효과들과 신뢰 수준의 향상 등의 실증적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것 이기도 하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마지막으로 김창근(2020)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비판하며, 특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문제시한다. 그는 “물론 모든 사회적 노동은 ‘결합’과 ‘협력’(협업과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업과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협업과 분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러한 협업과 분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업과 분업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기술 덕분이더라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pp.98-99). 또한 “노동가치론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

3)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새로운 보편주의’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8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8 BIEN Congress의 제목은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에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기”였다.

무리 높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자본의 이윤이 양인 이상, 어떤 노동자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각주 15).⁴⁾ 이러한 사고틀을 고수할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까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임금 이론을 이용한 고용지대 주장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를 꾀한 판 파레이스의 시도에 대해 일부 타당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김창근(2020)의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주장이 기본소득론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비판일 수는 없다.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이는 자본,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공통부’(공동부, 공유부)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강남훈, 2019; 금민, 2020a; 2020b; 류승연, 이승훈, 2020), 노동만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론자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강남훈(2019), 금민(2020a; 2020b) 등이 제시한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통부’(공동부, 공유부)에서 찾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급노동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둘째,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은 노동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보선(2020, p. 29)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잉여이윤 거의 전체가 자본가에게 쌓여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몫이 과잉 계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공통의 부가 점점 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종성 외 1인(2020, p. 5) 역시 “오늘날 기여에 따른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지나친 과다보상과 과소보상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무급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고려하면 노동을 조건으로 하고 기여를 측정하여 기여에 따른 분배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와 개인(자기) 책임 논리 역시 문제이다. 김창근(2020, p. 86)은 “고용노동자들의 일자리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일 뿐이고, 자발적 실업자는 아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자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계와 그 구분이 모호하고 허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본주

4)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 틀 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너무 단순한, 통속적인 이해일 수 있다. 사회적 총자본뿐만 아니라 개별 자본의 경우에도, 개별노동자 각각에 대해 많이 착취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총이윤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록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특정 자본은 분할지배전략을 써서 일부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는 그(들)의 기여나 성과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다른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 더 많이 착취 혹은 초과착취를 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 사회에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실업이 만연하고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게다가 마땅한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자발적 실업자’ 역시 단순히 그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타입’ 자체가 ‘자발적 실업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설령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아예 (유급)노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노동의욕이 (거의) 없는 것 역시 온전히 그 사람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이나 환경, 우연 등 의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도모히로, 2019, 5장). 궁극적으로는, 공유부 배당론에 입각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의 개별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은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의 개인 단위 지급을 문제시한다. “그나마 개인 단위에서 보이던 재분배 효과는 가구 단위로 기본소득 수령액을 재환산할 경우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진다. 개인 단위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모두 저소득이나 무소득자로 분류된다. ‘무늬만’ 저/무소득자인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통계적으로는 양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을 가구 단위로 재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재분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p. 66)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의 크기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면 양극화 해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저소득 혹은 무소득으로 나타나는 개인도 사실은 중산층 가구원인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다. 가구원수가 많은 중산층은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보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pp. 66, 68)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0인 b가 생활하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생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⁵⁾ 만약 가구 단위로 1,000만 원씩 세금으로 걷고 7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에도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재분배를 보자면, 기본소득의 형태로 개인 단위로 지급하나 아니면 가구 단위로 지

5) 양재진(2020a)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고소득층 가구 내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에 주목하도록 환기한다. 그러나 그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기여(부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양재진 교수수에 빠져있는 재정적 ‘오해’, ‘환상’ 내지 ‘착시’는 말끔히 제거된다.

급하나 경제적 손익 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가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평등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물론 현실에서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젠더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이나 자원 격차가 불균등함으로써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 가구 단위로 지급되느냐 개인 단위로 지급되느냐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인가는 점이다. 예컨대 A 가구의 경우, 만약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에 거의 비례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무한 반면, 개인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d의 소득이 0에서 연 36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d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관계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 ‘개인 단위’ 지급이 젠더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바로 이것이다(Miller, 2017; Kasy, 2018;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두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없는 b가 살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살며, C 가구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e가 산다고 가정하자. 위의 예와 달라진 유일한 점은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1인 가구인 C 가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1인당 평균 소득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 반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구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A 가구와 B 가구는 280만 원 손해인 반면, 1인 가구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이다.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개인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B 가구에 속한 c와 d, 1인 가구인 C 가구에 속한 e는 정확히 동일하게 각각 140만 원 손해이다.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⁶⁾ scale economies in consumption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연 소득 5천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C 가구(e가 생활), 연 소득 1억 원이며 4인으로 구성된 D 가구(f, g, h, i가 생활하며 f만이 소득을 빈다고 가정), 연 소득 2,500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E 가구(j가 생활)를 비교해보자. 여기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지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채택해보자.⁶⁾ 그러면 C 가구와 D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균등화지수를 활용했을 때 경제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구에 대해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D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같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다. 또한 C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가구원수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40만 원 손해이다. D 가구는 연

6) 물론 ‘가구원수의 제곱근’이 가장 좋은 균등화지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지수라 여기서 선택되었을 뿐이며, 다른 균등화지수를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달라질지언정 아래 논의에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1,44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440만 원 이익이다. E 가구는 연 소득 2,5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110만 원 이익이다. 균등화소득 면에서는 C 가구와 D 가구가 동일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가구원수가 1명으로 적은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인 반면, 가구원수가 4명으로 많은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역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양재진(2020a)의 주장의 여러 논거 중에서 타당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D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C 가구와 A, B 가구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에 정확히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4명인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1명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 C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증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증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증의 경우)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연 소득 5천만 원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연 소득 2,500만 원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⁷⁾

위에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 ②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 ③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하다. ④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증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증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증의 경우). ⑤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러한 특성은 세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는 언제나 성립한다. 물론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의 형태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5가지 사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동일하다”에서 “거의 동일하다”로, “정확히 비례한다”에서 “거의 비례한다”로). 하지만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가 진보적, 개혁적, 해방적인 형태일 경우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사실의 기본적인 성질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 양재진(2020a, p.66과 표 1)은 LAB2050 연구보고서(이원재 외, 2019)에서 제시한 ‘월 30만 원 국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 형태별 손익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LAB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이 기본소득 일반을 결코 대표할 수 없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도입한 소득재분배 효과 방법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건민(2019)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참조). 다음으로 LAB2050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관한 양재진 교수의 평가에 대해서 재 평가해보자. 경제적 이익이 큰 순으로 총 5가지 가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하여 ‘연소득 1억 원 4인 가구(외벌이)’는 연 352만 6,000원 이익, ‘연소득 9,000만 원 3인 가구(맞벌이)’는 연 314만 2,000원 이익,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연 168만 4,000원 이익,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손해도 이익도 없음,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41만 원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액수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대체된다는 가정’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전혀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609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77만 4,000원 이익으로,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720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20만 원 이익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두 가구의 경제적 이익은 각각 1위와 2위로 올라서며 3위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마치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가구 단위로 볼 때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미약해진다거나 심지어 역진적이라고 보는 양재진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의 논의는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적으며 고소득 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혹자는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액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래의 이유로 (비록 연령 범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액 면에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둘째, 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의 이슈에서 개인 단위로 균등 지급하는 것이 낫다. 가구원수는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Miller, 2017). 셋째, 기본소득은 진공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그리고/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마저 가구 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본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니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늘리는 방식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생태·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부적절하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1인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인 이상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많다(김민경, 남현정, 정명구, 2020)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낳는 제도라는 점에서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보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다른 속성들과 결합하여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기획이 되게끔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현금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기본소득의 현금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 pp. 68-71)은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은 오·남용되기 쉽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성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

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해 하나씩 반비판해보자.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수급자들이 현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전 세계 실험들과 브레흐만(2017) 등에서 잘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어느 사회에서나 현금을 오·남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기본소득의 현금성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현금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공적연금,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그것들의 현금성을 문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이건민, 2017). “모두의 뜻을 모두에게”(금민, 2020b) 돌려주는 정당한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0). “코르피와 팔메가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며,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진영, 김윤영(2015)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음을, 즉 어느 하나의 증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하나의 증가를 견인하는 관계Granger causality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건민,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이건민, 2020b, p.110).

세 번째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을 한 축으로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을 다른 한 축으로 할 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남유럽보다도 훨씬 더 치우친 현금급여 중심 복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윤홍식(2017)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 제기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정태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잘못 이해할 경우, 마치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복지체제가 남유럽형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는 그릇된 인상이나 인식에 빠질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에 속한 제도들이 하나가 아니듯, 현금급여에 속하는 제도들도 하나가 아니다. 여기서 ‘GDP 대비 현금급여의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의 구성’이 중요하다. 남유럽형 복지체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중이 큰 복지체제로,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효과가

큰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도 사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도 향상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기서 개별 제도나 정책 수준에서의 ‘보편성’이 한 국가의 복지체제 전반의 ‘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김영순, 2012).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폭으로 대체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동반하여 새로운 보편주의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1층으로 튼튼히 쌓아올리는 방안(백승호, 2020; 유종성, 2020)이 보편적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상술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금급여로서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양재진(2020a, 각주 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대로 공유부를 모두가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부의 분배에서 사회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동일하게 받는 형식으로 나누는 것도 시민권으로서 기본소득 배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가 우리 시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논리이기도 하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Coote, 2021).

주요한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무료free at the point of use’여야 한다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공사회서비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는 유보적 또는 적대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Coote, 2021),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최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발전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이해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그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용호자들은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분배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특수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pp. 13, 51).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현금성’이 갖는 장점은 결코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uws, 2020; Standing, 2020). Standing(2020)은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Huws(2020)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젠더평등에 기여하고, 낙인효과, 오류, 시간 지체를 낳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빈곤, 사회연대, 노동, 일자리의 질, 산업구조, 자립과 존엄성,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료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상훈(2020,

pp. 39-40)의 지적 역시 경청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사전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공공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른 특징이다. 사실 짧고 건강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성인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사회복지서비스가 등장한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도와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먼저’ 모두에게 지급된다. 사후적으로 돋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상회복’이 목표다. 물론 이런 공공서비스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 누구라도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학은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제고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소득의 해방적 잠재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양선형(2020)은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과 문학이 동떨어져 있고 작업자의 가난이란 불가피하다는식의 인식은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책임과 부채를 온전히 떠맡”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적 진전을 가로막는 회피의 수사로 활용된다”는 그의 지적(pp. 62-63)과 “문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현재의 제도에 타성적으로 귀속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위치에 걸맞는 책임, 제도적인 진전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p. 64)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의 지적과 요구는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4일만에 거의 다 써 버린 경험과 관련하여 이다희(20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일 동안 나를 둘러싼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나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상냥한 미소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첫 시집 발간을 앞두고 그 무게감에 한껏 예민해져있었지만, 4일 동안은 예민한 내 마음이 조금 견딜 만하다고 느껴졌다. 소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음에도 모든 소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나에게 그 4일은 묘한 진공 상태로 느껴졌다”(p. 68).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우리는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단기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의 모습을 통해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 각자의 생활에 얼마나 경이로운 전환이 찾아올지를 자연스레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정균(2020)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복지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특정 이념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복지정책이나, 정책의 기조, 주장들은 결국 나의 생활 조건에 유리한 것들임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분배, 그것이 정의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한다(p. 76). 또한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이걸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ur}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보편적 복지가 행해지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일이든 좋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p. 77). 필자는 이에 크게 공감하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국가의상을 7에서 짧게나마 제시해보았다.

류보선(2020)은 기본소득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개인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만들어 낸 것 중 상당 부분까지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분배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며(pp. 28-29), 기본소득이 “나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나서”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독자적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는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p. 32). 그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해타산적이고 냉소적인 현존재들의 심상과 ‘구별 짓기’라는 통치성의 원리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설령 현실에서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논리와 원리에 기반한 실천들과 구조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변화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도 이해하고 있다(pp. 34-35). 그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또는 크게) 보인다고 해서 바람직한 변화와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현실주의와 냉소주의, 불간섭주의와 대기주의에 빠져 ‘신중한 무위’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실패이며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류보선(2020, p. 36)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기본소득은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 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구체화, 현실화시키려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절 혹은 전회가 없을 경우 지구 전체가 직면할 재난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응시와 정의로운 분배가 가져올 전미래에 대한 명랑한 전망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지젝은 “역설적이지만 재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예방행동(‘선제공격’)의 발상을 과감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참된 행위는 그에 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한 상황 속의 전략적 개입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참된 행위가 지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비록 기본소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 참된 행위의 반복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세상을 도래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기본소득의 정기성에 관한 교훈

이일영(2020)은 김종철(2017; 2020)의 영향을 받아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산”으로 재정의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본자산은 자원의 탕진을 막고 사회적 상속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주거, 교육, 토지(농지) 등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p. 143)고 보며, 그 세부방안으로 청년 주거 기본자산제, 청년 갑이어 제도,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가 제안하는 ‘청년 기본자산제’가, 그리고 기본자산제 일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기본자산제’는 기본소득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힘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의 범위,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의 범위,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의 범위 모두에서 그러하다.『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알바레도 외, 2018)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증가(공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a).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에서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고른 재분배를 꾀하고자 하는 기본자산과 같은 기획보다는 사회 전체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기획(기본소득; 특히나 공통부기금 조성이나 공유지분권 설정과 결합한 기본소득)이 자산과 소득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b). 기본자산론자들은 자산재분배 효과를 기본자산의 커다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본자산은 민간자산 대비 공공자산의 비중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부문 내에서 자산을 재분배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자산제를 통한 자산재분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자산으로 지급되는 지급액 수준이 낮거나 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 방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

둘째, 현재 청년 문제의 해결법을 청년들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이 지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청년 기본자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한 농업, 자영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등 소 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도모”(이일영, 2020, p.143)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실업 및 니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변화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시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지원의 탕진을 막기 위해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만, 그것도 특정 용처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부장적이며 기본자산 주창자들이 강조하는 ‘거시 자유macro-freedom’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애커만, 알스토, 2010). 현 시점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나 정책결정자들이 아니라 바로 개인 스스로가 가장 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용처 제한은 돌봄, 희귀·난치 질환 치료 등 개인에 따라서는 현재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서정희, 2021). 또한 ‘생산적 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고이율 악성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의 가능성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청년의 경우 용처 제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보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즉 용처 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본자산을 이용하여 당장에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갚음으로써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었을 고율의 부채를 짊어진 어떤 개인의 경우, 용처 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부채 부담을 떠안은 채 생활해야만 한다.

넷째, ‘생산적 활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허위적일 뿐더러,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구분한 후 전자만을 허용하면서 특권화하는 방식은 생산주의와 성장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기 쉽다. 그리고 생산주의와 성장주의의 이러한 고수는 현재의 극심한 노동, 생태, 젠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과는 달리 기본자산제의 구상에서는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

태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기획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물론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가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의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생태세-생태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농민기본소득’(농업참여소득), 생태적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진영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섯째, 기본자산제(기본자산제도의 일반적 형태이든, 김종철(2017; 2020), 이일영(2020) 식의 변형된 형태이든)는 지분이 소진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서정희, 2021).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본자산제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자산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은 최초 도입 시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생계 영위에 충분한 액수의 완전기본소득이 되어야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할 때 이론 바 ‘기본소득의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란 “기본소득은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Groot, 2004). 즉 너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너무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공급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건민, 2017).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는 부분기본소득과 완전기본소득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본소득 전체를 비판하거나 기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다.

처음부터 충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따라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기본소득도 기본소득과 정합적인 다른 제도들과 함께 할 때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승호(2020, 표 2)는 2020년 기준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월 3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많은 논자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을 기술의 발전과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위치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양재진, 2020a, pp. 71-74; 임운택, 2020, pp. 86-90; 제갈현숙, 2020, pp. 145-147).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일

<표>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2020년 기준)

	현행 소득보장제도(A)	A+30만 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인)	월 52만 원	월 52~82만 원
(2인)	월 90만 원	월 90~120만 원
(3인)	월 116만 원	월 116~146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월 30~6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40만 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없음	월 50~8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30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연간 150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연간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연간 300만 원	연간 360~510만 원 연간 360~620만 원 연간 360~660만 원
실업급여	정규직 월 평균 198만 원(210일) 비정규직 월 평균 180만 원(150일)	정규직 월 228(198+30)만 원 비정규직 월 210(180+30)만 원

출처: 백승호(2020, 표 2)

차적인 논리는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금민, 2020b; Standing, 2017, Ch.9; 2020). 기본소득은 사회적 상속의 원리에 따른 커먼즈 배당으로서, 커먼즈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뜻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금민, 2020b; Standing, 2020). 또한 기본소득은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해서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사회정의 원칙, 곧 보장차등 원칙,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 생태적 제약 원칙, 존엄한 일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Standing, 2017, Ch.9).

둘째, 기본소득은 결코 기술진보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진보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기술진보의 성과 중 모두의 기여 혹은 뜻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자는 기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해왔던 방식, 즉 그것의 성과는 전혀 분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 훈련 등에서 가부장적인 개입으로 일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훈련, 역량 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투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탈노동사회에서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탈노동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 등의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 감싸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서 기본소득을 사고할 것을 주문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정의에서 발견됨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탈노동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인 지금 여기에서도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노동, 생태,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Desai and Palermo, 2019; Gilbert, Huws and Yi, 2019; Howard, Pinto and Schachtschneider, 2019; Mays, 2019;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Huws, 2020; Standing,

2020). 아울러 최소소비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리라고 볼 수 없음은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2008~2009년 나미비아 실험, 2012~2014년 인도 실험, 2017~2018년 핀란드 실험,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사례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 세계 실험이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Haarmann et al, 2009; Dvala et al., 2015; Jones and Marinescu, 2018; Yi, 2018; Gilbert, Huws and Yi, 2019; Kela, 2020). 더군다나 노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특히나 개인적으로/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보람 있거나 바람직한 노동의 경우),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인정과 소속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화폐적 보상, 삶의 의미와 재미, 흥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본성 등을 감안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공급을 (크게) 줄이지 않을지 모른다(Gilbert, Huws and Yi, 2019).

진형익, 이미숙(2020)이 제시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에 조응한다. 이들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총 905명의 응답자료를 확보했다. 설문문항 중에는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형익, 이미숙(2020: 그림 5)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1.2%, 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 월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인 경우 7.2%, 월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인 경우 13.8%, 월 200만 원~25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월 250만 원~300만 원 미만인 경우 9.6%, 월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1.5%가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28.4%는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in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지)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ex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들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 1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약 4%의 사람들만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른 노동공급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총량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좋은 노동,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고 증가시키는 반면, 열악한 노동,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으나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외재적 동기를 갖는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며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이건민, 2020b, pp. 114-115). 이를 감안할 때,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거나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라는식의 주장은 “(유급)노동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며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에 대해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5).

끝으로, 비록 기본소득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총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 70)은 기본소득

의 충분성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또 다른 특징인 ‘충분성’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처음부터 충분한 액수를 고집하면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그 장점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6. 부분으로 전체를 흔드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존 제도들의 ‘정명’ 개혁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할 이유

윤형중(2021)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환상일 뿐이며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도 단지 순수혜택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최한수 교수의 칼럼(2021)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제를 잊은 채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보고 비판하는 식의 기본소득 찬반 논쟁도 보다 진회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론·반대론을 제기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부분이나 지엽적인 것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첫째, 양재진(2020a; 2020b)과 제갈현숙(2020, pp. 135, 139, 143, 147)은 기본소득이 ‘균등급여’ 이므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균등급여’만으로 기본소득을 특징짓는 것은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바라본 것이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례적 또는 누진적 과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의 대안일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으로 측정되므로, ‘균등급여’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건민, 2020a).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튼튼한 1층으로 얹는 방식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줄이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유력한 방안이다(백승호, 2020).

둘째,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는/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이나 개혁 중 일부분에만 주목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방식이 발견된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제갈현숙(2020, pp. 138-139)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이 대체되는 방안을 문제시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논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뿐이다.⁸⁾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가로막힌다.

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생계급여 및 국

8) 비록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 문제(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증가하더라도 전혀 대체하지 않을 것이나,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대체할 것이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연금의 A값 대체 등을 제안했던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서 기존 제도의 ‘정명’ 개혁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완전고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도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Atkinson(1996) 등에 의해 적실히 지적된 바 있다.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보장제도, 사회,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빈곤의 덫, 실업의 덫, 복지의 덫, 불안정성의 덫, 불확실성의 덫, 저축의 덫, 별거의 덫 등에 빠진 수급자 및 수급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⁹⁾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에 따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이른바 복지국가(자본주의) 황금기에서 그려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주’가 아니라 ‘부’가 되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제도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선별과정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할당 대상의 범위와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잔여주의적 속성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제갈현숙(2020, p. 144)의 주장은 그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의 공공부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에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서 1층의 기본소득 바로 위에 위치하는 2층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백승호, 2020; 유종성, 2020)과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은 원래의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대 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비가 1이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구상(유종성, 2020)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각 제도의 ‘정명’을 찾으면서도 빈곤과 불평등,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층의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2층의 소득보험은 기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산층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의 자신의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 욕구 충족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1층의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소득과 함께 1층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1, 2층이 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응당 이와 더불어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백승호, 2020).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A값을 대체하겠다는 구상(김교성 외, 2017) 역시 이러한 전체 그림 하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A값 대체 그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여 기간이 적음으로써 국민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적 성격의 강화 및 수익비 1로의 개혁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보

9)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정훈(2020)을 보라.

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방식이 발견된다. 전승훈(2020)은 안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증세 방안, 비과세 감면 정비,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한 후, 단기간에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그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실제로는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승훈, 2020, pp. 153-154). 하지만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방안에 대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는 그 자체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뿐더러,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원 마련의 불가능성을 논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이 발견된다(전승훈, 2020, pp. 153-159).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정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표된 국방 증기 계획”,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전승훈, 2020, p. 153). 하지만 비록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에 걸쳐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재정지출구조 개혁만으로 GDP의 5%에 상당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유종성, 2020, p. 98; 2021, p. 15). 소득세 증세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고, 과표 구간 수도 적은 편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증세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전승훈, 2020, p. 157). 또한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증세” 역시도 “전체 근로소득자 중 40% 이상이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근로 소득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전승훈, 2020, p.158). 이러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금하는 방안(강남훈, 2019; 유종성, 2020; 2021)은 면세구간 없이, 개인소득 중에서 누락되는 소득원천 없이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율 증가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될 경우 소득이 낮은 개인들과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기본소득 재원 모델을 하나 이상 제시하는 것일 테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강남훈(2019)과 유종성(2020; 2021)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구멍 나거나 낡거나 닳은 부분을 덧대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며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김공회(2020)나 양재진(2020a; 2020b) 식의 시각은 현존하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를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도 바람직한 형태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우리가 개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놓고 기본소득과 비교할 경우에는, 양재진(2020a, p.66)과 같이 “ $1/n$ 로 모두 나누어 갖는 기본소득보다, 복지급여가 훨씬 후하”며 “복지급여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결코 일반화하여 용감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기각은 반례 하나만을 들면 충분하다. 유종성(2020)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뿐더러 기본소득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등의 개혁 없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Yi(2020)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 tax and transfer system의 지니계수 개선율과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을 이를 수 있는 정률소득세-기본 소득 정책 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에서 요구되는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더 낮음을 보인 바 있다. 다음으로 개별 제도 차원에서 향후 미래 전망을 해보더라도, 유종성(2020)의 지적과 같이 현존하는 사회보험은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성과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사회부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급층과 비수급층으로 이분화되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정치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¹⁰⁾ 게다가 수급 기준선 직전과 직후의 소득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의 발생 가능성(유종성, 2020; Yi, 2020)으로 인하여 양재진(2020a; 2020b)이 사고하는 방식의 ‘두터운 지원’이 애초에 불가능 할뿐더러, 소득역전 현상을 용인할 경우에조차 구직노력, (더 오랜 시간의) 노동참여 등 여러 가지 ‘조건성’이 따라붙기 마련이다(Yi,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사회수당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단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 완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 대한 김공회(2020)의 시각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김공회(2020)는 삶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전면에 부상해왔으나 자본주의는 ‘임노동의 전면화’로,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응해왔음을 환기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 투쟁의 장’으로서 복지국가는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등 삶의 재생산 전 영역에 걸쳐서 사고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전소득’에 국한되며 이에 대해서만 사고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을 ‘공적 현금이전’에 국한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현존하는 ‘공적 이전소득’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모두의 변화를 겨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 자체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고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 생태, 젠더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삶의

10)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에서 양재진(2020a; 2020b)은 ‘행정’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만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요소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복과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언급에서 그나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은 공적 현금이전에 속한다’뿐이며, 결국 당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굳이 언급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장만이 남는 셈이다.

양재진(2020)과 김공희(2020)는 모두 복지국가가 ‘무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기 이래로 규제 완화, 노동 및 사회 보호 후퇴 등을 통해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는 대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홍민기 외, 2013)이 강화되어온 현실의 조건 하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성을 한층 더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의 필요에 맞게 노동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반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왔으며, 기본소득은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파악 없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의 관계에 관한 임운택(2020)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제갈현숙(2020)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를 대립적/경쟁적/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노동의 권리’ 언급 시 ‘노동’을 ‘임노동’으로 특권화하고 있다. 노동의 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과 비자발적 실업자들,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긴요하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Standing, 2011; 2017;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Kasy, 2018). 기본소득은 ‘노동의 권리’ 보장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는 상호배치된다는 사고,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힘과 권력, 정치에 대한 ‘영합 게임’ zero-sum game에 놓여 있으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사고 등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운택(2020)이나 제갈현숙(2020)과는 반대로, Huws(2020)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가 상호 도움이 되고 함께 해야만 하며 양자 모두가 21세기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훌륭한 시각을 보여준다. 기본 소득에 대한 요구/정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정치는 ‘정합 게임’ positive-sum game이자 동일한 방향으로 상호 강화되는 ‘양의 되먹임’ positive feedback 관계로 사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어떠한 전제도 없이 관철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도대체 누가 수행하는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임운택, 2020, p. 85)는 지적에서는 일종의 부당전제의 오류 내지 역설도 발견된다. 이것이 부당전제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론적, 실증적 증거는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을 ‘임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생태·환경 보전 활동 등의 광의로 정의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역설일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에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또는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게끔 역할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역할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전제, 대우, 가정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 어려워진다”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양재진(2020a; 2020b)의 주장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양재진(2020a, p. 61)은 “원리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를 ‘욕구 충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권리보장의 측면을 도외시한 매우 일면적인 해석일 뿐이다(백승호, 2020). 더불어 기본소득이 OECD의 공공사회지출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¹¹⁾ 무엇보다도 복지의 발달사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필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Van Parjis and Vanderborght, 2017, Ch.3). 특히나 현재의 노동과 생태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나듯, 확률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risk과는 달리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불확실성uncertainty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안효상, 서정희, 2020; Standing, 2020).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새로운 보편주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소득을 튼튼한 기초 위에서 생계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개인들의 삶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에 대한 식별이 선행된 후 권리가 부여되는 식의 ‘상호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을 기대하는 식으로의 전환 말이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듯 부모 등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을 떠올려볼 때 인간의 성장과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국가의 역할도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든 사안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거나 넛지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그럼에도 커버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와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과 관련한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적용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을 일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개인과 공동체에 맡기고, 물

11) 정원호(2021)는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전 지급’의 형태가 아닌 ‘사후 정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주나 월 단위 지급이 아니라 연 단위 지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위스 탄소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예컨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T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위스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며 일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론 그 성격상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가 맡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이나 시장 영역에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참여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 말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 가능성에 대해 미리 불신한 채 국가에서 과도한 역할을 떠맡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미리 불신한 채 기본소득 없이 국가가 모두 잘할 수 있다고 자임할 것이 아니라(일자리보장론은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구상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을 기초로 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시 국가에서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전 사회적인 수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한 이 글이 향후 기본소득 논쟁의 발전과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남훈(2010).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진보평론』45. pp.12~43.
- 강남훈(2019).『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 박종철출판사.
- 금민(2020a).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제문 수정본(2020. 7.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금민(2020b).『모두의 뜻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 김공희(2020).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마르크스주의 연구』17(3). pp.106~131.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민경, 남현정, 정명구(2020).『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서울연 2020-PR-11. 서울: 서울연구원.
- 김영순(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한국정치학회보』46(1). pp.337~358.
- 김종철(2017). “기본자산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동향과 전망』101. pp.106~134.
- 김종철(2020).『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고양: 개마고원.
- 김창근(2020).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친·자본·반·노동적 성격 비판”.『마르크스주의 연구』17(3). pp.71~105.
- 도모히로, 이노우에(2019).『모두를 위한 분배: AI시대의 기본소득』. 김소운 역. 파주: 여문책.
- 류보선(2020). “임박한 파국과 출구 – 혹은, 기본소득과 한국문학의 미래”.『문학들』61. pp.26~58.
- 류승연, 이승훈(2020).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오마이뉴스』. [6월 22일 기사입력]
- 문진영, 김윤영(2015).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 trade-off 연구”.『한국사회복지학』67(4). pp.203~226.
- 박정훈(2020).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오마이뉴스』. [6월 23일 기사입력]
- 백승호, 이승윤(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한국사회정책』25(3). pp.37~71.
- 백승호(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경제와 사회』128. pp.12~56.
- 브레흐만, 뤼트허르(2017).『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안기순 역. 파주: 김영사.

- 서정희(2021).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기본소득론 관점에서 본 기초자산에 대한 고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강은미 의원,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용혜인 의원, 허영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1월 28일]
- 안효상, 서정희(2020).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산업노동연구』 26(3). pp.63~118.
- 알바레도, 파쿤도, 뤼카 상셀,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주크먼(2018).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장경덕 역. 파주: 글향아리.
- 양선형(2020). “No-knowing”. 『문학들』 61. pp.59~66.
- 양재진(2020a).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 『경제와 사회』 128. pp.58~77.
- 양재진(2020b). “전 국민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동향과 전망』 110. pp.26~59.
- 애커만, 브루스, 앤 알스토(2010). “제11장. 거시자유(Macro-Freedom)”.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서울: 나눔의집.
- 유뱅크스, 버지니아(2018). 『자동화된 불평등: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김영선 역. 흥기빈 해제. 서울: 북트리거.
- 유종성 외 1인(2020).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11월 11일 version]
- 유종성(2020).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동향과 전망』 110. pp.60~113.
- 유종성(2021).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회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자료집. pp.14~30. [일시: 2월 23일(화) 오후 2시, 주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 윤형중(2021).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본소득”. 『프레시안』. [2월 25일 기사입력]
-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 이건민(2017). ““기본소득의 역설” 대 ‘불가능성 정리’”. 서울: 녹색전환연구소. [3월 10일 공개]
- 이건민(2019).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월간 시대』 74. pp.40~60.
- 이건민(2020a).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 [기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프레시안』. [6월 15일 기사입력, 6월 18일 최종수정]
- 이건민(2020b). “제5장. 기본소득 쟁점”. In: 유영성 외 지음, 이한주 기획, 경기연구원 엮음,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서울: 다함미디어, pp.100~129.
- 이다희(2020).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일”. 『문학들』 61. pp.67~71.
-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솔루션 2050-04. 서울: LAB2050.
- 이일영(2020). “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동향과 전망』 110. pp.114~150.
- 임운택(2020). “기본소득은 진정 노동의 해방구인가?”. 『경제와 사회』 128. pp.78~104.
- 임정균(2020). “마호가니와 꽁치조림”. 『문학들』 61. pp.72~78.
- 전승훈(2020).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동향과 전망』 110. pp.151~162. [비정규 논문]
- 정상훈(2020).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김포: 루아크.
- 정원호(2021).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 [기고] 전국적 기본소득인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 『프레시안』. [1월 12일 기사입력, 1월 13일 최종수정]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a). “이럿타 111화-1부.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월 30일 공개]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b). “이럿타 111화-2부. 세계불평등보고서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1월 1일 공개]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이럿타 151회. LAB2050 ‘국민기본소득제’ 비판적 평가(설가타)”.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2월 4일 공개]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20). “이럿타 169회.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비판적 평가”.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5월 15일 공개]
- 제갈현숙(2020). “Covid-19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26(3). pp.119~157.
- 진형익, 이미숙(2020).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33(5). pp.1607~1629.
- 최한수(2021). “[세상읽기]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 『한겨레』. [2월 21일 등록, 2월 26일 수정]

- 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재성(2013).『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tkinson, A. B. (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Political Quarterly* 67(1). pp.67~70.
- 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Report on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B-MINCOME Project (2017-2018): Combining a Guaranteed Minimum Income and Active Social Policies in Deprived Urban Areas of Barcelona. Planning and Innovation Department Area of Social Rights, Barcelona City Council. [July 2019]
- Coote, A., Kasliwal, P. and Percy, A.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UCL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16 May 2019]
-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pp.32~46.
- Davala, S., Jhabvala, R., Mehta, S. K. and Standing, G. (2015).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Bloomsbury Publishing.
- Desai, M. and Palermo, A. H. (2019). "Some Effects of Basic Income on Economic Variables".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91~110.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Gelbach, J. and L. Pritchett (2002). "Is More for the Poor Less for the Poor? The Politics of Means-Tested Targeting". *Economic Analysis & Policy* 2(1), Article 6.
- Gilbert, R., Huws, U. and Yi, G. (2019). "Employment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47~72.
-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The Political Quarterly* 90(3). pp.534~542.
- Groot, L. (2004). *Basic Income, Unemployment and Compensatory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aarmann, C., Haarmann, D., Jauch, H., Shindondola-Mote, H., Nattrass, N., Niekerk, I. V. and Samson, M. (2009).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Basic Income Grant Coalition.
- Howard, M. W., Pinto, J. and Schachtschneider, U. (2019).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111~132.
- Huws, U. (2020). *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 Platforms and Public Policies*. Pluto Press.
- Jones, D. and Marinescu, I. (2018).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NBER Working Paper No. 2431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angas, O., Jauhainen, S., Simanainen, M. and Ylikännö, M. (Eds.) (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Reports and Memorandums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9:9. Helsinki: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Kasy, M. (2018). "Why a Universal Basic Income Is Better Than Subsidies of Low-Wage Work". Working Paper 2. Data for Progress. [9 November 2018]
- Kela (2020). "Result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Small Employment Effects, Bet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Wellbeing". Kela. [6 May 2020]
-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pp.661~687.
- Mays, J. (2019). "Social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73~90.
- Miller, A., Yamamori, T. and Zelleke, A. (2019). "The Gender Effects of a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133~153.
- Miller, A. (2017). *A Basic Income Handbook*. Edinburgh: Luath Press Limited.
- Portes, J., Reed, H. and Percy, A.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UCL Institute for Social Prosperity.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London: Pelican Books.
- Standing, G. (2020). *Battling Eight Giants: Basic Income Now*. I.B. Tauris.



Van Parijs, P. and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Yi, G. (2018).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4(1). pp.193-218.

Yi, G. (2020).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 Paper for the 32nd Annual EAEPE Conference 2020, 2-4 September 2020, Online Event: The Evolution of Capitalist Structures: Uncertainty,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발표일: 9월 3일]

버지니아 울프의 5백 파운드는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참관기

오준호

용혜인의원실 비서관.『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지은이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1월 28일에 열렸다. 토론회는 청중 없이 진행되고 유튜브로 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은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으며,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김만권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이 온다』의 공저자이고 김만권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소개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저자다. 이날 토론자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운영진이며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활발히 발의 중이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이름의 기본자산 정책을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최근 본인의 주요 정책으로 기본자산제를 부각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세기 초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자기만의 방과 연 500파운드의 소득이라고 했다. 울프는 여성참정권 획득 소식보다 숙모가 돌아가시며 유산으로 연 500파운드를 자기에게 남겼다는 소식에 더 기뻤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500파운드가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 조사한 적 있다. 막연히 ‘최저생계비쯤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약 4천만 원이란 걸 알고 놀랐다.

울프가 바란 것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과 자유를 보장할 만큼의 돈이었다. 게다가 그 돈은 해마다 들어온다. 울프는 여성이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 돈을 권리로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상상해보자. 울프처럼 자비롭고 부유한 친척에게 큰돈을 받는다고. 그런데 고약하게도 우리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자. 하나는 딱 한 번 목돈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다. 다른 하나는 다달이 5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무얼 택할까?

이 의문은 그저 행복한 상상으로 남겨둬도 된다. 하지만 상상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사회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빈곤을 증명하지 않고도 말이다. 그것이 권리라면 상상이 아니라 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두 아이디어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한 차례 지급하는 목돈이다. 기본소득은 생활비의 성격이 크고 기본자산은 출발자금의 성격이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이론적 뿌리는 역사가 길지만 최근 두 정책이 주목받는 건 악화되는 불평등 때문이다. 기존 복지제도가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이 불평등 해결책이 되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면서 두 제도에 질문도 쏟아진다. 둘 중 무엇이 불평등 해결에 더 효과적인가? 실현 가능성은 무엇이 높은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의문에 답을 찾고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론의 장을 열었고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나는

행사의 실무 준비에 관여하고 또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 회의실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자산의 내로라하는 이론가들이 뜨겁게 논쟁을 벌였다.

기본소득의 ‘생활 안정성’과 기본자산의 ‘거시 자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¹⁾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지향하는 사회나 개인 삶의 차이로 이어지죠.”

서 교수는 두 제도의 차이를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기준 삼아 설명했다. 정기성에서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 실현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서 교수는 “생활의 안정성 담보 없이 거시 자유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또 “목돈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자산은 결국 각자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다.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편성에서 서 교수는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주로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을 겨냥했다. “기본자산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속’을 인정하더라도 왜 청년만 상속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났지만 삶의 위험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그 위에 추가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무조건성에서 기본자산은 교육, 창업, 주거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공유부 배당을 조건을 달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덧붙여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떨어집니다”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 사용을 주택 구입 등에 제한한다면 부동산 시장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서 교수님 발표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지지했던가?’ 하고 놀랐습니다.”

1) 기본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도 한다. 서 교수는 발표에서 일관되게 ‘기초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토론회를 기획하며 행사 제목에 ‘기본자산’을 넣기로 했다. 이 글도 그에 따라 기본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목적은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이 더 나은 대안인 세 가지 이유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재원 마련의 현실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들었다.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할 힘을 제공하여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3천만 원 준다고 뭘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될 수 있지요.”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진출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주더라도 연 16조 원 안팎”이며 30만 원씩 줘도 연 180조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자산은 재원 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므로 “최초 수용과정에서 기본자산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생애주기 자본금’을 제안합니다.” 생애주기 자본금은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할 수 있죠.”

서 교수와 김 교수의 발표까지 듣고 나는 ‘목돈이냐 정기적 급여냐’ 차이 이면에 두 제도 사이 철학적, 정치적 논점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놀랐고 또 반가웠다. 이런 논쟁이 있어야 ‘가장 힘든 사람을 어떻게 잘 선별할까’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담론에 충격을 주고 새로운 전망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표를 들으면서 기본소득론자의 기본자산 비판 중 일부는 기본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기본자산을 청년에게 주는 것이 보편성 원칙 훼손이라면 청년에게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현실론을, 상대에겐 원칙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책 소통이 그만큼 막힐 수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자산은 공공의 것(커먼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자산 제도로 자산불



불평등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온라인 토론회



평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듯 기본자산도 반드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본자산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에 넣자는 것입니다.”

다시 두 발표자에게 마이크가 돌아갔고, 김만권 교수와 서정희 교수가 각각 말했다.

“우리가 소비사회에 사는 한 기본소득은 지속적 소비력을 준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처럼 큰 정치적 결정으로 이행하려면 단계가 있어야 하죠. 기본자산은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쉬워 점진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자산에 대한 ‘탕진’의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엇이 탕진이고 탕진이 아닌지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진하고 나서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기본자산의 목표인 거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병권 소장과 안효상 상임이사도 각각 마무리 발언을 했다.

“기본자산은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본소득은 효과는 크겠지만 재원이 많이 듭니다. 둘 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면 두 정책을 조합하는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봅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거시 자유라는 기본자산의 가치도 거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두 제도 모두 한국의 조세체계, 복지체계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의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과제입니다.”

백승호 좌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부의 세습, 세대 갈등 같은 문제를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제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결합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거다. 이 토론회로 정책 간의 소통을 시도한 건 의미가 크다. 다만 두 제도 가운데 ‘기본’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로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겠다. 삶의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거시적 인생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버지니아 울프로 돌아가자. 울프가 500파운드의 큰돈이 여성에게(아마도 경제적 자립을 갈망하는 모두가 해당할 텐데) 매년 주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녀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같은 개념은 몰랐지만 사실 두 제도를 묶은 이상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예산제약이나 조세저항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둘 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떠오르는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 고정관념의 부스러기를 하나씩 치워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어떻게 봐야 할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후기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올해 하반기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 바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편성한 농촌기본소득 예산안 26억 원을 의결해 통과시켰고,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1개 면 4000여 명에게 5년간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지역, 금액, 기간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의 네 가지 키워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실험이다.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 설계 방법을 사회정책에 접목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과 별도로 발전해 온 개념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기본소득과 연계한 시도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며 진행됐고, 이 실험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과학적인 실험 설계 방식인 ‘무작위 통제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범주형 기본소득 categorical basic income이다. 기본소득의 정의 definition는 ‘자산 조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현금’이고,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연령, 직업, 소득수준, 지역 등으로 특정한 범주 집단을 설정한 뒤에 그 집단 내에선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범주’가 ‘지역’이라는 점이 세 번째 키워드다. 이 키워드는 기존에 진행된 다른 기본소

득 실험과 차별화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인도와 나미비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등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실험은 신청자에 한해 기본소득이 지급됐고,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험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빈곤층이든 부유층이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지역 거주라는 단일 기준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는 지역이 ‘농촌’이라는 점이 네 번째 키워드다. 농촌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십수 년간 집행됐던 공간이고, 대부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무용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고, 현금 지원 가운데서도 직불금제와 농민수당의 한계와 단점들도 상당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농촌기본소득의 특징을 고려해 의미있는 사회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올해 두 차례 열린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다. 포럼은 경기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LAB2050,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등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1월 29일엔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이란 주제로 열렸고, 지난 3월 3일에 열린 제2회 정책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이었다.

사라트 다발라, “실험으로 사회적 대화 유도”

제1회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의장이자 오랫동안 기본소득 인도네트워크에서 활동한 사라트 다발라였다. 그는 빈곤율, 취학률, 창업 및 경제활동의 지표 등이 개선된 인도와 나미비아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기본소득 실험의 역할은 증거 수집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사회실험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체가 기본소득과 여러 대안을 둘러싼 공론이 활발해지고, 이런 사회적 대화의 촉진이 기본소득 실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한 발언도 인상적이었다. 사라트 다발라는 “과거 노예제 폐지나 여성 참정권을 쟁취할 때엔 미리 소규모로 사회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은 가치와 철학, 인권을 기반으로 실시됐다. 분명 정책 효과라는 근거는 중요하지만, 증거만 가지고 정책이 실시되진 않는다. 인도에선 사회실험 이후에 정치적 운동이 일어났고, 무엇이 나은 방안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가 ‘지역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와 연관된 제주도와 장고도, 두 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작은 섬인 장고도는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비롯된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스스로 만든 사례였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 발

표에 따르면 장고도는 81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1993년부터 해삼 어장의 수익을 배당해 2019년엔 가구당 연간 1,100만 원이 지급됐다. 강 소장은 “해삼은 다른 어류 양식과는 달리 씨앗만 뿌리면 알아서 해초를 먹고 자란다. 성체가 될 때까지 주민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자란 것을 채취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여 등의 조건 없이 자연적 공통부의 배당이라는 의미다. 강 소장의 발표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배당 이전부터 있던 해삼 어장 수익을 마을 기금이나 대부업의 자금 등으로도 사용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993년부터 모두에게 균등 배분된 이후에야 주민들의 불만이 사라졌고, 어장이 공동의 관심으로 잘 관리되면서 매년 배당액도 더 커졌다고 한다. 공정한 분배체계가 공유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된 셈이다.

장고도에서 분배체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살펴

장고도는 공유자산을 모두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만든 사례인 반면, 제주도는 새로 발견한 공통부의 분배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마을어장과 마을목장 등의 공유자산을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해 온 전통이 있고, 최근에는 풍력발전이 확대되면서 ‘바람’이란 공유자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발표를 맡은 김자경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제주도 동쪽 지역의 구좌읍 행원리 풍력발전단지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행원리의 6개 마을이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 받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마을 내 갈등과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로 인해 마을의 의사결정 권한을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고도와 제주도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공통부를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도내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실험 설계에 참여한 지역재단의 이창한 이사는 농촌기본소득이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의 농촌 지역에도 농업인의 비중은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다”며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농촌이라는 같은 생활 공간에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장고도처럼 분배체계가 주민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을 오래 연구해 온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과 구분해 “농촌에는 농민이 아닌 주민들도 농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함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농촌 주민에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념이 농촌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본소득신진 연구자네트워크 대표는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이 실험으로 커먼즈(공유자산)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작은 경제모델을 발굴하며 생태적인 페미니즘을 활성화하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친환경으로의 농업 전환을 위해서도 기본소득 필요

3월 3일에 열린 제2회 정책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이었다. 농촌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관련된 문제가 누적된 복합적인 공간이고,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농어업 비서관을 역임한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은 기조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신 농업 생산성도 세계 1위다. 제일 좁은 면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셈인데 대신 그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친환경 농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소득 안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기존 농가 소득지원 정책인 직불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송원규 부소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직불금의 평균 수급액이 중위 수급액의 4.63배에 달한다. 이는 직불금이 일부 계층에 집중됐다는 의미”라며 “72%에 달하는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직불금의 29%를 수령하고, 3헥타르 이상을 재배하는 7%의 농가가 수령액의 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촌기본소득은 위기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란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런 공감대를 잘 요약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농촌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성별, 나이, 인종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하고, 의미있는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사람들에게 시간 재량권과 실패를 두려워 않고 시도하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소멸과 기후변화라는 농촌이 직면한 이중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에 전하는 세 가지 제언

농촌기본소득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상반기에 정책 포럼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고, 구체적인 실행안도 나오게 된다. 하반기에는 전례 없던 이 시도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아직 더 논의할 내용도 많고, 기대가 큰 만큼 여러 곳에서 상당한 우려를 받기도 한다. 필자는 그 우려를 덜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본소득 실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세금과 복지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제도이고, 특히 기본소득의 중요한 목적인 재분배 효과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으로 재분배 효과를 아예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나 비교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기본소득의 효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실업자에게 지급된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이 얼마나 노동 의욕을 줄이는지’는 아예 측정할 수 없었다. ‘기본소득이 기존 실업보장 급여와 비교해 얼마만큼 노동일수를 늘릴 것인가’만 측정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실험에서 아예 확인할 수 없지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실험 설계이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계기가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도 이왕 하는 김에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바라는 점은 기본소득 실험이 논의를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앞서 사라트 다발라가 강조했듯,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기본소득 실험의 중요한 역할이다. 필자는 이에 더해 기본소득이든 다른 대안이든 사회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제대로 된 논의의 축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구 5만 옥천> 청년이 구상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다

옥이네

전교생 18명 중학생 상대로 6주간 2번 10만 원 지급한 청소년 기본소득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해 사용일지를 통해 소비패턴 분석, '자존감, 연대의식' 도출
기본소득 논의 황무지였던 농촌에서 기본소득 논의 활활, 정책화 가능성도 비춰

충북 옥천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옥천지역 청년모임 Too 가 서울시 청년허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안내중(전교생 18명)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것. 무조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된 이번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활자에 그쳤던 기본소득 논의에 생기를 부여했다. 안내중 전교생은 2회에 걸쳐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관련 공론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화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편을 통해 인구 5만, 옥천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공간, 농촌, 그리고 청소년

안내중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 커뮤니티 청년모임 Too(단체 소개는 인터뷰 참고)가 주도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 인식이 많이 확산된 시기에 지역 청년들이 직접 나서 기본소득 논의의 물꼬를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됐다. 실험 이전, 옥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화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년모임 Too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40%(옥천군 2019년 사회조사 관련 자료 참조)가 되는 농촌이야말로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시급한 공간이라고 인식했다.

“가구가 가난하면 가구 구성원도 가난하죠. 하지만 청소년이 얼마나 빈곤한지 조사된 바조차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꿈도 못 꿀 상황이죠. 결국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봐요”(박누리).

결국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농촌 공간은 청소년에게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될 뿐이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기본소득 실험은 그 일환이었다. 가구 단위로 집행되는 정책이 아닌, ‘조건 없이’ ‘모두에게’ 시행되는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옥천신문》황민호 이사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지원하는 ‘n개의 공론장’ 사업을 추천했고, 청년모임 too는 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년모임 too 멤버로 활동하고 있던, 사회적기업 고래실의 박누리 편집국장의 협조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총 6주간 지역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3주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충전식)로 지급하고, 그 과정과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면서 느낀 기본소득의 경험을 공유해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구상하고, 꼼꼼하게 기록한다. 의미는 ‘함께’ 해석한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획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됐다. 약 3주간 회의가 이뤄졌고, 대상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 있는 안내중학교로 선정됐다. 안내중학교는 전교생 18명의 작은 학교다. 안내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1) 작은학교로서 같은 지역의 또래집단 전교생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 2)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 3) 면지역 학교로서 음면소비 불균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지역화폐카드) 등이 꼽혔다.

실험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기본소득 일지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소년들은 소비날짜마다 오늘 쓴 내용에 대해 글, 사진, 그림 등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1)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2)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했던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사실 3)기본

소득을 사용한 오늘 하루의 생각 4)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5)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등의 질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 기본소득이 청소년에게 선물한 ‘자존감’, ‘연대의식’, ‘자율성’

청소년들이 말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단지 6주간 돈을 더 받았다는 신선한 경험을 넘어섰다. 기본 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번 실험이 ‘관계의 평등’, 나아가 ‘독립’을 가져다줬다며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청년모임 Too가 만든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내중학교 김가은 학생은 “기본소득은 용돈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며 “집에서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후기를 털어놨다. 노승희 학생 역시 “기본소득은 공적으로 주어진 돈이라 사용처를 부모님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박소선 학생은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자신의 몫이었다’라는 답변은 그간 소비 권한이 사실상 청소년에게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돈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권력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여태껏 청소년들은 성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기본소득은 이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청소년기본소득 공론장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한 인근 학교 최서영 학생(옥천고)은 “규제가 많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싫어하는 게 용돈 제한”이라며 “어른들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가치도 있지만 청소년에겐 옷이나 필기구, 폰 케이스가 관계에서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청소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연대의식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적 차이(용돈)에 따라 같이 놀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것. 학생들은 용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래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면서 소비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사용처가 옥천 지역 내로 제한되다 보니,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온라인으로도 못 쓰고 대전에서도 못 써요? 그럼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 실험 후에도 ‘제빵사가 꿈이라 제빵 도구를 사고 싶었는데, 지역에서는 내가 찾는 도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실험 이후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가 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

다이소:3000원

2번 나는 오늘 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을 얻었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얻은 것은 먹을것과 가방과 또 먹을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나면 기본소득이 평소에도 있으면 더욱 더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얻어먹거나 각자가 사먹었는데 기본소득이 생긴 이후로는 내가 사주거나 이곳에서는 내가 사고, 저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마지막 TMI는 우리는 버스에서 엄청 시끄러웠던ㅋㅋ

[답글을 남겨주세요.]

[답글을 남겨주세요.]

다’라는 평가도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지역 상권을 검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구매하는 경험을 했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경험과 추억은 청소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론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간 옥천 기본소득 실험. ‘그게 뭐야’에서 ‘해볼만 하네’까지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도출한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 확대를 촉매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작가 오준호씨를 불러 기본소득 관련 강의를 주민들이 함께 듣기도 했고, 기본소득 실험을 종료한 11월에는 지역정치인, 교사, 마을주민,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공유(결과보고서)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을 옆에서 지켜본 주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다 고 응답했다. 지역교사 오정오씨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이 소비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직접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들으니 기본소득 실험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는 걸 느꼈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내중 학교에서 실험에 함께 참여한 문정식 교사는 “실험에 참여하며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지역사회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작은 규모라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일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정치인들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이 정책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은 “청소년기본소득의 개념은 들어봤지만, 사실 근처에서 실험을 하게 되니깐 더 와닿았다”라며 “기본소득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민간영역에서 시작된 실험을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의회에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실험을 살펴보면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토론회까지 진행하면서 청소년 기본소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죠.”

: 옥천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청년모임 ‘TOO’를 만나다

옥천에서 청소년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청년모임 Too(touch of okcheon).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연대의 경험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세대와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세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번 실험을 계기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모임의 상징은 ‘달팽이’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자는 의미다.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있는 카페 ‘토닥’에서 박누리(37, 『월간옥이네』 편집장), 이종효(34, 카페토닥 사장), 이해수(30, 『옥천신문』 시민기자)씨와 만나 청년모임 Too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지역(옥천) 공동체’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옥천에 기자로 첫발을 들인 누리씨, 옥천 청년이지만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종효씨와 해수씨. 이들은 옥천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혹자는 묻는다. 당장 도시에서도 앞길이 막막하다는 세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으로 돌아와서 타인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좋은 경험들이 계기가 됐다’라고 말이다.

“고향은 구미고, 학교는 대전에서 다녔어요. 대도시에서 공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곳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역에서 신문기를 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박누리).

그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첫 프로젝트는 착한마을카페였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분	기본소득 지급 전	기본소득 지급 후
사용 패턴	개별적 사용	공동체적 사용
사용처	온라인	지역 가게
소비 주체	부모님께 허락/각자 알아서 사용	각자 알아서 사용/부모님께 제공
놀이 패턴	만나서 스마트폰 사용	만나는 횟수 증가, 대화 증가
소비감정	눈치 보임	자유로움, 일부 눈치 보임

옥천에서는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마땅치 않아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모임에서는 지역 곳곳을 헤매는 청소년을 위해 지역카페와 협약을 맺었다.

“3천 원짜리 커피를 사장이 1천 원, 커뮤니티에서 1천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청소년은 3천 원 커피를 1천 원에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 청소년이 지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이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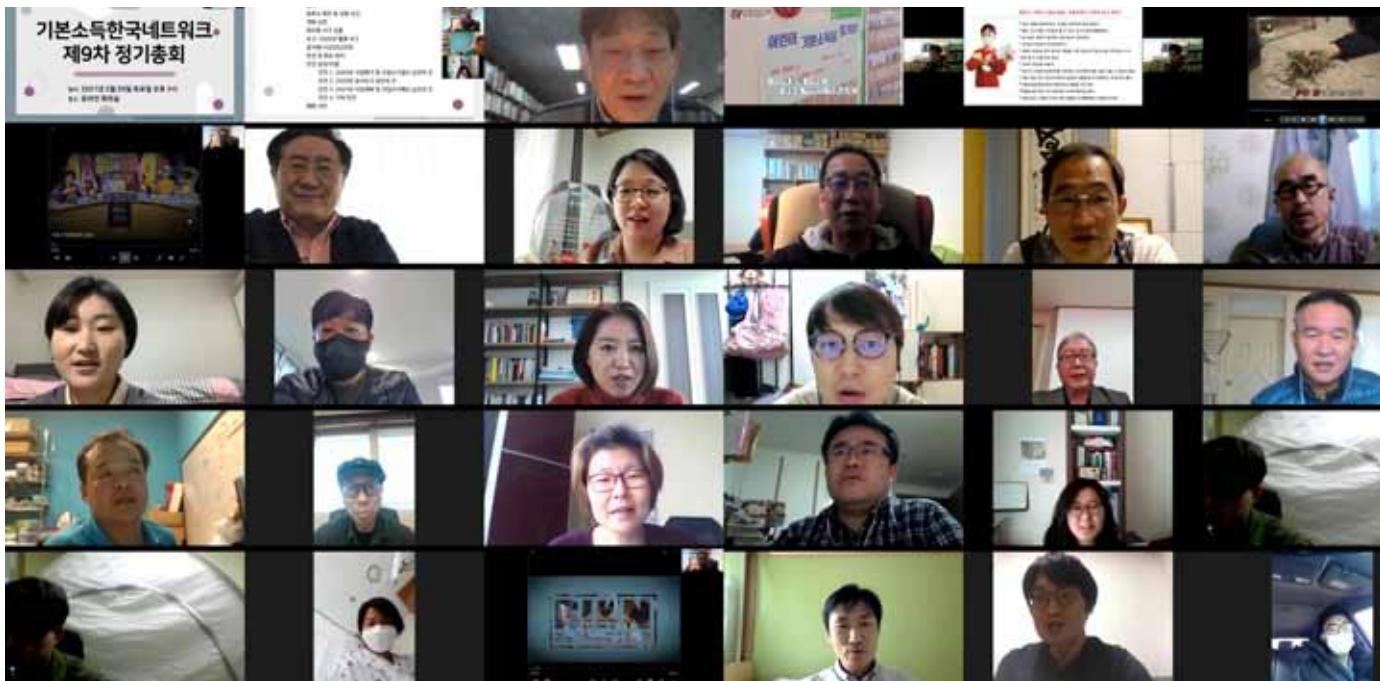
지역사회 인구 10명 중 4명이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인 곳, 농촌. 이런 공간에서 보편적 기본 소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관심이 높아졌지만, 당장 멀리 있는 어젠다처럼 보였다.

“정치적으로 전국민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데, 당장 농촌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단어도 낯설었고요. 정치 의제 이상이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실생활로 끌어 내릴까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종효)

그렇게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 번 지속됐고, 좋은 기회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실험을 구상하고, 공론장을 열어냈다. 물론 기본소득이 마련할 ‘연대’가 또 다른 좋은 ‘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였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꼭 필요해요. 학교라는 공간은 처음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차별은 그 사람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런 경험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사회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지지받는 거죠. 저는 지금 청소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자라난 청년이 되길 바라요. 사실 저희도 연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박누리).

이처럼 기본소득 논의는 청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 이들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꿈꾼다. 그뿐 아니다. 선한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낳는 사회를 위해 도전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함께 유쾌했던 청년모임 Too. 싱그러운 봄처럼 이들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운동은 웬지 목표도 과정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21 정기총회]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2021년

박선미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02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작년 총회 즈음에 느닷없이 찾아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딱 그만큼 2021년 정기총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창립 후 처음으로 “줌 클라우드미팅 Zoom Cloud Meet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치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2009년에 설립되었으니 13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거의 같은 이유로 생겨난 코로나19 대유행인 만큼, 마지막일지는 모를 일이다.)

2020년 돌아보기: 자임한 과제와 코로나19 PANDEMIC

2021년 정기총회는 여느 총회처럼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자리였다. 여느 총회처럼. 그러나 2021년 총회는 뻔할 것 같은 평가와 계획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임한 과제와 변화하는 담론지형에 대한 긴장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0년에 1년 반 혹은 2년짜리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정한 “2020년 사업계획”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사업 계획은 일 년 단위 계획을 넘어서서 좀 더 중기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 이 계획의 1년 차 계획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소득의 실현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 혹은 정치적 감성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정치 제도와 정치 과정을 고려한 시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할 때 다른 여러 정책과 결합되어야 할 하나의 정책이며, 또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신을 담고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조직이자 일종의 싱크탱크이며, 위에서 말한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위상 추구positioning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담아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여름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이 청사진은 잠정적으로 1)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모델의 수립과 이행 전략, 2)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려한 경제 모델과 제도의 설계, 3)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 4) 권리의 향상과 평등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의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권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고 불러왔다. 그래서 2021년 총회에서 “지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2020년은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의 1차년으로 계획되었다. 로드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월례 쟁점토론회”는 그래서 2020년의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 월례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월례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의 정의, 정당성과 쟁점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잠정적’ 입장을 마련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쟁점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2월 “기본소득 정의”
- 3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 4월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 5월 “기본소득과 젠더”
- 6월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 7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 8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 9월 “재정원리, 시민소득세”
- 10월 “누진 모델 등 모델,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 11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 12월 “범주형 기본소득”

지난 2020년의 쟁점토론회를 통해, 애초 목표대로 각 주제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입장’을 잠정적으로나마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교류되어 집단적 합의에 이르거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밝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주제도 있었고, ‘입장’을 위한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까다로운 주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차년은 해당 주제의 논의 현황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었고, 집단으로서 입장을 정하는 것은 2021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런데, 2021년에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은 계획의 차질을 가져왔다. 2020년 봄이 오기도 전에들이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획한 사업들의 행위자인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 없는 바이러스 대유행은 심리적 위축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할 거라는 예측만 있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률을 낮추는 것뿐이었다. 명한 상태, 우왕좌왕의 시간을 보내면서, 월례 쟁점토론회, 연속기획 토론회 등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함께하는 방식을 병행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많은 사업과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학술연구와 사회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 및 회원총회가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고,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등의 행사도 개최하지 못했다.

만나지 않고도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과제가 되었고, 그 와

중에 꾸준히 발행된 계간 〈기본소득〉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계간 〈기본소득〉 제3호~제6호가 발간되었다. 편집위원회 성원들의 헌신 덕분에, 호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필자들의 글이 실렸고 그래서 계간 〈기본소득〉은 날로 두툼해졌다. 그러면서 계간 〈기본소득〉의 독자는 누구인가, 예상 독자층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가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내용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애초의 소박한 목표에 머무를 수 없었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매체’로서 전파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맞이하며 기본소득이 경제적 대책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부터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 정책을 요구했고, 국회의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조건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또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펴고, 중앙정부의 전국적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경기도와 전국의 보편적 지원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 이슈가 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호감만큼이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발언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방어’와 ‘옹호’는 우리의 갑작스런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는 논평/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격전의 장이 된 온라인매체 〈프레시안〉에 릴레이기고를 실었다. 2020년에 발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논평과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3월 10일, 성명서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성명서 “다시 한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발표.

3월 30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발표.

5월 13일, 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

11월 2일, 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발표.

12월 1일, 논평 “3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발표.

12월 14일,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발표.

〈프레시안〉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는 2020년 7월에 시작했다. 한 해 동안 총 9편의 기고를 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릴레이기고는 아래와 같았다.

7월 9일, 백승호,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7월 14일, 신지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7월 28일, 오준호,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8월 11일, 김수연,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8월 25일, 신지혜,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8월 28일, 안효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9월 10일, 윤형중,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11월 2일, 서정희,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올해를 계획하기

2020년의 기운은 2021년에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도 여전했고,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는 자임한 과제도 유효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2월 20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의미 있게 논의되도록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이 남긴 과제들을 실행하는 것을 2021년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2021년 사업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2. 이런 청사진이 광범위하면서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미디어 활동, 연대 활동을 수행한다.
3.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면적인 논의 과정에서 회원과 지역네트워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을 모색한다.

2021년 주요 사업들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이 목표와 호응하며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대선 로드맵’)”을 제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월례 쟁점토론회가 이어진다. 2021년 상반기의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과 결합되어야 할 주요 영역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토론주제들로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목표대로 8월까지 “대선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후에는 이를 공론화하고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대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즉 정책 제안, 토론회, 캠페인 등을 하게 될 것이다. 2021년부터 운영되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이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간 《기본소득》과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예상)을 통해, 폭넓은 분야의 광범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책 대안을 포함한 현재의 이슈들을 논하고자 한다. 칼럼 집필 등의 언론 활동, <기본 소득 뉴스레터> 개편과 교육콘텐츠 개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그 소리를 효과적으로 증폭하는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2021년에도 국내외 여러 행사와 정치일정을 함께 치르는 ‘국내외 교류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기본소득스코틀랜드네트워크 Basic Income Network Scotland에서 주관하는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 제20차 BIEN 총회, 2021년 세계기본소득주간 등의 국제 행사, 우리가 공동주관 또는 공동주최로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의 기본소득 정책의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3월 현재,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2차례 포럼을 진행했으며,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질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공약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식을 치렀다.

자임한 과제와 주어진 과제 속에서 2021년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고 싶다.

나머지 이야기

정기총회가 평가와 계획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흐뭇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마련이고, 2021년에 그 프로그램은 ‘2020년 감사패 시상’과 대전, 충북의 소식, 특히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식으로 채워졌다.

‘2020년 감사패 시상’은 일종의 밀린 숙제였다. 2017년부터 한 해 동안 기본소득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연말에 열리는 ‘회원의 밤’)를 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이지만, 감사패 시상식을 했고, 2020년의 수상자는 역작『모두의 뜻을 모두에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을 펴낸 금민 이사,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활동과 담론 형성으로 기여한 용혜인 의원, 충북에서 기본소득운동을 활발히 펼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등 셋이었다. 비대면이라 꽂다발은 없었지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은 랜선을 타고 전해졌다.

대전과 충북의 소식은 영상으로 즐겼다. 대전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기본소득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영상 <기본소득 넘버원>을 함께 감상했고, 충북네트워크에서 2020년 활약상을 유쾌한 영상으로 공유했다.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식은 학교 매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 이야기였는데, ‘어린이 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강환옥 선생님(2020년 가을에 회원이 되었다)이 직접 소개해주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은 생생했고 또 감동적이었다.

내년에도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해도 될까?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탐욕은 심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문명의 심리적 토대로 만들어 버렸다.

—『탈성장 개념어 사전』(251쪽)

기본소득이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 소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녹색 비전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생태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인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¹⁾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지구적 환경의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의 길을 찾는 사고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1. 기본소득의 생태효과 : 두 가지 접근²⁾

기본소득이 생태와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 견해가 공존한다. 녹색 기본소득의 비전은 크게 녹색성장 지지자와 느린 성장 slow growth 혹은 탈성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역할은 달라진다. 녹색성장 지지자의 경우 주로 탄소세와 탄소배

1) corridor를 ‘복도’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바닥과 천장 그리고 양쪽 벽으로 막혀있는 어떤 공간의 긴 통로를 의미한다. 소비복도에 대한 개념은 이후 장에서 설명한다.

2) Howard, Pinto, & Schachtschneider(2019: 111-132)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의 일부와 Lee, Lee, & Kim(2020)의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당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탈성장론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의 목표를 포기하고 절대 소비를 줄여야 함을 강조 한다(Gough, 2017). 따라서 탈성장론자들은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사회’에 도전하는 소비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여러 보완정책들이³⁾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Howard et al., 2019).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동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삶’을 중심에 두고 나면, 기본소득의 생태효과는 불분명하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소비패턴의 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간, 인프라, 문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반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혹은 시간제약으로 인해 소비선택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는 바람직한 소비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소비패턴을 가진다. 먼저, 이동성, 도시계획, 사회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의 제약 그리고 물질적 소비를 활용하여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경쟁적 소비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소비구조가 시장지향적이라는 점, 현재의 범용 화폐(general-purpose money)는 오늘날 생태적 측면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우처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ohnenberger, 2020).⁴⁾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이 자원과 에너지의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달리 집합적 소비(non-ownership models of utilizing good and services)를 통해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남용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과잉으로 이어진다면 생태적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Parrique et al., 2019; Bohnenberger, 2020). 또한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 사이의 관계는 온실가스 배출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평등-오염 딜레마(equity-pollution dilemma)’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빈곤가구의 지출 당 소비의 오염강도가 높을수록 누진적 재분배로 인한 소비를 통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Sager, 2017). 이렇게 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생태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가능성들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유급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장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Boulanger, 2009; Schachtschneider, 2012). 가령, 보다 생태적이고 정서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3) 먼저, 생산중심적이고 소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더 검소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급진적 교육개혁이 제안된다. 둘째, 법적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Schor(2005)는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여가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며, 기본소득은 근로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4) 가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보완통화(complementary currency)의 발행을 통해 생태소득(ecological income)을 창출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바우처를 Bohnenberger(2020)는 변환바우처(shift voucher)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부추기는 것(nudging)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스포츠바우처, 과일바우처 등과 같은 화폐형식의 바우처와 생태휴가와 같은 비현금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ee, Lee, & Kim(2020)에서 참고할 수 있다.

(Fitzpatrick, 2010).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와 적은 소비를 선택할 수도 있다(Goodin, 2001; Johnson & Arnsperger, 2011).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급된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므로 위치재 positional goods⁵⁾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Schachtschneid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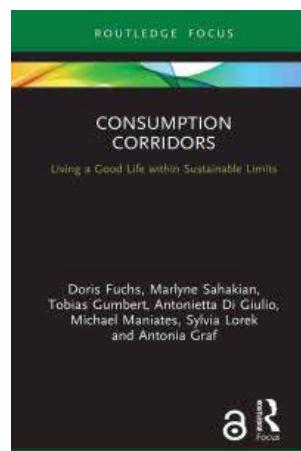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과연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심의제에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는 전 인류사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답해야 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태·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지구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라는 조건이다. 즉,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the sustainable way of life style’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해보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2018)은 사회정의의 5가지 원칙에 ‘생태적 제약 원칙’을 포함시켰다. ‘생태적 제약 원칙’이란 ‘해당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부담할 생태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움’을 의미한다. 사회정의에 ‘생태적 원칙’을 고려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마치 미키마우스의 두 개의 귀처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태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를 포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 틀이 필요하다.

생태·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소비 복도들consumption corridors’이다. 이 개념은 2021년에 발간된 『소비 복도들: 지속가능한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Consumption Corridors: Living a Good Life within Sustainable Limits』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개념은 2012년부터 the March Münster 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좋은 삶, 소비와 정의justice를 둘러싼 수많은 대화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이 책의 공동저자들이 핵심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⁶⁾ 이 책은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것을 권하고, 이러한 기회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고찰한다. 일곱 명의 학자들은 ‘소비 복도들’



그림출처: <https://www.routledge.com/Consumption-Corridors-Living-a-Good-Life-within-Sustainable-Limits/Fuchs-Sahakian-Gumbert-Giulio-Maniates-Lorek-Graf/p/book/9780367748722>

5) 위치재라 함은 최고급 스포츠카, 매우 비싼 주택과 같이 근본적으로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모든 사람이 페라리를 가질 수 없으며, 만약 모든 사람들이 페라리를 가진다면 더 이상 페라리의 가치는 무화되고 만다. 위치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상대적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는 성장이 위치재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하고 지위경쟁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치재는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탈성장 개념어 사전』(pp.247-2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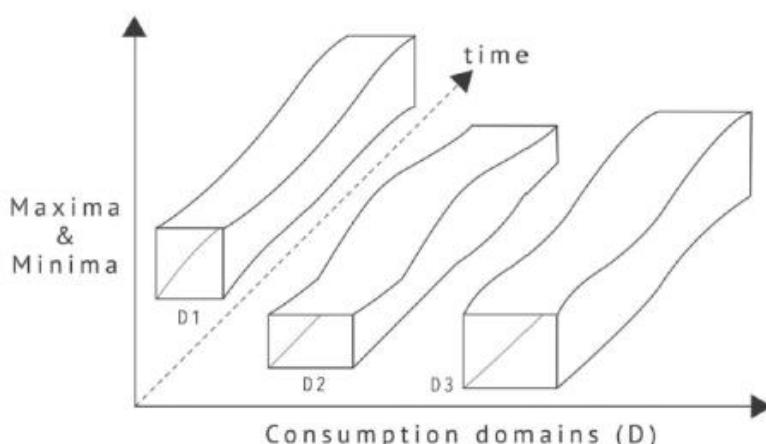
6) <https://www.uni-muenster.de/Fuchs/en/forschung/projekte/konsumkorridore.html>

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소비 복도들’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략하게 주요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소비 복도들’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해치지 않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최대한의 소비수준’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은 선택의 자유로 남겨지며, 이 공간 내에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Di Giulio & Fuchs, 2014). ‘소비 복도들’은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질문하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념적 공간을 열어놓는다. 압축적으로 말하면, 책임감 없는 자유에 대한 신화, 기술혁신에 대한 신화, 시장중심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신화, 소비자 주권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틀을 제공한다.

‘소비 복도들’은 소비의 최소와 최대 사이의 공간에서 좋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개인의 웰빙에 대해 다시 사고하기를 요청한다. 최소수준의 소비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양과 질의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정의된 최소한의 소비수준에 대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조건)는 무엇인가’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집합적 책임과 연관된다.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보편적 기본서비스^{UBS} 등이 있다.

<그림1> 소비 복도들



출처: Fuchs et al.(2021: 37)

다음으로, 최대 수준의 소비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것은 소비자 개인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한 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사고해 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인류’라는 개념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으로 형성된, 사·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수많은 ‘소비 복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 참조).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와 같은 에너지 소비 제한 있으며, 주거 면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Fuchs, Sahakian, Gumbert, Di Giulio,

<그림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소비 복도들’ 개념은 3가지 축으로 형성된다. 첫째,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최소수준의 소비,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의 최대수준의 소비이다. 두 가지 제한 내에 속하는 공간은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면적은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최소수준과 최대수준의 소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정의하고 평가내리는 성찰적인 숙의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합의해낼 수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급박한 위기의식이나 도덕적인 명목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함께 정의 내려 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소비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린 결정의 생태·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당위’나 ‘수동적 수단’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출해 낸 ‘의도적 제한’이며, ‘시민의 불복종’, ‘자발적 단순성⁷⁾을 실천하려는 행위를 수반한다.

3. 논의

‘소비 복도들’ 개념의 장점은 좋은 삶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력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최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삶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또한 이를 설계하는 주체의 범위는 전체주의적이거나 추상적 개인을 상정하지 않으며 시공간 속에 놓인 상호의존적 개인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소비 복도들’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비 복도’를 공동체 단위, 지역사회 단위, 국가 단위, 초국적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사회적 한계 속에서 웰빙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가령,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교육에 대한 급진적 개혁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에 깨끗한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시킬 수 도 있다. 깨끗한 공기와 녹지에 대한 접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필수조건을 합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무절제한 자원의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삶의 비

7) 탈성장론자들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단순성은 의식적으로 낭비와 자원집약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점차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비물질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는데 사용함으로써, ‘좋은 삶’을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달리사 외, 2018: 240).

전과 사회에 대한 구상 속에 논의되어야 한다.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웰빙의 측정에 생태적 측면을 포함시켜 개선하는 것, 문화적 측면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 속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 복도들’ 개념이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 가이 스텐딩. (2018).『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요르고스 칼리스. (2018).『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 Bohnenberger, K. (2020). “Money, Vouchers, Public Infrastructures? A Framework for Sustainable Welfare Benefits”. *Sustainability* 12(2), 596.
- Boulanger, P. (2009). Basic Income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trategies. *Basic Income Studies* 4(2).
- Di Giulio, A. and Fuchs, D. (2014). “Sustainable Consumption Corridors: Concept, Objections, and Responses”. *GAIA* 23(1): 184–192.
- Fitzpatrick, T. (2010). Basic Income, Post-productivism and Liberalism. *BasicIncome Studies* 4(2).
- Fuchs, D., Sahakian, M., Gumbert, T., Di Giulio, A., Maniates, M., Lorek, S., & Graf, A. (2021). *Consumption Corridors: Living a Good Life within Sustainable Limits*. London: Routledge.
- Goodin, R. E. (2001). “Work and Welfare: Towards a Post-productivist WelfareRegim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13–39.
- Gough, I. (2017). *Heat, Greed and Human Need*. Cheltenham, UK: Edward Elgar.
- Howard, M., Pinto, J. & Schachtschneider, U. (2019).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Torry, M. (Ed.),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pp. 111-132). Cham: Palgrave MacMillan.
- Johnson, W. A., & Arnsperger, C. (2011). “The Guaranteed Income as an Equal-opportunity Tool in the Transition toward Sustainability”. In A. Gosseries & Y. Vanderborght (Eds.), *Arguing about Justice*(pp. 61–70). Louvain: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 Lee, S. S. Y., Lee, J. E., & Kim, K. S. (2020). “Evaluating Basic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Voucher for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12(20), 8348.
- Parrique, T., Barth, J., Briens, F., Kuokkanen, A., & Spangenberg, J. (2019). “Decoupling Debunked: Evidence and Arguments against Green Growth as a Sol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Brussels, Belgium.
- Sager, L. (2017).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Consumption: Evidence from Environmental Engel Curves”.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and the Environment (Working Paper No. 385).
- Schachtschneider, U. (2012). “Ecological Basic Income: An Entry is Possible”. A paper presented at the BIEN Congress in Munich in 2012.
- Schor, J. B. (2005). “Sustainable Consumption and Worktime Reduc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9(1–2), 37–50.

기본소득, 노동과 화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

고미숙 고전평론가

나는 ‘본투비 백수’다.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교수진출이 봉쇄되면서 ‘박사실업자’로 중년을 통과했다.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여 수유연구실이라는 지식인공동체를 열었고, 현재는 ‘감이당&남산강학원’을 거점삼아 삶의 모든 것 - 공부와 밥과 우정 - 을 해결하고 있다. 헤아려 보니 장장 20여년, 꽤나 긴 시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란 존재가 자본의 격렬한 현장은 고사하고 정규직 경력도 전무하다는 뜻이다. 그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다. 신기했다. 인문칼럼도 아니고, 고전평론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니. 아, 그리고 보니 돈에 대한 책을 쓰기는 했다(『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돈과 삶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자본과 복지의 ‘리얼한’ 현장과는 거리가 좀 있다.

아무튼 그럼에도 내가 이 청탁을 수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실 자체가 재밌어서다. ‘글쓰기가 밥벌이’요, ‘백수가 미래’라고 외치는 나한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라니. 놀라운 세상이다. 이거야말로 문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시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은 다름아닌 코로나 19다.

기본소득,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곁으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과해왔다. 이 터널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경로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들이 다. 미증유의 사건은 미증유의 사유를 몰고 온다. 기후위기와 생명주권, 자연과의 공생, 탄소에서 수소로, 소유에서 자유로 등이 대표적인 사안일 터, 기본소득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내 기억으론 2020년 이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풍문이 떠돌긴 했다. 하지만 너무 아련했다. 북유럽같은 먼나라의 전설이라고 나 할까. 그러다 코로나19가 왔다. 바이러스를 통한 자연의 역습은 전방위적이었다. 인간도 자본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고 4차혁명이고 그 앞에선 무력하기만 했다. 성별, 인종, 국가, 문명 사이의 격차도 무색해졌다.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와중에 문득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졌다. 앗, 이게 가능해?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소득은 ‘풍문’도 ‘전설’도 아니다. 동의하건 하지 않건 누구나 숙고

해봐야 할 경제상식이 되었다. 그렇게 기본소득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기본소득,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제적 권리. 이게 맞나? 아무튼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경쟁과 격차, 사적 소유, 증식과 팽창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여러 모로 충돌한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인식의 전환에 달려 있다. 특히 노동과 화폐를 둘러싼 배치, 쉽게 말하면, 돈과 삶에 대한 상상력의 전복이 필요하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먼저 노동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테제일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자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노동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등등. 1980년대 민주화세대의 깃발을 장식한 구호다. 물론 그 이전에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은 인간존재의 핵심이 되었다. 산다는 건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 사이의 간극, 문제는 거기에 있을 뿐 노동 자체의 가치는 신성불가침이었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수세기 동안 전인류를 노동을 향해 달려가도록 추동했고, 그 결과 전세계의 부는 엄청나게 폭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급투쟁과 양차대전, 냉전의 세기를 초래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자연은 초토화되었다. (우리는 현재 그 ‘업보’를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노동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굳건하기만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노동의 배치가 전면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디지털 문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거라곤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기계들이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것은 노동해방인가?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해방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 따라서 노동을 통한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테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사태의 추이를 좀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동과 놀이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아이들과 스포츠 선수일 것이다. 춤과 노래, 야구와 축구, 이것은 노동인가? 취미활동인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하지? 보통사람이 맨날 야구나 축구를 하면 ‘건달’로 취급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 가치의 원천은 대체 무엇일까? 상품생산? 교역의 확장? 자유와 평화? 다 아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줄 뿐이다. 유튜브의 예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부분은 잡담, 먹방, 개인기 등이다. 놀랍게도 4050 중년들이 나와서 유치하기 짜이 없는 게임을 한다. 묵지빠, 노래 맞히기, 끝말잇기, 줄다리기 등등. 예술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계몽적 효과를 촉발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때우면서 휴식을 취하게 해줄 뿐이다. 그럼 그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다수의 대중들이다. 여기저기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된 것.

그렇다. 보다시피 이젠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 자체만으로 자본이 증식된다. 그래서인가. 디지털 기술로 부를 이룬 ceo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 고. 거창한 명분이나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혹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일단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또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여전히 의심한다. 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모름지기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오직 노동에 종사하다 생을 마치는 게 거룩한가? 매 일같이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남이 시키는 일을 ‘열나게’ 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으리라. 밀레니얼 세대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방향을 돌리지를 못한다. 왜? 당연히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데, 그 이전에 노동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가 포인트다. 이제 인간의 행위는 노동이 아닌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은 그 자체로 타율적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도 그것이 주는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반해 활동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소외에서 벗어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차고도 넘친다. 일단 잘 놀고 잘 쉬는 것(현대인은 휴식과 수면에 무능력하다. 만병의 근원이자 불통의 원천이다.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감을 확대하는 네트워크를 여는 것. 그동안 인류가 노동에 올인하느라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메시지에 담긴 다양한 분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활동의 경제적 베이스가 될 것이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돈을 흐르게 하라!

다음 화폐에 대하여. 노동의 신성함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관념이 하나 있다. 사적 소유의 신성불가침이 그것이다. 현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다 바친다. 그게 성공의 척도이자 생의 유일한 낙이다. 그럼 그렇게 소유하고 증식한 다음에는? 소비와 여가. 결국 오락과 즐거움이 최종심급이다. 소비는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 신경은 적당히 멈출 줄을 모른다. 결국 중독을 부른다. 평생 사유재산을 늘리는 데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엉망이 된다. 국가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GDP를 높이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다음엔?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소비를 향해 나아간다. 공감과 연대, 우정과 지성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다. 오직 증식과 소비뿐. 이런 경로를 타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부자는 종독으로, 중산층은 공허함으로, 하층민은 박탈감으로.

이런 ‘서글픈’ 배치를 바꾸려면 부의 기준을 화폐의 양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 삶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다양한 척도가 있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협소한 자아에서 벗어나 존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를테면, 소유에서 자유로. 고립에서 공감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예전에는 그것을 주로 사유재산에 의존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공유경제가 흘러넘친다. 내가 거주하는 필동만 해도 주변에 남산순환로, 한옥마을, 국립극장 등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백수들은 하루 두 번씩 사계절의 풍광을 만끽하고 있다. 이것은 부의 향유인가? 아닌가?

전국 곳곳을 다녀보면 이런 식의 공적 자산이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설을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광장으로, 가족에서 공동체로. 직장에서 마을로. 공간은 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거기에서 뭘 하냐고? 각종 여가활동, 북클럽 혹은 환경동아리, 여행과 순례, 인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등등.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세대공감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비전 아닌가. 화폐와 자본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낳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라야 비로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백수들, 특히 청년들에게 경제적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건 그야말로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면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세금을 놀고먹는 백수들한테 쓴다고? 혈세 낭비! 하지만 자본주의는 본래 탕진과 낭비를 기본으로 한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온갖 럭셔리한 시설과 조형물들을 떠올려 보라. 일년에 한두 번의 쇼와 이벤트 외에는 텅텅 비어 있다. 대형토목공사가 초래한 자연파괴, 거기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떤가. 아, 코로나가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큰 공간은 대학캠퍼스일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그 웅장한 건물과 대지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혈세 낭비가 또 있는가?

사유재산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소유에 집착한 다음, 결국 나중에는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긴다. 그런 부조리한 통념에서 오는 범죄와 병증,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큰가. 돈을 사적 소유와 핵가족의 범주 안에 묶어두는 한 이런 식의 탕진과 낭비는 끝도 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요컨대, 돈은 흘러야 한다. 사적 소유의 신성함이라는 가치에 매여있는 한 돈은 오직 개인적 욕망, 그리고 핵가족의 틀 안에서만 돈다. 돈이 그렇게 ‘홈파인’ 회로에서 돌면 사람도 돌아버린다(진담이다 ^^). 그래서 도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삶과 삶이 연결되는 곳으로. 그것을 일러 순환이라고 한다. 순환에는 시초적 증여가 필요하다.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선 태양과 빛과 열이 필요한 것처럼. 태양과 빛과 열은 무상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인간 또한 그 ‘조건 없는’ 증여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무상의 순환을 통해서.

GDP가 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구성원들이 잘 살게 되는가? 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지수는 더더욱 높아질 뿐이다. 그렇다고 빈부격차 없이 모두를 잘 살게 해주는게 가능한가? 부의 총량을 늘여서 고루 나눠준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해도 사양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구가 초토화될 테니까.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 좋고. 정규직은 든든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 좋고.

정규직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감이당의 ‘기본소득?’, 청년펀드

너무 낭만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경제적 순환을 실험해왔다. 나의 현장은 감이당&남산강학원이다. 여기서의 기준은 계층이 아니라 세대다. 감이당은 중년세대가, 남산강학원은 청년세대가 주도한다. 중년은 노동과 화폐에 올인하느라 정신적 공황을 겪다가 감이당으로 흘러오고, 청년은 밀레니얼 세대의 막막함을 안고 남산강학원으로 진입한다. 중년은 상당한 부를 갖추고 있지만, 청년은 당연히 빈털터리다. 물론 청년들의 부모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게 청년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자립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세대차이를 적극 활용하여 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감이당의 ‘청년펀드’다. 주로 중년들을 통해 펀드의 기본자산을 조성하고, 그걸 밑천으로 청년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주로 공동체의 살림살이(주방), 영상편집(유튜브 강감찬tv), 강의녹취 및 세미나매니저 등 배움과 공감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전에는 자원봉사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경제활동으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청년들은 주로 남산 아래 필동의 세어하우스에 거주하는데, 한달 생활비는 대략 80만원 정도(인원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명-20명 정도). 그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청년펀드가 흘러간다. 물론 이 활동은 어떤 이윤도 창출하지 못한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하지만 대신 청년과 중년이 ‘인생의 길벗’이 되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이를하여 청&장 크로스! 이 걸 화폐의 양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단언컨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화폐의 양 따위는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체적 구상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에 돈이 흐르게 하는 것. 핵심은 생활의 자립과 공감의 확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죽어라고 돈만 버는 일도 이제 그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면서 삶의 지도를 그려가는 길, 돈은 마땅히 이 경로로 흘러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보편화된다면 문명의 흐름 또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무척 기대된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

강석훈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6년이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부결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다. 그리고 참 많이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라면 아무 조건없이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거저 주겠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 나라가 매우 부러웠다. 그리고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들 살고 있기에 우리네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돈(*나는 그 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간다)을 거저 주겠다는데도 그걸 싫다고 한 것일까 매우 궁금했다.

그들의 속사정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크게 관심도 없다. 그저 매월 3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으로 부러움 한켠에 씹쓸함이 크게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모두들 느끼셨을 테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왜 어느 누구는 월 300만 원이 굳이 필요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지구라는 공간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굳이 천체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주를 여행해본 우주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는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일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국의 부유한 동네에 태어난 이들,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이들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 단돈 천 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는 비선진국의 아이들과 여인들,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쟁에 이리저리 내몰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이 공평할 것이라는, 삶이 공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니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인 것인가? 원래 삶은 불공평한 것이니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죽음 이후 멋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잘 견뎌보라고 이야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Just do it!!!!” 하면 되니까 그냥 해보라고, 빈사에 허덕이는 비선진국의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니가 안되는 이유는 안해서 그런 것인니 너의 가난은 너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무대를 좀 좁혀보자. 우리네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은 어떤가? 전세계 수 많은 나라 중에서 경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나라, 머지않은 과거의 찢어질 듯했던 가난을 단시간에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나라,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서구의 선진국들과 함께 메달 경쟁을 벌이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오스카상을 타고 그래미상을 넘보는 나라, K방역이라 불리며 전세계를 휩쓴 바이러스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끝인가? 정말 그곳이 대한민국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최고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63억 2천만 원이며,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발표를 오늘 뉴스를 통해 보았다.)가 즐비한 그 자랑스러운 나라의 어떤 반지하 공간에 아직도 4~5인, 5~6인 가족이 등을 맞대고 살아간다면 믿으실 수 있는가? 그곳 어딘가에서 다음 한 달을 살아낼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서 세 명의 목숨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신가? 더구나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밤새도록 물건을 배달하며, 투잡에 쓰리잡을 뛰어도 아름다운 서울 한켠에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는 나라, 아니 그 투잡에 쓰리잡마저도 있으면 좋겠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믿어지시는가?

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20대, 아니 10대에도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겠다고 지정한 택지지구에 20, 30대 땅 주인들이 넘쳐난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가난한 이들은 무언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다”라고 외쳤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무언가 인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사회적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일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가, 사회가 가난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할 턱이 없지를 않은가 말이다. 지금 한창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보자. 현재 유력한 한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을 지낸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없노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었다. 아마도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행위는 인격적 훌륭함으로 자신의 부를 일구어간 많은 이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행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었던가 보다. 아무튼 그는 그랬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다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있다.

과연 그런가? 정말로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며, 불성실의 결과이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40여 년이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최악의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에서는 더 육 그러하다. 대부분의 가난은 사회구조가 유발하고 있다.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빈과 부의 차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물가상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동시에 부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 어찌 가난이 인격적 결함일 수 있겠는가.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에 선정된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은 “인류 역사상 비범한 성공을 거둔 이들의 공통된 비결은 운이었다.”라고 단언했

다 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운이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부가 그렇지는 않다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가난을 인격적 결함으로 규정짓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창출해 내는 부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니 경제적 선구안을 지닌 한 훌륭한 위인의 소유만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재분배되어야 한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말이다. 자본주의에 바탕한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산하는 부를 분배해왔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하며 정의롭게 진행되었다는 신화에 빠져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일자리는 늘 불안정했고, 그 일자의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본은 그 축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과 노동은 더 이상 대등한 룰로 경기할 수 없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자본은 노동에게 치열한 경쟁을 강요했고, 그 경쟁은 인간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강요된 노동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이제 노동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상실했다.

어느날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설명하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떤 포도농장의 주인이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인력시장이란 곳에 를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정하고 일을 맡겼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은 조금 후에 다시 나가 또 다른 일꾼들을 부르며 자신의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성서는 주인이 다시 일꾼들을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감이 많아서라든지 일꾼이 부족해서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리고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농장의 주인은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해가 질 무렵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묻는다.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소?’ 그들의 대답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품삯을 주겠노라고 말이다. 자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이들부터 품삯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지막에 들어와 한 시간 남짓 일한 이들에게도, 아니 침부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이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인가? 더구나 이것이 하나님나라를 비유한 설명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자! 흥분하지 말고 주인과 마지막으로 계약한 노동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자. 우리는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이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는 여기에서도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유추해본다면 그들은 앞선 일꾼들보다 힘이 약했을 수 있다. 덩치가 작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서는, 농장의 주인은(나는 아무래도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 같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약한 이도, 덩치가 작은 이도, 여성도, 장애인도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그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삶을 위하여 수입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는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수입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고용이란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주인이 해가 질 무렵 일자리를 주겠는가? 이것은 가난한 이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적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자. 남들보다 더 센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의 인격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감사의 선물인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기만 한 걸까? 아니면 하늘이 준 행운인 걸까? 더하여 금술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말해 무엇할까? 그러니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한동안 노동의 가치는 지고지순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람을 쓸모로 계량하고, 그 쓸모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치환하여 계산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더 이상 노동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올바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필수적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그 노동의 중요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K방역 또한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동의 쓸모가, 사람의 쓸모가 정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노동의 쓸모를 계량하고 가격을 매기는 것일까? 아니 정말 이 사회는 그 노동의 쓸모에 따라 가격을 매기기는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의 공포 속에서도 이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사회를 새로이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지구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보완하여 노동을 지겨운 생계의 수단에서 해방하여 말 그대로 자신을 실현하는 가치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적 룰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멎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도 이곳저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찬성해온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 또한 없지 않다.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사에서부터, 침체된 자본주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까지 여러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 삶의 본래적 의미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호적 장치들을 대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침체된

그러니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김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본소득은 인류 자체의 존속을 넘어 지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인간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에덴이라는 낙원을 관리하는 존재였다. 그곳에 신도 함께 했다. 하지만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실낙원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되어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탐욕은 실낙원하게 만들었으니 그 낙원을 다시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소득과나”

안재성

소설가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를 다종적으로 보게 된다.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딱 부러지게 웃고 그르다거나 좋고 나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는 꼴을 하도 많이 보아서인가, 세상 만사가 다 상대적으로 보이니, 특정 가치나 주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집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을 양쪽 다 이해하고 들어주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통적 의미의 계급적 속성이나 보수나 진보나 하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견해를 듣노라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수긍하게 된다.

몇십 년 전인지 세어 보기도 힘든 오래 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다. 어렸을 때 우리집은 늘 침침했다. 아버지가 전기를 아끼려고 약한 전구만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전기, 전화, 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지 왜 돈을 받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철도청 임시공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도둑놈 심뿐냐? 전기, 전화를 공짜로 주면 다들 맘대로 엄청나게 낭비할 텐데 나라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

평생을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였다. 꼬박 33년을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작은 빌딩의 경비로 들어가 다시 20년을 근무하셨지만 생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열렬한 보수파여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일당을 받아 오셨다. 만일 아버지께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다면 펄쩍 뛰며 반대했을 것이다. 일해서 별 생각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살겠다니 그게 무슨 도둑놈 심뽀냐고 말이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7, 8년은 된 것 같다. 친한 벗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였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한 친구가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데 나는 깜짝 놀랬다. 모든 국민이 일을 하든 하든 상관없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니, 듣자마자 대환영했다.

자리를 같이 한 다른 친구는 반대했다.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비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려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받게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기본소득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의 하나라고 비판해온 또 다른 친구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주면 계급적 불만이 완화되어 자본주의가 더욱 공고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약자들의 권익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지 개량적인 시혜로 얻으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자본주의가 강화된다는 원리주의자의 반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해도, 민주당 지지자의 우려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다. 기본소득 당의 활동을 알리는 언론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90%는 원색적인 비난이다. “왜 내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놀고 먹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 같지만, “무슨 도둑놈 심뽀냐?”는 식의 혐오 댓글은 달라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내 주변인 중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나의 사촌형이다. 사촌형은 노동자가 스물 남짓한 가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파다. 그런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니 대단히 반겼다. 자기같은 영세기업주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수당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자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둔 중견기업의 대표이다.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늘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으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렇듯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느냐 마느냐로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레 기본소득 개념을 상상했던 나는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내 발로 기본소득네트워크에 가입했고 기본소득당이 창당될 때는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도 나의 유일한 정치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만일 현재의 금전가치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이 발의되면 솔직히 나는 반대할 것이다. 액수가 클수록 기본소득의 이념에 부합한다 해도, 그 정도 부담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던 노동운동의 구호를 자본가 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믿는 고루한 꼰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 전체의 부가 커진다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질병이나 실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원천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존재하기에, 이 나라 땅 안에 사는 한 그 누구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하자는 게 내가 가진 기본소득론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유는 사회보장 혜택의 기준을 심사하는 과정의 낭비와 불합리를 줄이자는 것이다. 어제의 사장이 내일 부도가 나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월급이 1만 원이 올라 기준을 넘었다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변동사항을 각자 신고해야 하고 수많은 공무원이 이를 개별 심사하는 짓이야말로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인데, 나와 같은 기본소득당 당원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설득의 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말자. 행동은 함께 하되, 생각은 서로 다를수록 발전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말은 사족일까?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

강은실

소박한 자유인 운영위원

나의 불행과 한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오랜 시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온 터여서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소소한 경험은 누군가의 소소한 경험들 속에 녹아날 만한 것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위 어디 쯤에 놓여 있을 뿐인데 무언가 써야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난감한 일이었다. 다만 이런 난감함은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내봤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매 분기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이름이 호명되고 게시되던 학생이었다. 어찌해서 들어간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여섯 살 많은 언니와 여덟 살 적은 막내 남동생을 포함한 여섯 형제 중 유일하게 초·중·고·대학교 학창 시절을 온전히(?) 보낸 유일한 형제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한탄 끝에 늘 따라오던 “내가 살아온 얘기만 써도 책 몇 권은 쓸 거다.”라는 얘기와 적절한 시기에 지지와 지원이 없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얘기는 나에게 늘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고 나의 역할이란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밖에 없었다. 물론, 가난한 시골이었고 부모님의 잊은 출타에 의해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각종의 노동 분담은 논외로 한다.

19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많은 이들처럼 나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곧 변화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열정과 결의에 차 있었다.

91년 소련 몰락의 여파로 학생운동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는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법·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학

생운동과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반강제적인 분리는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상황만을 과하게 해석하고 집착하게 했다. 예를 들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그런 것들이었다.

정신적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태로 그 이후 십여 년 이상을 생존하기에 급급해 살았다. 당장에 돌봐야 할 자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곤궁, 신뢰하는 커뮤니티가 없는 고립된 생활은 상당 기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결혼제도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까지 더해지면서 나는 내 안으로만 파고들었고 스스로 고립되어 갔다.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급급해 살다 보니 잊어지기도 했고 가끔씩 회한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살아지게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천상 주부가 되어 있었고, 개개인의 노력 정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힘든 가부장제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주부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빈곤과 사각지대로 바로 떨어지리라는 불안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이며 그렇게 유지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것을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주부들을 배제된 존재로, 정책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각성이었다.

나는 이 사회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으나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정책적 대상,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임노동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뻔뻔한 이 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싶었다.

가사노동을 임노동 관계에 편입시켜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투쟁은 그 착취구조가 무척 종족적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핵심축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단일하고 강력한 의제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힘겹더라도 싸우고 싶었던 이유는 체제 내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을 소거해 버리는 자본의 추악함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정당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소극적 제한을 둔 (피)선거권이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상식이 되기까지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권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인류가 이루한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적 이해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으며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공통부의 향유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경제적 독립(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빈곤의 해결(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관계는 선언에 그치고 만다. 적어도 과거의 유산을 공히 누리는 바탕 위에 현재의 노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부의 분배가 그러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제껏 자본의 위압과 허세에 눌려 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비밀이 어쩌면 자본주의를 한번 더 훈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레임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생산과정 전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자본주의 폐해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분배과정도 노동계급과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생산과정의 필수요소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일거에 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생산력은 숙련공이 아니라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 하는 지적 게으름과 무지함이 답답할 뿐이다.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이렇게 끝난다. 소소한 경험은 경험의 틀거리에 갇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빨려 들어 갈지라도 애써 이어 붙인 것은 서사와 담론의 간극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고만고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서사들이 모여 담론이 생기고, 그 담론에 의해 서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

-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을 중심으로 -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저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Basic Income Youth Network, 이하 BIYN 회원 김주온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대학원을 졸업하며 그간의 활동을 분석한 석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랜 시간 BIYN의 주요 멤버로 활동해온 저의 ‘활동가·연구자 activist-researcher’라는 위치성을 활용한 자문화기술지 autoethnography 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 BIYN 약 10년의 역사와 부침을 연구 자료로 삼아, 청년을 호명하면서도 세대론에 갇히지 않는 운동적 지향을 가진 개인들의 연대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작고 느슨한 연합체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재)분배 운동이 결속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BIYN의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결속시키고, 일을 도모하며, 위계를 거부하도록 하는 높은 충위의 가치로서, 특히 ‘개인’들의 운동을 촉진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별화된 소비 주체로 ‘개인’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다르게, 운동의 의제가 기본소득인 경우 개인성이 다르게 이해되며 나아가 개인을 새로운 운동적 주체로 호명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소득 보전 정책과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주어지므로 ‘개별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다른 인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하여, 운동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면화한 사례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운동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며 ‘청년’들을 조직화해온 사례로 BIYN 구성원들의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구가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 밝힌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연구는 BIYN의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가치관과 생활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살펴봤습니다. BIYN 주요 구성원들은 문화자본 및 교육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신념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십대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을 체화하라는 압박

으로부터 어긋남을 느꼈던 이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성찰적 개인이 되고자 했지만 일체감과 사명감, 집단주의적 정서가 지배적이던 기존 사회운동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성’을 강조하는 BIYN의 기본소득 운동에 매력을 느끼고, 기본소득 개념을 통해 대안적 삶과 사회를 상상하는 활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BIYN에서 활동과 학습을 함께할 동료 관계를 모색하며, 이질적인 활동 배경 및 참여 동기를 아울러 자율적이고 평등한 사회참여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둘째, 이 연구는 2010년대의 ‘청년당사자운동’이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재현해온 전략을 청년운동 장의 내부자 관점으로 돌아보았습니다. BIYN은 “88만원 세대” 담론의 등장 이후 정치적 범주로 호명된 “청년”이 특정한 문제만을 안고 있는 범주로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BIYN은 청년세대의 문제로만 특수화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개개인의 온전성이 소거된 단일한 세대적 표상으로서 바라보는 대신에 청년인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공적인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IYN은 설불리 “청년”을 앞세운 정책화 전략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기본소득 운동에서 또한 제도화를 넘어선 목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논문에서 “기본소득 말하기”라고 정의한 수행적 행위를 통해 개개인이 자기조직화하고 임파워됨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 태도는 개인의 욕망을 성찰 없이 강조함으로써 운동의 사회비판적 성격을 탈각시킬 위험 또한 내포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BIYN이 개인들의 조직화와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해왔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급부상하며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협업을 제안 받고, “청년”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발화해달라는 요청들이 증가하던 가운데 주요 구성원들이 소진된 시기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BIYN의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겸업’의 방식으로 무리해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규모라도 “조직화된 운동”的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 안에서 운동에의 참여 동기를 재발견하며 조직을 해산하기보다 개편하는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초 “자유로운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참여자의 범위는 넓히되 그만큼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조직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이후 더욱 느슨해진 연합체 안에서 ‘운동’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을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발견한 ‘협업으로서의 활동’란 개인들의 자율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자치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공동 학습과 공동 작업 속에서 개인주의적 윤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료감각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정치성을 함께 탐구하고 기록하고 발신하여,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담은 구성원들의 열망들을 살피아 있게 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IYN은 이러한 의미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 공간에서 기본소득은 개인들이 새로운 운동적 실천을 탐색하도록 하는 사상적 자원입니다.

이 연구는 사회참여 욕구가 있는 유동하는 개인들이 중심이 된 느슨하고,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화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운동”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등장하는 오늘날,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자기정의적이고 느슨한 소규모 조직의 행위자들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줍니다. 그

럼에도 운동의 내부자로서 연구자가 충분한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지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이 점은 BIYN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현장 속에서, 운동/활동에 대해 계속 질문하며 보완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 기본소득 운동 진영의 전체 지형을 그려내지 못하고, 한 조직의 행위자들만을 중심으로 다룬 점도 이 연구의 한계입니다. 날카로운 애정을 기반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비평하는 후속연구들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BIYN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썼습니다. 언제나 운동은 망하고 있다고 말해지지만, 새로운 운동 또한 꾸준히 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감각과 경험, 문화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행착오의 기록이 하나의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진형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회원 진형익입니다.

이렇게 계간 『기본소득』을 통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세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담도 살짝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청년 단체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본소득을 공부하게 되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있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위 논문을 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할 미션이라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지도 교수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두시고 설문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주)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은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2020년 3월 18일~24일), 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만 19세~64세) 905명이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찬성 유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시작된 시기라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적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는 50%의 응답이 나타난 것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잘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본소득 인지도와 찬성률은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인지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높았고 찬성률은 남성은 찬성하는 편, 여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인지도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찬성/ 반대/ 보통이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찬성의 비중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그룹에서는 보통과 찬성이 40%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60%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적정금액, 그리고 사용 목적

기본소득 지급 방법으로는 개인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적정금액 수준은 50만 원 이하가 43.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정금액 수준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확인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25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구간을 나눠 확인했더라면 구체적인 금액 구간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생활비 다음으로 20대와 30대는 저축을, 40대는 새로운 일에 사용할 것으로 응답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인 소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유발되는 세수의 증가와 재정 부담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

인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할 경우 그룹 간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모든 그룹에서 부자 및 부유층을 통한 방안을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수(27%)보다 진보(53%)의 비율이 2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간접세를 고려하는 경우도 보수(23.5%), 진보(15.4%), 중도(25.7%) 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구분	토지 및 건물세	금융 상품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자 및 부유층	간접세	기타
전체	80 (8.8%)	47 (5.2%)	81 (9.0%)	84 (9.3%)	384 (42.4%)	199 (22.0%)	30 (3.3%)
정치 성향	보수	13 (10.9%)	9 (7.6%)	12 (10.1%)	17 (14.3%)	32 (26.9%)	28 (23.5%)
	진보	25 (8.4%)	10 (3.3%)	21 (7.0%)	35 (11.7%)	157 (52.5%)	46 (15.4%)
	중도	42 (8.6%)	28 (5.7%)	48 (9.9%)	32 (6.6%)	195 (40.0%)	125 (25.7%)
							17 (3.5%)

노동에 대한 의욕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 사항은 재원 마련의 문제 외에도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정한 기본소득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50만 원 미만 43%, 50~100만 원 38%). 이는 1인당 최소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100~150만 원 37%)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훨씬 작은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아도 일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견이 2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용이라 생각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를, 기본소득의 적정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사람(타인)과 본인 스스로 노동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금액을 다르게 응답했는데요, 타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수준은 150~200만 원이지만, 본인의 경우 훨씬 많은 금액인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노동 의사를 잃게 되리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게 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해외에서는 스위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많

은 세계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관심을 지속해서 유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수준,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저소득층, 젊은 연령대,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도 쉽게 기본소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고민해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응답자 특성 중 정치적 성향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수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 반대가 아닌 미루는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진보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부여하고, 중도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를 전달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수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 도입 시 우려되는 쟁점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과장된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우호적인 태도는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상당히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고민해주시는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 마련 방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공론화시켜보고 싶은 것이 저의 앞으로의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네트워크의 교육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루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월례 쟁점토론회, 기획 토론회, 계간 〈기본소득〉은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사업인데요. 물론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잘 아카이빙 해준 덕분에 저의 개인 시간에 맞춰 챙겨 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교육 사업과 교류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담론적 노력을 진행 중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인류는 여러 차례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양식과 노동시장의 변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해 왔습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A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전망이 공존합니다. 미래 사회에 일자리 축소를 전망한 대표적인 보고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입니다. 미국의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인지능력 및 조작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을 분석하고 해당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산출하여, 향후 10~20년 내에 전체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킨지앤컴퍼니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좀 더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앞선 연구와 달리,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18가지의 능력에 기반하여 약 2,000가지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가 이미 현존하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으로 산정하면 연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언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체 가능한 업무의 비중은 58%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은 세부 직종이 다루는 핵심 기술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이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 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방대한 수치와 자료에 대한 계산과 처리, 복잡한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부터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으며, 일부 영역에서 대체 현상이 관찰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의 직무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과 기술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사회적 지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물론 ‘풀라나의 역설’을 들어 과학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발생할 현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확대와 개별 가구의 가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값싼 재화의 제공과 확장된 구매력이 가계소비의 증가를 추동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노동수요가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동시간의 축소로 인해 갖게 될 여유를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으로 총당하기 위해 여가, 여행, 오락, 미용, 의료, 쇼핑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영역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술밖에 없는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수준의 일자리 비중은 감소

하고, 숙련 일자리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질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저임금 혹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좋지 않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 노동의 문제는 기술적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양극화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전형적·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고용형태가 다각화되면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결되어 노동이 수행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임금이 낮고 고용상태와 환경이 불안정하며,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고 있는 사실도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관계의 질적 변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각화 현상이 심화 혹은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하는 노동의 핵심은 기술적 실업에 대한 걱정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우려를 100% 확신하기 어렵지만, 후자는 일자리의 질 저하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설계된 전통적 분배체계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 한 이유입니다.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